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도 정기세미나

때: 2007. 9. 6.(목)~7.(금)
 곳: 대전 유성호텔

정기세미나 참석자 명단

- 발표자 (2)
 - 김동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사회자 (1)
 - 한진만 (강원 중재위원,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사 (23)
 - 서명수 (중앙일보 고충처리인)
 - 안창현 (한겨레신문 시민편집인실 기자)
 - 김종호 (문화일보 논설위원 겸 고충처리인)
 - 김병일 (한국경제신문 법조팀장)
 - 허형석 (연합뉴스 기사심의실장 겸 고충처리인)
 - 구능희 (KBS 고충처리인)
 - 구창훈 (KBS 지역/법무팀 변호사)
 - 김은정 (MBC 법무저작본부 언론중재 담당)
 - 강무성 (SBS 정책팀 차장)
 - 양윤석 (SBS 보도본부 사회2부 차장)
 - 이종일 (EBS 인사법무팀 과장)
 - 정미선 (EBS 홍보팀)
 - 안종훈 (CBS 전국팀 부장)
 - 권흥순 (대전 KBS 편집제작부장)
 - 강신욱 (충북일보 정치부장)
- 중재위원 (21)
 - 장용택 (영남일보 논설위원 겸 고충처리인)
 - 진영록 (전북일보 미디어팀장)
 - 성기훈 (중도일보 상임고문 및 고충처리인)
 - 한성일 (중도일보 시민단체팀장)
 - 홍성배 (강원도민일보 사회부 차장)
 - 기현호 (광주일보 여론매체부장)
 - 김현진 (충청투데이 사회부장)
 - 이상훈 (매일신문 사회2부장)
 - 조준희 (위원장)
 - 노향기 (부위원장)
 - 이도영 (부위원장)
 - 안병준 (서울 중재위원)
 - 이수연 (서울 중재위원)
 - 이기중 (서울 중재위원)
 - 방민준 (서울 중재위원)
 - 박영규 (서울 중재위원)
 - 장윤환 (서울 중재위원)
 - 김태진 (서울 중재위원)
 - 한국연 (서울 중재위원)
 - 박석태 (경기 중재위원)
 - 안종배 (경기 중재위원)
 - 손차준 (대전 중재부장)
- 정 부 (3)
 - 심홍식 (국정홍보처 홍보분석단 분석총괄팀장)
 - 김민아 (국정홍보처 홍보분석단 변호사)
 - 나기주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 서기관)
- 법조계 (2)
 - 노태홍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판사)
 - 이종훈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판사)
- 사무처 (13)
 - 김용주 (사무총장)
 - 장원상 (조정심의본부 본부장)
 - 오광권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본부장)
 - 정희성 (제도연구팀 팀장)
 - 조남태 (홍보팀 팀장)
 - 이진숙 (대전사무소장) 외 7명

<제1주제>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하여 -

I. 먼저 몇 가지

1.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

신문, 방송 등 언론은 정보와 가십(gossip)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공인 뿐만 아니라, 대중의 호기심을 끄는 범죄·사고·사건의 관련자, 기타 일반인의 건강, 사생활의 비밀(프라이버시),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사적문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도를 통해 이를 대중에 공표할 요구와 필요가 커지고 있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 보도가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요구는 당연하고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망원렌즈,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기계, 소형녹음기, 도청기 등의 녹음기계와 인터넷 등의 정보수집 수단의 발달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 자료의 무단 수집과 작성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그 공표가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충격과 괴로움 등 정신적 고통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재산적 피해까지도 입히는 인격권 침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인격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인 점을 생각한다면 언론·출판의 자유와 권리를 이유로 이를 희생할 수는 없으므로 언론의 침해로부터 인격권을 보장하고 구제할 필요가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이 상충하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하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명예·권리 침해시 피

김 동 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제4중재부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변호사
-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현)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4중재부장
- (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여 두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두 범익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실시하였다.¹⁾

2.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가. 자율구제

가장 이상적이고도 바람직한 제도는 언론에 의한 자율구제이다. 언론은 윤리강령, ombudsman 제도, 사내 변호사, 모니터 요원, 심의실 등 사내 기구를 통하여 자기 통제를 하고 있고, 신문윤리위원회 등 사외적 자율구제기구를 두어 사과, 정정, 해명, 취소 등 사후 구제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 자율구제는 구속력이 없어 인격권 보장책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나. 형법 등 처벌법

‘형법’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녹음, 대화 내용 공개·누설 행위를,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위 각 법률에 정한 범죄의 피해자, 신고자, 고발자의 사진이나 성명 등 인식 요소를 동의 없이 언론에 게재·방송하는 행위를, ‘소년법’과 ‘가사소송법’은 소년 보호·형사사건이나 가정법원 처리사건 관련자의 사진이나 성명 등 인식 요소를 동의 없이 언론에 게재·방송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각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처벌법들은 언론에 대하여 범죄가 되는 인격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복수의 감정을 충족시켜줄 뿐, 인격권 침해를 사전에 막거나 피해 회복 등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없고, 일부 개별적 인격권 침해를 처벌하고 있을 뿐 일반적 인격권 처벌 규정이나 개별적 인격권 전부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 인격권 보호책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다. 민 법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인격권을 침해하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각 규정하고 있으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사전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침해정지, 침해예방, 손해배상 담보,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기타 조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저작인격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전·사후 구제책을 모두 갖추고 있다.

마.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1) 헌재 1991.9.16.자 89헌마165 결정, 대법원 1988.10.11. 85다카29 판결.

손해배상제도는 인격권 보호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어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인격권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언론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정정·반론·추후보도, 손해배상, 침해정지, 침해예방,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것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 또한 사전·사후 구제책을 모두 갖추고 있다.

바. 손해배상제도와 다른 구제제도와의 관계

언론의 침해로부터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금지청구제도(방송·보도의 사전 금지를 구하는 침해예방청구, 진행 중인 시리즈 방송·보도의 정지를 구하는 침해정지청구,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 조치를 구하는 청구)이고, 그 다음으로는(주로 명예훼손에 관한 경우이긴 하나) 침해된 인격권의 회복을 위한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승소 또는 패소 판결의 공표청구 등이며, 마지막으로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의 전보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이다.

사전금지청구는 명예훼손의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사전 검열의 성격)이 된다는

점에서 그 허용범위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나, 프라이버시권이나 초상권 침해의 경우 일단 공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공공의 이해관계와 무관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경우에 비하여 더 넓게 인정할 수 있다. 그 외 구제제도는 이미 인격권이 침해된 후에 취해지는 사후 구제수단으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원상회복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만이 가능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²⁾

사전 금지청구는 시간적 제약으로 이를 쉽게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후 인격권 회복청구제도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유효한 구제책이지만 그 외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손해배상제도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정보도 등 사후 회복청구에 대한 보완적 수단이지만 그 외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인격권 보호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제도의 위상과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 그리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³⁾ 이래 손해배상이 사후 구제수단으로서 더욱 중요해졌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 및 중재 현황,
이 글의 전개 방향

가. 1980년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따라 1981. 3. 31.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언론중재위원회에 신

2) 민법 제764조의 원상회복 규정을 프라이버시권에도 적용할 것인 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3) 헌재 1991.4.1. 89헌마160 결정.

청된 사건은 거의 전부가 명예훼손(신용훼손 포함) 사건으로 대부분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신청사건이었으나⁴⁾, 2005년에 현행 언론중재법 제정 시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신설되면서 명예권(신용권 포함),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그 건수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⁵⁾

현행 언론중재법 시행 2년이 되는 지금, 필요적 전치제도가 아님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원에 제소하기 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과 함께 또는 별도로 명예훼손(신용훼손 포함),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면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의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을 통하여 인정될 배상액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얻을 금액에 비하여 반드시 많다고 예상할 수 없음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른 명예권, 초상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의한 피해구제율이 높아가고 있어 손해배상이 정정보도 등의 경우에 못지않게 인격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다.

4) 언론기본법 제49조는 구체적으로 정정보도청구권만을 인정하였고, 1987년에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제16조) 외에 추후보도청구권(제20조)을 신설하였다. 위 두 법률은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 정정보도에는 반론보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5) ① 1981. 3. 31.부터 2007. 6. 30.까지 기간 동안 조정신청은 총 10,858건으로(1981년에 44건에서 시작하여 2005년에 883건에 이르더니 2006년부터 1,000건을 넘기 시작했다) 명예훼손(신용훼손 포함)이 10,588건(97.5%), 초상권이 90건(0.8%), 성명권이 21건(0.2%), 음성권이 11건(0.1%), 프라이버시권이 10건(0.1%), 기타가 138건(1.3%)이고, 전체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합의 + 조정결정에 동의 + 조정결정에 이의·조정불성립결정·취하 중 정정·반론기사 게재)/총 조정건수)은 34.8% 내지 68%로 평균 59.8%이었다(2000년부터는 60%를 상회하고 있다).

② 손해배상신청이 가능했던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기간 동안만 보면, 조정신청이 총 2,507건으로 명예훼손(신용훼손 포함)이 2,358건(94%), 초상권이 90건(3.6%), 성명권이 21건(0.8%), 음성권이 11건(0.4%), 프라이버시권이 10건(0.4%), 기타가 17건(0.7%)이고, 피해구제율은 60.6% 내지 62.4%로 평균 61.3%이다.

③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기간 동안 정정·반론·추후 보도 신청을 제외한 손해배상조정사건만의 처리현황을 보면, 총 648건(2005년 141건 + 2006년 318건 + 2007년 상반기 189건) 중 명예훼손(신용훼손 포함)이 536건(82.7%), 초상권이 75건(11.6%), 음성권이 14건(2.2%), 성명권이 10건(1.5%), 프라이버시권이 10건(1.5%), 기타 3건(0.5%)이고, 피해구제율은 평균 59.8%이다. 특이한 것은 위 기간 동안 성명권(2005년 7건-모두 취하, 2006년 1건, 2007년 상반기 2건)에 관한 신청건수는 미미하나 명예훼손(신용훼손 포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사건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고, 음성권(2005년 2건, 2006년 7건, 2007년 상반기 5건)과 프라이버시권(2005년 0건, 2006년 4건, 2007년 상반기 6건)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초상권에 관한 건수는 초년인 2005년에 8건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 42건으로 5배나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5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로써 언론에 의한 이들 권리의 침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많이 신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또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기간 동안 명예훼손(신용훼손 포함)을 제외한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사건의 피해구제율에 관하여 보면, 초상권이 평균 72.6%, 음성권이 평균 58.6%, 성명권이 평균 9.5%(2005년 모두 취하된 7건 중 2건이 실제로 손해배상이 되었고, 2006년 1건은 조정불성립 결정되었으며, 2007년 2건은 모두 취하되었다), 프라이버시권이 평균 70.9%(2005년에는 신청건수가 없어 산정에서 제외)가 되어 성명권을 제외하고는 초상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모두에 관한 피해구제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초상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이 사건들의 신청이유가 대부분 납득할 만한 것이었고, 법원을 통한 피해배상 못지않게 언론중재위원회의 권리구제가 매우 중요함을 느끼게 한다.

⑤ 중재에 관하여 보면, 2006년 7건(손해배상사건 5건 = 초상권 2건 + 음성권 1건 + 프라이버시권 2건), 2007년 상반기 9건(손해배상사건 8건 = 초상권 6건 + 프라이버시권 2건)으로 모두 16건이 100% 중재결정이 났고, 침해유형별로 보면, 위 1년 반 기간 동안 명예훼손이 2006년 3건(18.8%), 초상권이 2006년 3건, 2007년 상반기 7건 모두 10건(62.5%), 성명권이 2006년 1건(6.3%), 프라이버시권이 2007년 상반기 2건(12.5%)인데, 전체 중재사건 중 손해배상사건이 압도적이고 그 중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전부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룬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피해구제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어

나.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다룬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에서 피해자와 언론사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자, 법률, 판례, 학설에서 논의된 인격권 및 그 침해의 내용, 위법성 조각사유, 손해배상 그리고 판례의 사례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사례에 나타난 위자료 금액을 살펴보기로 한다(다만, 언론중재법이 정하는 개별적 인격권 중 생명·자유·신체·건강에 관한 신체적 인격권은 언론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쉽지 아니하거나 사례를 찾기 힘들고, 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등에 관한 인격권은 사례도 적을뿐더러 프라이버시권과 경합하는 경우가 많아 이하에서는 인격권 일반, 개별적 인격권 중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II. 인격권

1. 일반 사항

가. 개념 및 근거

(1) 언론중재법은 인격권을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인격권을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로 평가하였고⁶⁾, 대법원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인격권이라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명예나 프라이버시가 인격권의 일종이라고 판시하였으나⁷⁾, 인격권의 구체적인 개념을 명확히 제시한 바는 없다.⁸⁾

헌법과 언론중재법의 규정,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태도, 학자들의 견해들⁹⁾을 종합하면, 인격권을 넓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의 궁극적 목적과 기본이념)를 유지·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헌법 제10조 제1항 후문의 행복추구권 = 제11조 평등권 내지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는 국민의 자유

6) 헌재 1990.9.10. 89헌마82 결정, 1997.7.16. 95헌가6내지13(병합) 결정

7) 대법원 1988.10.11. 85다카29 판결, 1997.10.24. 96다17851 판결

8) 다만,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7.8.7. 97가합8022 판결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의 개념을 인정하였다.

9) ①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445면과 박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00면 :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신체·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② 김민중, 민법총칙, 두성사, 88면 : '인간의 고유한 가치 및 존재, 육체적·정신적 자유와 그 완전성의 존엄에 대한 권리', ③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45면 : '인격의 주체로서 개인이 갖는 권리로서 생명·신체·명예·신용·정조·성명·초상·창작·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독점적·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 ④ 홍춘위, "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8면과 김덕철, "언론에 의한 인격권침해와 민사상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0면 : '생명·신체·건강 등을 포함한 인격적 속성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이익의 총체', ⑤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손해배상·원상회복·금지청구)", 민사판례연구 11집, 박영사, 661면 : '권리능력자와 분리할 수 없는 그 인격에 전속하는 자유, 명예, 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을 총칭하는 포괄적 권리로서 물권과 같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배타적 권리'로 각 정의하고 있다.

와 권리)을 행사하여 권리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그 인격에 전속하는 모든 인격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일반적 인격권)로, 좁게는 권리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고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개별적 인격권, 이는 생명·자유·신체·건강에 관한 신체적 인격권과 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정신적 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인격권은 헌법에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조항¹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조항¹¹⁾, 언론중재법과 민법 기타 앞서 본 실정법들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된다.

나. 성격

(1) 근세 초기까지는 인격에 관한 가치가 권리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인격적 이익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현재는 대부분 인격권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인격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닌 사권으로서 기능하고, 일반적 인격권은 포괄성과 불확정성을 가지고 개별적 인격권의 모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또 인격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성(침해예방, 금지 청구 가능), 당해 사람에게 전속하는 일신전속성(양도, 상속, 포기, 압류 불가)을 가진다.¹²⁾ 그러나 인격권이 침해되어 이미 성립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위자료청구권도 상속, 양도, 포기, 압류가 가능하다.¹³⁾

(2) 성명, 초상, 음성, 연기 등 인격적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 파악되므로¹⁴⁾, 양도¹⁵⁾, 상속¹⁶⁾,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0) ① 헌재 1990.9.10. 89헌마82 결정(간통죄 합헌), ② 헌재 2001.7.19. 2000헌마546(유치장 시설 불량 방치가 인격권 침해로 위헌), ③ 대법원 1988.10.11. 85다카29 판결(잡지 인신공격적 수기 게재 명예훼손 인정)

11) 권영성, 위 책, 법문사, 445면.

12) 인격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홍춘희, 위 논문 150 내지 157면 참조

13) 대법원 1976.4.13. 75다396 판결. 다만,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나 집행권원(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구체적 인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손해액의 수량만이 남았을 때에 한하여 양도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있거나 청구를 하였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양도 등이 불가능하다.

14) ① 서울고법 1998.3.27. 97나29686 판결(확정)은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연기 등을 스스로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전속적 또는 1회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초상권으로 판시하여 초상권이 재산권임을 인정하고 있다. ② 서울지법 1999.4.30. 98가합79858 판결(Richardson-Vicks Inc. 대 주식회사 뷰티퍼플),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27. 2004가단235324 판결(정준하 대 캐릭터코리아), ④ 서울중앙지법 2006.4.19. 2005가합80450 판결(이중범 외 122명 대 게임물 제작·제공 회사), ⑤ 서울동부지법 2006.12.21. 2006가합6780 판결(이효석 상속인 대 상품권 발행업체), 퍼블리시티권이 인격권인지 재산권인지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는 박성호, “인격권의 변용(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3집 2호(2006. 10.), 한양대학교, 397, 398면 참조(위 저자는 인격권설 입장)

15)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및 근거에 관한 논의로는 정희섭,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Publicity)권리”, 재산법연구 20권 1호(2003. 8.), 법문사, 139, 140, 143면(양도성 인정); 김도희,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 한양법학 제18집(2005. 12.), 211면(양도성 인정);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초상·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1996년 11월호, 113 내지 115면(양도성 부인, 단지 사용권 부여 및 이용 허락만 인정); 박성호, 위 논문, 398면(양도성 부인) 각 참조, 서울지법 1999.4.30. 98가합79858 판결(Richardson-Vicks Inc. 대 주식회사 뷰티퍼플)은 양도성 인정.

16)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및 근거에 관한 논의로는 정희섭, 위 논문, 144 내지 146면(상속성 인정); 김도희, 위 논문, 209,

인격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성,
당해 사람에게 전속하는 일신전속성 등의
성격 지니고 있어

인격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절대권성이 있어 제3자에 대하여 무단이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설정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고 제3자에 대한 양도, 사용허락의 점에서 상표권, 저작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적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라는 점과 보호법익이 “재산적 가치”라는 점에서 성명권, 초상권, 음성권 기타 개별적 인격권과 구별된다.

다. 내용 및 제한

(1) 언론중재법에 정한 개별적 인격권 외에도, 인격권의 개념을 광의로 보면,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

권의 모든 내용 즉, 헌법 제11조 내지 제36조에 정한 기본권¹⁸⁾과 제37조에 정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¹⁹⁾를 모두 포함한다.²⁰⁾

(2) 인격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한 내용이려면, 국가적·사회적·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사회적 안녕질서), 공공복리(국민공동의 행복과 이익)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격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예컨대,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²¹⁾)로써 제한할 수 있다.²²⁾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상 요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211면(상속성 인정) : 한위수, 위 논문, 인권과 정의 1996년 11월호 115 내지 117면(상속성 부인) : 박성호, 위 논문, 398면(상속성 부인) 각 참조, 서울동부지법 2006.12.21. 2006가합6780 판결(이효석 상속인 대 상품권업체)은 상속성 인정, 그러나 서부지법 1997.8.29. 94가합13831 판결은 이를 부인.

17) 한위수, 위 논문, 인권과 정의 1996년 10월호, 30면.

18) ① 평등권, ② 자유권적 기본권(인신의 자유권(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 자유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포함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경제적 자유권(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정치적 자유권(정치적 자유, 참정권, 정치적 활동권)), ③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④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권, 근로의 권리, 근로3권,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건강권) 등

19) 권영성, 위 책, 310, 311면 : ① 자기결정권(자기의 문제를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헌재 1990.9.10. 89헌마82),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자신이 원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행동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 : 헌재 1991.6.3. 89헌마204, 헌재 1998. 10. 15. 89헌마168), ③ 평화적 생존권, ④ 휴식권(헌재 2001.9.27. 2000헌마159), ⑤ 일조권, ⑥ 생명·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⑦ 수면권, ⑧ 스포츠권, ⑨ 소비자의 권리, ⑩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헌재 2000.4.27. 98헌가16), ⑪ 저항권

20) 김덕철, 위 논문 38 내지 43면은 그 외에 ① 정조에 관한 권리(성희롱, 성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포함 : 서울고법 1995.7.25. 94나15358 판결), ② 학문과 예술에 관한 권리, ③ 자연적 혈연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권리, ④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헌재 1991.7.22. 89헌가106 결정), ⑤ 자기운명결정권(환자의 자기결정권 포함), ⑥ 자기정보통제관리권(서울고법 1995.8.24. 94구39262 판결)을 언급하고 있다.

21)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2) 헌재 1990.9.10.자 89헌마82 결정(간통죄 합헌)

라. 주 체

자연인은 출생 때부터 인격권을 가지고 사망으로 인격권을 상실한다(민법 제3조). 태아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2조)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므로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²³⁾ 생명·자유·신체·건강·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음성·대화에 관한 인격권, 정조에 관한 인격권, 자기운명결정권의 경우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명예, 초상, 성명, 저작물 및 사적문서에 관한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 관련권, 학문과 예술에 관한 권리, 퍼블리시티권 등의 경우 법인, 조합,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다.²⁴⁾

사자(死者)가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²⁵⁾

마. 피해자 특정

(1)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언론사가 이니셜 표기나 화면처리 및 음성변조 등으로 피해자의 특정을 피하는 조치를 취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의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자료화면 등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2)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수가 적거나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²⁷⁾

(3) 소설, 영화, 연극, 만화, 회화, 사진 등 창작품이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경우 이름, 성격, 경력, 작품의 줄거리, 표현 방식,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독자나 관객의 입장에서 보아 실제 인물과 동일성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특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인명, 직업, 장소, 상황 등을 실제와 달리 표현하는 등으로 작가가 배려를 함으로써 명확하게 실제 인물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을 부인할 것이다.

23) 안상운,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면도 같은 취지.

24) 명예훼손에 관하여 판결은 법인(한국소비자보호원 대 파스퇴르, 서울고법 93나6210), 조합(한국통신노조 대 박홍, 서울지법96가합94047), 단체(한국프로듀서연합회 대 일요신문사 및 이덕화, 서울지법95가합26099, 97978)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서울동부지법 2004.2.12. 2002가합3370 판결(항소심 조정 성립)은 일반인(주부 모델)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됨을 인정하였다. 한위수, 위 논문, 인권과 정의 1996년 11월호, 110면도 이를 인정.

25) 상세는 안상운, 위 논문 25 내지 27면 ;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226, 239면 각 참조. 서울동부지법 2006.12.21. 2006가합6780 판결(이효석 상속인 대 상품권 발행업체)은 원칙적으로 사자가 초상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자의 초상권을 사용한 것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26) 서울지법 1997.9.3. 96가합82966 판결(항소기각, TV뉴스 앵커 출신의 방송인이 음주측정 현장에서 경찰에게 신분을 밝히며 항의하는 모습을 방영한 사건)

27) ① 대법원 2006.5.12. 2004다35199 판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하여, 기동수사대경찰관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② 대법원 2003.9.2. 2002다63558 판결(‘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가 개별 검사를 지칭한다는 취지로 판시).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동의를 의해 이루어지거나 공적사항에 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 질 경우 위법성 조각돼

바. 위법성 조각사유²⁸⁾

(1) 동의

(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의 보도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²⁹⁾ 한도 안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한다. 수사기관이나 청문회에서의 출두행위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하는 행위, 길거리 응원, 스포츠 경기, 콘서트, 시위·집회 등에 참여 또는 관람하거나(다만, 특정인을 부각해서 촬영한 경우나 공익의 목적에 사용될 것이 아닌 경우와 같이 초상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제외), 스스로 포즈를 취하거나 TV 카메라 앞에서 친근하게 웃거나 대가를 받았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본다.³⁰⁾

(다) 동의가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초상 본인인 경우 그의 동의만으로 부족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³¹⁾ 사망한 자의 초상을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프라이버시를 공개할 경우 위법하고³²⁾, 원하지도 않은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여 보도에 동의하거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³³⁾

(2)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 명예훼손

이 위법성조각사유가 법정되기 전에도 대법원 판례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공익성)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진실성),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상당성)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³⁴⁾ 의견 또는 논평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아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위법성

28)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9) 피해자의 동의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라 함은 ① 미성년자 등 의사무능력자의 동의,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조건으로 한 동의, ③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동의, ④ 피해자의 동의가 진의가 아니고 이를 언론이 인식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⑤ 동의 조건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 ⑥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동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0.1.25. 89가합13064 판결(항소기각) : 서울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에서 서울승마협회 임직원이 마부로 참여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다른 임직원 회사의 연하카드에 사용한 사안에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그 초상이 촬영, 공표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았다.

31)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제39권 제1호(1998년 5월호), 204 내지 206면 ; 김덕철, 위 논문, 89면.

32) 대법원 1998.9.4. 96다11327 판결(유방확대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여자 대 MBC)

33) 서울지법 2000.2.2. 99가합64112 판결(백지연 대 스포츠투데이 최윤정 기자)

34) 대법원 1988.10.11. 85다카29 등 다수

판단의 기준이 된다.³⁵⁾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타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

적·동기가 공익성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된다.³⁶⁾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정보원 등)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신속보도 요청성,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용의 용이성,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 여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³⁷⁾

(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언론의 보도라

35) 대법원 1999.2.9. 98다31356 판결(연극 '0.917' 보도 사건)

36) ① 대법원 1996.5.28. 94다33828 판결(○○○ 대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 유학사기에 관한 기사의 공익성 인정), ② 1998.7.14. 96다17257 판결(범죄사건 자체 보도의 공공성 인정, 범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③ 서울지방법원 2000.10.11. 99가합109817 판결(○○○ 대 언론사들, 기사가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과 성적 욕구의 대리만족,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궁금증 고조 등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고 보여지므로, 공익목적 부인), ④ 대법원 2003.7.22. 2002다62494 판결(기자회견의 주목적이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 불공정 등을 고발함에 있으므로 공익성 인정), ⑤ 대법원 2005.4.29. 2003도2137 판결(국립대학교 교수의 여학생 성추행 내용의 글을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공익성 인정), ⑥ 대법원 2006.3.23. 2003다52142 판결(방송사가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를 다룬 보도의 공익성 인정)

37) ① 대법원 1988.10.11. 85다카29(변호사 대 주부생활, 수기를 잡지에 게재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원문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장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피해자가 약덕변호사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잡지에 게재한 경우 상당성 부인), ② 대법원 1996.5.28. 94다33828 판결(○○○ 대 코리아헤럴드, 다른 언론 매체의 보도내용을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경우 상당성 부인), ③ 대법원 1997.9.30. 97다24207 판결(공직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정적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경우 상당성 부인), ④ 대법원 1999.1.26. 97다10215, 10222 판결(기사가 검사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 및 배포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상당성 인정. 그러나 기사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하고 별도의 취재 없이 마치 자신의 직접 취재에 의하여 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경우에는 상당성이 부인), ⑤ 서울지방법원 2000.10.11. 99가합109817 판결(○○○ 대 언론사들, 기사는 원고와 여자 텔레트가 모두 외국에 있었고 언론기관을 피하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못하고 검찰관계자로부터 수사시작 사실을 듣고 주변정황에 비추어 진실일 것으로 믿고 보도한 경우 범죄혐의 부분은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성 부인), ⑥ 대법원 2006.1.27. 2003다66806 판결(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한 것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 상당성 부인), ⑦ 대법원 2006.5.12. 2004다35199 판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편파 강압 수사 문화방송 보도 건에서 상당성 부인)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야 위법성 인정해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 또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그 보도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³⁸⁾

초상권과 명예권이 별개의 인격권으로 그 법익이 다르므로 명예훼손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더라도 초상의 공개의 필요성 및 공개방법의 상당성을 따로 검토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져야 한다. 명예훼손의 경우와 달리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도 성립하므로 언론에 의하여 수집·공개된 사생활이 진실한 것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3) 공적 인물

(가) 명예훼손

헌법재판소는 공적 인물과 사안, 사적 인물과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고 실시하였고³⁹⁾,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실시하고 이에 덧붙여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관한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야만 위법성을 인정한다.⁴⁰⁾

(나) 초상권 침해

모델,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공적 인물에 있어서는 통상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일반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는 점에 비추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제한된다.⁴¹⁾ 그러나 정

38) ①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3.30. 93나31886 판결, ② 서울지법 1997.9.3. 96가합82966 판결(앵커 출신 방송사 차장 음주단속 사건), ③ 대법원 1998.7.14. 96다17257 판결(KBS 등 언론사가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인 피의자가 승소 가능성이 없자 청부폭력배에게 남편을 혼내 주고 위자료조로 5억 원을 받아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제의하고, 남편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 내어 남편의 소재지를 대라며 감금 폭행하였다는 오지의 기사를 보도한 사례에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으나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 ④ 대법원 1998.9.4. 96다11327 판결(유방확대술 피해자 방영 사건) : 방송이 실리론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로 인한 보상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수술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서울지법 2000.2.2. 99가합64112 판결(백지연 대 스포츠투데이 최윤정 기자) : 오랜 기간 방송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람의 경력이나 방송 활동 사항은 일반에 공개된 영역 혹은 그의 사회 활동의 영역으로 이에 대한 보도에는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⑥ 서울고법 2000.3.9. 99나43440 판결 : 부동산 매매 및 전세계약 당사자의 분쟁에 관한 보도에서 원고의 동일성, 주소지, 재산관계의 변동 및 분쟁의 발생 등 사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사생활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나 보도가 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침해된 사생활의 권리가 보도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⑦ 서울지방법원 2000.10.11. 99가합109817 판결(○○○ 대 언론사들) : 원고가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 공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적인 관심사로 된 것은 원고와 여자 텔레비트가 비디오테이프를 찍었다는 사실 자체이지 비디오테이프가 담고 있는 영상이나 음향의 내용은 아니라고 판시. 다만, MBC의 보도는 음란물 유통에 따른 폐해에 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행위 비디오테이프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난과 수사추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

39) 현재 1999.6.24.자 97헌마265 결정(강원도의원이 김정일에게 보낸 김일성애도편지 건을 보도한 강원일보 측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40) ① 대법원 2002.1.22. 2000다37524, 37531 판결(민변 등 대 한국논단), ② 대법원 2002.12.24. 2000다14613 판결(○○○ 대 한국논단), ③ 대법원 2006.5.12. 2004다35199 판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대 문화방송), ④ 대법원 2006.3.23. 2003다52142 판결(동아일보 대 문화방송)

41) ① 서울민사지법 1991.7.25. 90가합76280 제16부 판결(확정, ○○○ 대 한국레슬레), ② 같은 법원 1995.6.23. 94가합

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까지 용인할 것은 아니어서 보도의 내용과 무관함에도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보도에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책자나 기사에서 그 유명인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초상을 상품선전에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욕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⁴²⁾

(다) 프라이버시권 침해

공인이라도 개인으로서 가지는 사생활(프라이버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또는 명시적 반대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⁴³⁾ 그러나 공적 인물⁴⁴⁾에 대하여는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 사회 일반의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면책된다.⁴⁵⁾

사. 입증책임

언론의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가 언론 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 보도가 위법하다는 점,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보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언론의 보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함은 언론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⁴⁶⁾

미국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려면 현실적인 악의(actual malice), 즉 허위임을 알거나 진위를 무모하게 무시하고 보도하였음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결⁴⁷⁾ 이후 이를 천재소년, 배우, 운동선수, 예술가 등에 확대 적용하는 공적 인물(public figure)에 관한 현실적 악의론이 있고, 이를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⁴⁸⁾, 우리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⁴⁹⁾

초상권의 동의의 입증책임은 촬영자 또는 공표자

9230 판결(이희소 사건). ③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5.11.24. 95가합13495 판결(임수경 결혼식 장면 방영 사건). ④ 서울지법 1996.9.6. 95가합72771 판결(항소기각, 카레이서 ○○○ 대 만화가, 저작재산권 침해만 인정하고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는 부인).

42) ①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7.25. 88가합31161 판결(여성잡지가 유명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실으면서 그녀가 발표한 사진집에 실린 사진 2매를 무단게재한 사건). ② 서울민사지법 1991.7.25. 90가합76280 제16부 판결(확정, ○○○ 대 한국레슬레). ③ 위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5.11.24. 95가합13495 판결(임수경 결혼식 장면 방영 사건)과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법 1996.6.18. 96나282 판결. ④ 서울지방법원 1997.2.26. 96가합31227 판결(월간잡지가 유명 여배우의 여동생이 혼전 성관계에 의하여 출생한 딸이라는 기사에 여배우와 여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한 사건).

43) 서울지법 2000.2.2. 99가합64112 판결(백지연 대 스포츠투데이 최윤정 기자)

44) ① 서울지법 1997.9.3. 96가합82966 판결은 TV 뉴스 앵커 출신 방송사 차장의 음주단속 현장 보도와 관련하여 증견 언론인이면서 방송을 통하여 얼굴도 널리 알려져 있는 언론인은 '공적인 인물'이라고 판시. ② 서울지법 1997.2.26. 96가합31227 판결은 1966년경부터 영화배우로 활동한 ○○○가 공인이라고 할 것이나 기사 작성 당시에는 이미 영화계를 은퇴하여 프랑스에서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어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45) 대법원 1998.7.24. 96다42789 판결(보안사가 민간인들의 동향을 감시·과찰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사안), 서울지법 1997.9.3. 96가합82966 판결(앵커 출신 방송사 보도국 차장 음주단속 사건, 항소기각 확정), 서울지법 2000.2.2. 99가합64112 판결(백지연 대 최윤정 기자)

46) 대법원 1997.9.30. 97다24207 판결, 1998.5.8. 97다34563 판결

47)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204면.

48) 김민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32면은 도입 찬성 ; 한위수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제기와 명예훼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1권(2002) 611면은 도입 반대.

49) 대법원 1997.9.30. 97다24207, 1998.5.8. 97다34563, 2004.2.27. 2001다53387 각 판결.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뜻해

에게 있고, 초상의 촬영과 관련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동의가 추정되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초상본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명예권

가. 명예의 개념

명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하는 내적 명예,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외적 명예,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하는 명예 감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⁵⁰⁾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 즉 외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⁵¹⁾

나. 명예훼손의 수단과 방법

언론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라디오·TV 방송에 의한 뉴스보도, 드라마, 시사다큐멘터리, 연예오락물 등으로, 일·주·월간지에 의한 스트레이트 기사, 대담

(인터뷰)기사, 논평·비평·사설⁵²⁾, 풍자·만평⁵³⁾, 가십기사, 독자투고, 수기기사, 시사다큐멘터리, 고발·폭로 보도, 광고, 풍자 등으로, 언론사의 단행본 소설, 수필집, 학술지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스트레이트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이 가장 많을 것이나, 인터뷰 사실이 없거나 거부당하였음에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하거나⁵⁴⁾ 인터뷰 조건을 무시하거나⁵⁵⁾ 인터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다른 취지로 보도되거나⁵⁶⁾ 인터뷰 기사가 소문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⁵⁷⁾ 대담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허위이든 진실이든,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든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든 불문한다.⁵⁸⁾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 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

5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3, 175, 176면

51) 대법원 1988.6.14. 87다카1450 판결

52)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0.10.12. 89가합18505 판결

53) 대법원 2000.7.28. 99다6203 판결(○○○대 경향신문, 항공권 구입, 해외도피 의논 장면 풍자만화)

54)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7. 93가합25344 판결(인터뷰 거절 및 5분 간 상식적 질문 및 답변 불과)

55) 북부지원 1994.1.12. 93가합3572 판결(최소화 약속에 위반하여 소설 소개에 이혼 등 사생활을 기사화)

56)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3.12.20. 93가합1107 판결.

57) 민사지방법원 1989.1.18. 88가합20604 판결(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근거 있는 양 보도하여 오인하게 함)

58) ① 대법원 1985.4.23. 85도431 판결, ② 서울고법 1989.11.29. 89나8158 판결(마드모아젤 '전00과 김00의 소문의 진상 확인' 기사 사건)

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이 된다.⁵⁹⁾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⁶⁰⁾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책임이 있으나,⁶¹⁾ 사실 적시를 전제로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 그 책임은 없다.⁶²⁾ 그러나 오로지 인신공격 목적으로 순수의견을 표명한 경우 또는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 사항에 관하여 악의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⁶³⁾ 명예훼손 여부나 사실 또는 의견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⁶⁴⁾

3. 초상권

가. 개념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 그 대가를 구할 수 있는 권리(초상영리권)를 내용으로 한다.⁶⁵⁾ 초상에는 얼굴, 용모, 뒷모습 등 신체적 특징을 포함하여 사람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가시적인 개성을 포괄하고, 사진, 동영상, 컴퓨터로 작성한 인물화면, 초상화나 목탄스케치로 작성한 인물화, 몽타쥬, 소묘, 풍자화, 만화, 인형, 초상 본인과 닮은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림(illustration)이나 희화(caricature) 등을 만들어 이용한 경우 등 표현수단에 제한이

59) 대법원 1994.4.12. 93도3535 판결

60) 대법원 2006.5.12. 2004다35199 판결

61) 대법원 1999.2.9. 98다31356 판결('0.917'이라는 희곡의 발표자 이름을 거명하며 이 희곡이 남녀 어린이와 중년 남·여성 사이의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함으로써 벗기기 연극으로 관객을 끌려고 하는 천박한 상업주의의 외설작품이라는 데에 주안점을 둔 보도 사건)

62) 대법원 2000.7.28. 99다6203 판결(항공권 구입, 해외도피 의논 장면을 담은 풍자만화 게재)

63) ①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366면, ② 대법원 2001.7.27. 2001다28626 판결, ③ 대법원 2002.1.22. 2000다37524, 37531 판결 : '막가파 구의회', '막가파 구의원' 또는 '동네반장보다 못한 놈' 등의 표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경멸의 의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됨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④ 대법원 2003.3.25. 2001다84480 판결 : 특정번호사의 소송수행 잘못과 관련하여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는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으로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이탈하였다고 판시.

64) ① 대법원 1997.10.28. 96다38032 판결(목양신문 발행인 대 크리스천 한국지)과 서울고법 1994.1.21. 93나22236 판결은 명예훼손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표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② 대법원 2006.9.28. 2004도6371, 1998.3.24. 97도2956, 2006.8.25. 2006도648, 2000.2.25. 98도2188, 2003.6.24. 2003도1868 판결 등은 사실이나 의견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65) 대법원 2006.10.13. 2004다16280 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12.21. 2006가합6780 판결

초상권은 촬영·작성 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해

없다.⁶⁶⁾ 판례는 동의 없는 촬영과 공표를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왔다.⁶⁷⁾

나. 촬영·작성 거절권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촬영하거나⁶⁸⁾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된다. 사적인 장소(집, 병원 침대, 회사 내부 등)에서 무단 촬영되는 경우, 초상 본인이 공적인 인물로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 그러나 공원, 개방된 등산로, 스포츠 경기장, 시위·집회 현장⁶⁹⁾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초상 본인이 촬영을 의식하고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초상권 침해

가 되지 않는다.⁷⁰⁾ 공개된 장소를 촬영한 자료화면에서 초상이 부수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여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더라도 동의 없이 그 부분을 확대하여 배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된다. 촬영·작성의 목적⁷¹⁾ 또는 공표 의도는 논의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업적 이용 목적에 한정하여 초상권 침해를 논할 것은 아니다. 조건을 위반하여 촬영 또는 작성한 경우 그 조건위반의 점을 초상 본인이 알았다면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된다.

다. 공표 거절권

촬영·작성 시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여 공표의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드시 촬

66) ①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민사판례연구 11권(1999), 박영사, 756면, ②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5.11. 87가합 6175 판결, ③ 서울지방법원 1997.8.1. 97가합16508 판결(TV사극의 등장인물의 특징을 목탄 스케치로 재현하여 인물화를 만든 다음 이를 광고에 사용한 사안에서 초상권 침해 인정), ④ 서울지방법원 2000.10.11. 99가합109817 판결(○○○ 대 언론사들 : 얼굴 이외의 부분만 나오는 사진이라도 기사로 성행위 장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면서 비디오테이프 중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게재한 것이어서 사진에 나오는 신체부분이 원고의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초상권 침해 인정)

67) ① 서울지방법원 1993.7.8. 92가단57989 판결(이화여대생 대 뉴스위크사 : 주간잡지의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 기사 중간에 “돈의 노예들: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 부제를 단 여대생 사진을 무단수룩한 사례), ②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20. 94가합36754 판결(‘압구정동 문화의 실체를 벗긴다’ 기사에서 남자가 텔런트, 여대생들에게 말을 붙이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월간잡지에 게재한 사진), ③ 서울지방법원 1997.2.26. 96가합31227 판결(독자적으로 입수한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사례), ④ 서울지법남부지원 1997.8.7. 97가합8022 판결(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동의 없이 대화 장면을 방송한 사례), ⑤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8.2.27. 97가합15881 판결(동의 없이 사진을 잡지에 게재한 사례), ⑥ 서울지방법원 1998.8.19. 97가합96337 판결(졸업 앨범의 사진을 입수하여 동의 없이 우먼센스 기사에 삽입한 사례)

6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3.30. 93나31886 판결(이화여대생 대 뉴스위크지)

69) 지홍원, 위의 논문 223면은 집회나 시위 등에 참가한 경우에는 초상 본인이 초상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한다. 엄동섭 위의 논문 760면은 이에 반대하여 참가한 점만으로 초상권 포기로 볼 수 없고 앞장서거나 주도한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70) 다만, 대법원 2006.10.13. 2004다16280 판결(원고 대 신동아화재)은 초상권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3.30. 93나31886 판결은 반드시 은거에의 침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야만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71) 대법원 2006.10.13. 2004다16280(원고 대 신동아화재) 판결은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영·작성 시나 그 후에 공표에 대한 승낙이 필요하다.

동의 없이 부정적인 보도와 함께 초상이 공표되는 경우, 촬영 시 동의를 받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되었거나 이미 공표된 자료이었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된다. 부정적인 기사에서 비록 '이 사진은 기사와는 관계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붙이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된다. 촬영 당시의 목적 외에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비록 그 사진에 부정적인 모습이 없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된다.⁷²⁾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⁷³⁾ 매체에 실린 사진이나 이미 방송된 화면을 승낙 없이 무단 복제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⁷⁴⁾ 정보원으로부터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을 제공받아 게재한 경우,⁷⁵⁾ 촬영조건과 다르게 게재된 경우,⁷⁶⁾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사진을 사용한 경우,⁷⁷⁾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을 삽입한 경우,⁷⁸⁾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 초상을 동의 없이 게재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된다.

공표에 대한 승낙이 있었으나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되므로 공표 자체뿐만 아니라 공표의 방법·목적에 대한 승낙도 반드시 필요하다.⁷⁹⁾

제3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람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 그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도 그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초상권 침해가 된다.⁸⁰⁾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초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비방 목적이 없는 시사보도에 사용한 경우

72)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22. 92가합12051 판결(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는 정숙한 모습의 사진)

73) ① 서울고법 1992.8.20. 91나64670 판결(성화봉송 사진을 연하카드에 사용), ②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8.2.27. 97가합15881 판결('내가 연하의 남자와 사귀는 이유'를 게재한 여성잡지가 기사와 무관한 여자 5명의 사진을 마치 그 5명이 인티뷰에 응한 여자들의 사진인 양 삽입한 사진)

74) 서울고법 1990.5.4. 89나36528 판결

75) 대법원 1989.11.14. 89도1744 판결(대 간첩작전시의 기념촬영사진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로 제공하여 월간잡지에 게재한 경우)

76)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9.9. 87가합6032 판결

77) 수원지방법원 1993.4.20. 92가합9602 판결

78) ①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7. 90가합15896 판결(우먼센스 표지 전면에 "권○○양의 자신의 성폭행 과정을 솔직히 쓴 문제의 수기" 기사에서 전체의 일부인 저자의 성폭행 피해 과정만을 발췌 강조하고 기사와 관련 없는 선정적인 사진을 삽입하며 성폭행 장면만을 강조하는 리드기사를 삽입한 사건), ② 서울고법 1996.6.18. 96나282 판결(호화 웨딩드레스 뉴스 장면에 입수경의 결혼식 장면을 방영한 사건)

79) ① 서울고법 1989.1.23. 88나38770 판결(한혜숙 대 럭키금성상사 : 카탈로그용 사진의 촬영 및 광고에만 승낙 했음에도 월간잡지에까지 이를 사용한 사례), ②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7.25. 88가합31161 판결(미스코리아 출신의 선전용 사진영상집의 사진 중 비교적 선정적인 사진 2매를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가 실린 여성잡지에 게재한 사례), ③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0.1.25. 89가합13064 판결(항소기각, 서울승마협회 홍보이사 대 피고회사 :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식 행사에 마부로 참여한 승마협회 직원의 사진을 타 직원 회사의 사적인 연하카드에 사용한 사례), ④ 서울남부지방법원 1997.8.7. 97가합8022 판결(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사례), ⑤ 대법원 1998.9.4. 96다11327 판결(유방확대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원고가 방송사에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승낙하였으나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사례), ⑥ 서울지방법원 2000.7.4. 99나83698 판결(도주차량 추적 운전사의 동의 받고 방영 후 동의 없이 복제판매한 사례), ⑦ 서울중앙지법 2006.11.29. 2006가합36290 판결(서울고법 계류중 : 연주자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촬영을 승낙하였는데도 쉽게 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고 그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한 사례)

80) ① 서울민사지법 1991.7.25. 90가합76280 제16부 판결(○○○ 대 한국레슬레), ② 서울고법 1998.3.27. 97나29686 판결(○○○ 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이버시권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어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⁸¹⁾

라. 초상영리권

초상영리권은 초상이 무단으로 영리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표거절권과는 다르다. 초상이 시사보도에서 사용되더라도 촬영·작성 거절권이나 공표 거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초상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초상을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초상 본인이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 퍼블리셔티권의 주체를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여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 경우 초상영리권은 곧 퍼블리셔티권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일반인에게는 퍼블리셔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이 경우 본인은 퍼블리셔티권의 침해로 인한 사용료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단지 초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만을 할 수 있다. 초상영리권은 주로 일반인이 갖는 일신전속적인 인격권으로서 침해 시 위자료 청구가 주된 관심사이고 양도나 상속이 불가하며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퍼블리셔티권은 주로 유명인이 갖는 재산권으로서 침해 시 위자료 보다는 모델

료 청구가 주된 관심사이고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며 법률로 규정되지 않고 판례로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권리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⁸²⁾

4.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가. 보호의 필요

국민은 사생활 영역에서 인격발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고, 행동, 교제, 대화, 거주 및 이동, 사적 공간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교란 거부, 사적 사항 공표·악용 거부 등의 권리를 가진다. 정보가 재화나 에너지 못지않은 자원이 되는 현대의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수집·정리·보관·전파의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자기만의 사적 영역 정보도 타인에 의하여 수집·관리되기 마련이고 부득이 공개될 우려도 있어 개인의 사생활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⁸³⁾ 카메라 등 광학기기와 도청장치 등 전자기기, 자동 및 대용량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져 대다수 국가들이 사생활을 판례나 법률 또는 헌법으로 보호하기에 이르렀다.⁸⁴⁾

대법원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

81) 함석천,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법조협회, 월간법조 2006년 12월호, 209면.

82) 함석천, 위 논문, 209 내지 214면 참조.

83) 권영성, 위 책, 443, 444면;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황색 저널리즘의 폐해와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로는 성동규, “스포츠신문의 연예인 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2002년 봄호), 82 내지 87면 참조.

84) 미국, 독일, 일본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하여는 양창수,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제175호(1991. 3.); 김상용, “인격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판례월보 제278호(1993. 11.); 강남진, “인격권의 보호에 대한 하나의 제안”,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13·14호(1996); 김도희, 위 논문 등 참조.

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다.⁸⁵⁾

나. 개념

프라이버시권에 초상권, 성명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⁸⁶⁾가 있으나, 언론중재법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초상권, 성명권 등 개별적 인격권과 동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편의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프라이버시권으로 보는 것이 옳다.

프라이버시권을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고 침해받지 않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⁸⁷⁾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되려면,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①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②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③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⁸⁸⁾

언론이 편지나 일기와 같은 사적문서를 수집·공개하거나 강연이나 강의를 몰래 녹음하거나 사적 대화나 전화상 대화 또는 회의 내용을 도청·녹음하거

나 망원 렌즈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거나 타인의 이름을 공표하거나 명예훼손이 따르는 범죄보도를 하거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을 공표 또는 변작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사생활의 비밀(프라이버시)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적문서에 관한 인격권, 음성권, 대화권, 초상권, 명예권,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별적 인격권의 침해가 경합되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없이도 가능하고, 진실이라고 밝혀졌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고, 프라이버시가 노출됨으로 인한 손해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형사 처벌되지 않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프라이버시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명예권과 구별된다.

다. 침해

개인의 남녀관계, 가족관계, 학력 및 사회적 경력, 결혼 및 이혼 경력,⁸⁹⁾ 병력이나 신체 및 정신상의 결함, 재산관계, 사상이나 정치적 신조, 민·형사 사건에 관련된 정보 등 개인정보 등이 침해의 대상이 된다.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⁹⁰⁾ 사생활을 공

85) 대법원 1998.9.4. 96다11327 판결(유방확대 수술 부작용 피해자의 그림자 옆모습 방영 사례), 대법원 1998.7.24. 96다42789 판결도 같은 취지

86)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376면

87) 김도희, 위의 논문 190면, 대법원 1998.7.24. 96다42789 판결(군 정보기관이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사례)

88) 대법원 2006.12.22. 2006다15922 판결

89) 서울지법 2000.2.2. 99가합64112 판결

90) ① 서울고법 1996.8.20. 95나44148 판결(보안사의 민간인 정보수집 사건), ② 대법원 2006.10.13. 2004다16280 판결(원고들 대 신동아회계)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뜻해

개한 경우,⁹¹⁾ 은거 또는 사사(私事)에 침입하여 몰래 카메라, 비밀녹음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 일기, 서신, 대화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중이 오해하도록 하는 공표 등이 사생활 침해의 모습이다.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⁹²⁾

공중이 오해하도록 하는 공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가능할 것이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명예훼손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사항을 잘못 공표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그 개인에 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범리가 아닌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의율할 수 있다.⁹³⁾

5. 퍼블리시티권

가. 인정 필요성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광고 산업의 발달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예술가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성명·초

상·기타 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인격적 요소가 본인의 승낙 없이 또는 계약 범위를 넘어 광고나 티셔츠, 달력, 카드 등 물품에 사용됨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이 분쟁의 가해자는 주로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 언론을 이용하는 광고주나 물품의 제조·판매회사가 될 것이나, 방송사나 신문사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획 행사를 홍보하거나 출판물을 광고하기 위하여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성명·초상 등 인격적 요소를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논하는 이 글에서 논할 이익이 있다고 본다). 이 경우 통상 성명권·초상권·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의 침해가 인정되어 피해자는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과 달리 성명이나 초상 등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의욕하는 유명인으로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보다는 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정당한 계약이 있는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모델료 등)의 박탈이나 이미지 손상에 따른 재산적 손해의 보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무단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91) ① 대법원 1998.9.4. 96다11327 판결(유방확대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여자 대 MBC), ② 서울지법 1998.8.19. 97가합 96337 판결(○○○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 및 ○○○의 이름, 나이, 출신학교, 주거 상황, 재혼 및 삼촌 사실이 담긴 기사를 우먼센스에 게재), ③ 서울지법남부지원 1997.8.7. 97가합8022 판결(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대화 장면을 방영한 사례)

92) 대법원 2006.10.13. 2004다16280 판결(원고들 대 신동아화재)

93) ① 서울지법 1993.12.7. 93가합25344 판결(기자가 취재를 거절하는 원고에게 3 내지 5분 간의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원고가 이에 소극적으로 답변하였을 뿐임에도 원고가 스스로 인터뷰를 통하여 전 남편의 과거나 이혼사유를 밝힌 것처럼 허위 보도한 사안에서 명예훼손과 함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사례), ② 서울지법 1997.2.26. 96가합31227 판결(유명 여배우였던 원고의 여동생이 나이 차이가 20년이고 신앙의 깊이도 없으면서 봉쇄 수녀원의 수녀로 생활하면서 취재진을 피한다고 묘사함으로써 자매간이 아니라 모녀 사이일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데 대하여 명예훼손과 함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사례)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다.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상품에 부착함으로써 발생하는 판매촉진의 효과는 유명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재산적 가치 그 자체로 보호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 침해 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 성명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으로만 규율하기에는 그 범리가 미흡하고,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법 보호 외의 영역에 두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비록 불법행위 법리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유명인의 성명·초상이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는 재산권으로서의 별도의 권리(퍼블리시티권)를 인정함으로써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⁹⁴⁾ 그리고 양도

성이 없는 성명권·초상권과 달리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야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 권리를 양수한 타인도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는 일신전속적인 인격권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 재산권 측면이 더 커서 인격권 범리만으로는 이를 규율할 수 없고 재산권의 범리로 의율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인격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 일찍이 광고 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판례와 각 주의 성문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하였으며,⁹⁵⁾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 이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⁹⁶⁾

94) 가)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판례 : ① 서울고법 2002.4.16. 2000나42061 판결(James Dean Inc. 대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 서비스표권 등 침해금지, 다만, 실정법 부재 이유 퍼블리시티권 부인, 청구 기각),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27. 2004가단23532 판결(정준하 대 캐릭터코리아, 손해배상, 청구 인용), ③ 서울중앙지법 2006.4.19. 2005가합80450 판결(이중범 외 122명 대 게임물 제작·제공 회사, 성명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인용), ④ 서울동부지법 2006.12.21. 2006가합6780 판결(이효석 상속인 대 상품권 발행업체, 손해배상, 사망 후 62년 경과 이유로 퍼블리시티권 근거 손해배상 청구 기각)

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학설 : ①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1996년 10월호, 34 내지 37면, ② 정희섭, 위 논문, 137, 138면

다) 퍼블리시티권 도입 반대설 : 박성호, 위 논문, 400면.

95) 미국과 일본(‘초상·성명 이용권’ 또는 ‘초상·성명 영리권’)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상세 설명은,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1996년 10월호, 30 내지 34, 37면 ; 김도희, 위 논문, 201 내지 205면, ; 정희섭, 위 논문, 135 내지 137, 141, 142면 ; 김원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소고(인격권, 부정경쟁방지 법리, 저작권 요소의 구별과 권리의 범위)”, 법조협회, 법조 2003년 1월호, 97 내지 123면 각 참조

96) 가)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례 : ① 서울지법 1995.6.23. 94가합9230 판결(핵물리학자 이휘소 유족들 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출판사, 출판금지가처분신청, 문학작품인 소설에서 이휘소의 성명, 사진 등을 사용한 것이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불인정,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함), ② 서울고법 1995.7.11. 95나8375 판결(장 빼아제 퍼블리시티권 양수인 회사 대 주식회사 한국 빼아제, 상호 사용금지, 원고가 장 빼아제 본인이 아니라 그와는 독립된 법인이어서 장 빼아제의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③ 서울지법 1996.9.6. 95가합72771 판결(만화 ‘아스팔트 사나이’ 속의 모델 카레이서 ○○○ 대 만화가, 손해배상,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실존 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만화 또한 예술적 저작물의 하나라고 보는 이상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불인정), ④ 서울지법 1999.4.30. 98가합79858 판결(Vidal Sassoon으로부터 그의 성명, 초상, 사진, 퍼블리시티권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Richardson-Vicks Inc. 대 주식회사 뷰티피플, 서비스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 인용), ⑤ 서울중앙지법 2004.12.10. 2004가합16025 판결(이영애 대 화장품회사, 광고모델 계약기간 경과 후 3년 간 초상을 이용한 광고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27. 2004가단235324 판결(정준하 대 캐릭터코리아, 손해배상, 청구 인용), ⑦ 서울중앙지법 2006.4.19. 2005가합80450 판결(이중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에 관한 동일성이
본인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돼 일반 대중이
그 동일성이 특정인을 지칭함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침해 인정돼

나. 내용

퍼블리시티권을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⁹⁷⁾

성명에는 별명, 예명(이동식 화장실 “Here’ Johnny” 사건), 필명을 포함하고, 이름을 조금 변형하거나 (“Charlie Aplin” 사건) 타인의 사진에 유명인의 이름을 붙인 경우(영화의 야한 장면에 유명 소설가의 이름을 붙인 사건)에도 보호대상이 되며, 초상에는 사진, 그림을 포함하고, 뒷모습이라도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경우(링 코너에 앉은 흑인의 사진과 “The Greatest” 문구 사건), 비슷한 인물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면서 본인 명성을 이용하는 경우(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우디 알렌,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와 닮은 모델 또는 흉내 낸 모습 사진 광고)에도 보호대상이 되며, 음성은 음성만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Bette Midler 대 Ford 자동차). 특정인의 소유물이 그 사람을 상징함에 이른 경우 그 물건도 보호대상이 된다(독특한 무늬로 장식하고 특정한 번호를 붙인 프로 자동차 경주 선수의 차를 담배 광고에 사용). 배우나 탤런트 또는 코미디언이 영화나 드라마 또는 개그쇼 등에서 특정한 역할이나 배역을 단골로 맡아 말이나 행동 또는 분장 등으로 특정한 성격의 연기를 반복함으로써 그만이 가지는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한 경우, 대중은 그 연기를 접하면 곧바로 그 배우 등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독특한 역할(캐릭터)을 묘사 또는 모방함으로써 그

법 외 122명 대 게임물 제작·제공 회사, 성명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인용), ⑧ 서울동부지법 2006.12.21. 2006가합 6780 판결(이효석 상속인 대 상품권 발행업체, 사망 후 62년 경과 이유로 퍼블리시티권 근거 손해배상 청구 기각)

나) 성문법이 없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 ① 서울고법 2002.4.16. 2000나42061 판결(James Dean Inc. 대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 서비스표권 등 침해금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건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서울중앙지법 2004.10.1. 2002가단254093 판결(탤런트 김민희 전속계약인 대 주식회사 이셀피아, 피고가 김민희의 이름과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스타 스타일’ 경매 코너에 김민희의 성명과 사진을 걸고 그녀의 스타일에 맞는 의류, 가방 등 상품을 등록하여 통신판매한 사안에서 위 서울고법 판결과 같은 취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초상권 침해만을 인정한 사안)

97) 이 개념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정의를 보면, 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right of commercial appropriation) : 서울지법 1995.6.23. 94카합9230 판결(이취소 상속인 대 출판사)과 서울지법 1999.4.30. 98가합79858 판결(Richardson-Vicks Inc. 대 주식회사 뷰티피플), ②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27. 2004가단235324 판결(정준하 대 캐릭터코리아), ③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서울동부지법 2006.12.21. 2006가합6780 판결(이효석 상속인 대 상품권 발행업체), ④ 실재하는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character)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1999, 7면, ⑤ 사람의 초상·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identity)을 광고·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1996년 10월호, 29면, ⑥ 사람의 자기 동일성에 내재하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통제권 : 정희섭, 위 논문, 140면, ⑦ 인격권에 속하는 성명·초상을 기초로 하여 그 재산적 가치, 주로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이 갖는 이익획득능력(the ability to enhance earning powers)을 이용하는 권리 : 송영식·이상정·황중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1, 56면.

배우 등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호대상이 된다.⁹⁸⁾

다. 양도 또는 사용권 부여에 따른 법률관계,
상속 시 사후 존속기간

(1) 퍼블리셔티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그래서 제3자가 양도인의 초상·성명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 양수인만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양도인이 자기의 초상·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 있더라도 인격권으로서 초상권, 성명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있으므로 그의 초상·성명 등을 제3자가 합부로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인한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는 양도인만이 할 수 있다.

이용 허락 또는 통상 사용권만이 부여된 때에는 퍼블리셔티권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으므로 제3자의 침해가 있더라도 본인만이 침해의 배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독점사용권을 가진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퍼블리셔티권의 양수인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퍼블리셔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산권이므로 사후 존속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저명한 조상의 성명·초상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후손들이 받도록 하는 것은 혈통에 의한 신분의 차별을 철폐한 현대 사회의 정서에 반하고, 사후 본인의 성명·초상을 자유로이 이용하여야 할 공공의 이익이 조상의 명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후손들의 이익을 능가하므로 사후 존속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⁹⁹⁾

라. 침해

(1) ① 성명·초상, 캐릭터 등 특정인에 관한 동일성(identity)이 ② 본인의 허락 없이 ③ 상업적으로 사용되어 ④ 일반 대중이 그 identity가 특정인을 지칭(identify)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퍼블리셔티권의 침해가 인정된다. 특정인의 허락이 있거나 identity로 볼 수 없는 요소가 사용되거나 상업적 사용이 아닌 보도나 창작 등에 사용되거나 일반인이 특정인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퍼블리셔티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 우리나라 판결은 퍼블리셔티권의 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인정하고 있다.

98) 한위수, “퍼블리셔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1996년 11월호 111 내지 113면 ; 오승중·이해완, 위 책 412면 : ① Charlie Chaplin의 콧수염, 낡은 중절모, 낡은 검은색 양복, 험령한 구두, 특이한 걸음걸이를 묘사 또는 모방한 경우, ② 삼성전자주식회사의 미국 현지 법인의 VCR 광고에서 금발머리를 한 로봇이 퀴즈 프로그램인 “Wheel of Fortune”의 게임판 앞에서 위 프로그램의 보조진행자로서 게임판을 뒤집어 주거나 상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Vanna White와 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VCR을 소개하는 동안 ‘서기 2012년, 가장 오래된 퀴즈 프로그램’이라는 자막을 보낸 사례 등에서 퍼블리셔티권의 침해를 인정하였다.

99) ① 미국의 학설은 50년, 30년, 20년, 10년, 배우자와 자녀의 생존기간, 성명·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기간 등 다양하나 다수설은 50년이고, 각 주의 성문법은 100년, 50년, 40년, 20년, 10년 등으로 규정. ② 일본에서는 학설로 무기한, 30년, 10년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③ 서울동부지법 2006.12.21. 2006가합6780 판결(이효석 상속인 대 상품권 발행업체)은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사후 50년으로 해석, ④ 정희섭, 위 논문, 151면은 민법 제262조 제2항(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소멸시효기간 20년으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20년 주장.

보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사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도라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 안 돼

(2) 유형

① 허락 없이 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한 경우(본인이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이라고 소비자가 믿게 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광고에는 영리사업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홍보를 위한 광고도 포함된다), ② 타인의 성명·초상을 상표 또는 상호로 사용하거나 제품명으로 또는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③ 허락 없이 타인의 성명·초상이나 모습이 새겨진 포스터, 달력, 티셔츠, 단추, 목걸이 등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④ 배우나 감독의 이름을 따서 영화관의 이름을 붙이거나(“Tennessee Williams Theater” 극장건) 유명 운동선수의 이름을 따서 운동구점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공공기관에서 저명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도로, 학교, 체육관 건물에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업적 이용이 아니므로 제외)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된다.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언론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도라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미국에서는 연예오락, 픽션, 논픽션을 포함한 창작품에 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사용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¹⁰⁰⁾

마. 손해배상

(1) 재산상 손해배상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그 상업적 이용 자체에 대하여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대가, 즉 사용료가 손해액의 산정 기준이 된다.¹⁰¹⁾ 전문가의 감정¹⁰²⁾이나 중전의 사용료 금액¹⁰³⁾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한편, 사용료 만에 한정한다면 무단 사용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성명·초상 등이 본인의 이미지를 해치

100)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1996년 11월호 119 내지 122면 ; 오승중·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407 내지 409면, 서울지법 1995.6.23. 94카합9230 판결(이휘소 유족들 대 출판사)은 소설에서 이휘소의 성명, 사진 등을 사용한 것이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서울지법 1996.9.6. 95가합72771 판결(○○○ 대 만화가)은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실존 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만화 또한 예술적 저작물이어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27. 2004가단235324 판결(정준하 대 캐릭터코리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4.19. 2005가합 80450 판결(이중범 외 122명 대 게임물 제작·제공 회사), 서울고법 1998.3.27. 97나29686 판결(○○○ 대 한국 베링거인겔하임 : 광고출연계약 존속기간 경과한 후에도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였다면, 재산상 손해는 광고주가 광고모델의 동의를 얻어 그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기 위하여 광고모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 중 무단 방영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102) 서울고법 1989.1.23. 88나38770 판결은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다른 모델들의 모델료, 유사한 지명도와 인기를 가진 모델의 모델료 등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정하였다.

10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7.25. 90가합76280 판결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를 방영한 사안에서 이미 제작된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는데 동의함으로써 그 방영 당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중 그 방영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하였고, 서울중앙지법 2004.12.10. 2004가합16025 판결(이영애 대 도도화장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의를 얻어 광고를 계속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 상당액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

는 광고(조약품을 위한 광고 또는 저질 포르노 잡지의 광고)에 무단 사용된 경우 사용료 상당 배상이 아니라 그 사용으로 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가치가 감소된 부분 평가액 또는 장래의 수입 감소분을 배상하여야 하고, 상품의 보증 또는 추천 취지의 허위 광고의 경우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의 광고라면 이를 바로 잡는데 필요한 광고비용도 배상하여야 한다.¹⁰⁴⁾

(2)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위 정준하 및 이증범, 이영애 등이 원고가 된 판결들은, 유명인은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통상 자기의 성명 등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는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성명이 허락 없이 사용되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명인으로서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성명·초상의 이용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 데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제3자와 광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광고로 이증으로 광고에 출연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본인의 명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러한 점

을 특별손해로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Ⅲ.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① 인격권 침해가 언론 측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 ② 인격권 침해가 위법하다는 점, ③ 침해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④ 침해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침해가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점은 언론사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방법, 범위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따라서 의사표시나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금전배상의 원칙의 예외로서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손해배상은 일시 지급이 원칙이나 법원은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104) 명예훼손에 관한 사안이나 대법원 1996.4.12. 93다40614 판결은 비방 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대응 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 광고로 인한 손해라고 판시하였다.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위법성 조각 입증 책임은 언론사에 있어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 제2항).

3. 재산상 손해배상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사업의 영업부진 또는 파산, 광고모델계약의 취소로 인한 모델료 상당의 수입상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적 손해는 인격권 침해가 없었더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과 침해 후 재산과의 차액이고, 이에는 기존 재산의 감소인 적극적 손해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가 포함된다. 인격권 침해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을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 측에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손해액에 포함시키게 된다.¹⁰⁵⁾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면(예컨대,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경우)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봄으로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하여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손해로서 언론 측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액수의 산정이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에 곤란한 경우가 많아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그러나 손해액 확정이 가능함에도 편리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명목으로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¹⁰⁶⁾ 대법원은 피고 분유제조업체가 일간 신문에 허위의 비방광고를 하여 원고 분유업체가 대응광고를 하느라고 지출한 광고비(합계 6,500만 원)가 비방광고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였다.¹⁰⁷⁾

4. 정신적 손해배상

가. 정신적 손해배상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침해, 초상권 침해의 경우 모두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민법 제751조 제1항에 의하여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있다.

나. 위자료의 기능

위자료의 본질이 감정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이라는 배상설과 비난받을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라는 제재설이 있는데, 위자료는 본질적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상실한 이익에 대한 전보·배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부수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기능, 가해자가 위자료 지급으로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음에 대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기능, 가해자가 다시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105)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 채권각칙(6), 2000, 219면.

106) 대법원 1984.11.13. 84다카722 판결.

107) 대법원 1996.4.12. 93다40641·40642 판결.

못하게 하는 예방 기능,¹⁰⁸⁾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입증곤란 등으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전보를 다하기 위하여 위자료액을 올림으로써 손해전보가 부족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보완·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¹⁰⁹⁾

다. 판례에 나타난 위자료 산정기준

(1) 보도와 관련된 사정 : 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 경위와 목적, 내용의 진실성 및 공익성의 정도, 비방성과 악의성의 정도, 명예훼손의 정도, 기사의 신속성 정도(일간·월간·주간 등),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여부, 피해의 종류와 성격, 기사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 보도의 사회적 영향, 그 영향의 즉각성·지속성·회복곤란성의 정도

(2) 피해자 측 사정 : 나이, 성별,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정도, 신분, 사회적 지위, 지명도,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에 그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

(3) 언론사 측 사정 : 잡지 또는 신문의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모·재산·재정상태,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보도 이후의 태도(기사 게재 후 손해전보를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4) 보도 이후의 사정 : 기사가 정정·취소되었는지 여부, 사과문 게재가 명예회복 처분으로 인용되는 점(1991. 4. 1. 사죄광고 위헌 결정 이전), 명예회복을 위한 공고문 게재

(5) 기타 :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점¹¹⁰⁾

5. 징벌적 손해배상론(Punitive Damage)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불법행위(Tort)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전보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 외에 피고의 불법행위에 악의(malice), 의도적 무시(wantonness), 고의성(willfulness), 억압성(oppression), 중대한 태만(gross negligence), 사기(fraud)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비난받을 행위를 벌하고 장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¹¹¹⁾ 우리나라에서도 위자료 기능에 제재적 기능과 예방적 기능이 있고, 현실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어서 가

108) 손원선,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22집(1997), 430 내지 432면은 위자료를 고액화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을 하는 점, 최근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인정액수가 고액화되고 있는 점, 판결이 위자료 산정기준으로 피고회사의 규모,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피고의 사실확인 보도 의지의 결여, 발행부수, 기사 게재 이후의 피고의 태도,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정도, 피고의 발언으로 현실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한 바 있음에도 다시 발언을 반복한 점을 언급한 것을 이유로 법원이 예방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191면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9)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 채권각칙(8), 2000, 298 내지 311면.

110) 대법원 1996.4.12. 93다40614·40621 판결, 한편, 손원선 위의 논문 443 내지 445면은 언론이 인격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예방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① 가해자의 사건기사 게재의 의도 및 목적(상업적 의도로 판매부수 증가를 통한 수익증대), ② 반복위험(과거 전력, 다수의 피해자 발생), ③ 이윤획득(보도로 인한 이익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액에 포함시키는 것)의 요소를 적극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

111) Restatement(2nd) Torts §908(1) :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are assessed in addition to compensatory damages to punish the defendant for the commission of an aggravated or outrageous act of misconduct and to deter him and other from such conduct in the future.

여러 민·형사상의 방법으로 불법 행위의
처벌 및 재발방지 가능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 없어

해자에 대한 처벌과 장래 동일 행위의 재발억제를 할 수 없음을 근거로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¹¹²⁾ 그러나 모든 불법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악행 처벌 및 장래 재발 방지 필요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악행이 심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의 반환이라는 민사적 제재를 통하여 사실상 민사 제재 및 재발 방지를 기할 수 있고, 그 제재액이 적어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증액시킴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의, ○○○이 김형욱에게 아부, 변태 성행위 연극, ○○○ 검사 이 씨 로비비망록 은폐, 국사모의 국정원 자료 정형근에 제공, 박지원이 김재기로부터 2억 원 수령), 5,000만 원 4건(임채정은 중정부 출신, 이종찬 운동원 조폭 일원, 화가 망 ○○○ 오리지널 판화로 속여 전시회, 현승중 친일), 6,000만 원 1건(○○○ 20세 연하 여동생이 딸 소문), 7,000만 원 1건(○○○ 사례비=뉴스테스크 4,000만 원 + PD수첩 3,000만 원), 7,900만 원 1건(중학교 교장 집단 괴롭힘 방치), 1억 원 2건(○○○ 검사 납득 못할 영장 기각, 백지연 이혼 배경), 1억 2,000만 원 1건{김대중 전 대통령 용공·친북인사(초상권 침해 포함)}, 4억 원 1건(한약업자, 김현철에게 정치자금 1억 원 전달)이다.

6. 판례에 나타난 손해배상액

가. 위자료 액수

(1) 명예훼손

1991. 4. 1.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기 이전에는 사죄광고와 함께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이거나 사죄광고가 없이 150만 원, 400만 원(2건), 1,000만 원 정도이었으나, 위 위헌 결정 이후에는 1,000만 원 미만 14건, 1,000만 원~1,600만 원 14건, 2,000만 원 13건, 2,500만 원 1건(육영수 여사 살해범은 청와대 경호 과장), 3,000만 원 9건(뉴스위크 주간잡지(초상권 침해 포함), 김일성 장례식 참석한 ○○○, 김해군 부면장 창고 공장 불법 임대, ○○○의 호화사교클럽 물

(2) 초상권 침해

200만 원 2건(도주차량 체포 및 인터뷰 장면을 동의 범위 넘어 사용, 연주자들 식별 불가 조건 위반 연주장면 방영), 500만 원 2건(임수경 결혼식 장면(명예훼손 포함), 상부한 시집 발행인의 방영분을 보험회사의 직원교육용으로 판매), 800만 원 1건(한혜숙 사진을 월간지 광고에 사용), 1,000만 원 1건(압구정동 오렌지족 사진), 1,500만 원 1건(앵커 출신 중견방송인 ○○○의 음주 단속 현장(음성권 침해 포함))이다.

(3) 프라이버시권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만의 경우 1,000만 원 1건(의사에 반해 이혼을 주 내용으로 한 기사), 2,000만 원 1건(미스코리아 출신 미혼 여성이 전경환과 부도덕한

112) 이재석, “언론과오와 인격권의 침해”,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5권 2호(1998) ; 도입반대 견해도 많다.

관계), 3,000만 원 1건(전지현이 소속 회사 대표와 결혼 예정)이고, 그 외 명예훼손과 함께 500만 원 2건(○○○이 여자 탤런트와 열애 중, 장인이 사위와 딸 혼인신고하여 그들의 신세 망쳤다), 1,000만 원 1건(변호사 상대 승소 과정 수기), 1억 원 1건(백지연 대 최윤정 기자), 초상권 침해와 함께 600만 원 1건(신입생 환영식 촬영), 1,000만 원 2건(유방수술 후 유증 피해자 옆모습 방영, '고액과의 여전' 관련 연습실 촬영)이다.

나. 평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로 인정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것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로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 비하여 고액이며, 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가 주류이고, 5,000만 원 이상이 11건에 이르며, 억대가 넘는 것도 4건이나 된다. 인격권 침해의 피해 정도의 심각성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침해, 초상권 침해의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구금액에 비하여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은 매우 적으나 몇 건의 경우 청구금액 수준에 맞추어 위자료 금액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위 위헌 결정 이후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초상권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위자료 액수도 적지 않다. 이는 막대한 힘을 가진 언론의 폐해를 우려하는 여론, 인격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 사죄광고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주장하는 법조계

일각의 태도, 법원 외에는 언론의 횡포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공감대¹¹³⁾, 인격권의 법정 등을 원인으로 한 피해자의 권리의식 제고와 언론사의 경제적 규모의 증가 등의 결과로 보인다. 언론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실질적인 원상회복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달래고 비난받을 언론사의 행위를 민사적으로 처벌하며 언론사에 경각심을 주어 재발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면, 가능하면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법조계와 일반 국민들의 중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앞서 사례에서 본 지나친 고액은 국민의 여론으로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사에 지나친 부담을 가져오는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다.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위자료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가급적이면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7. 언론중재위원회 사례에 나타난 손해배상액 (2005년 8월부터 2007년 7월말까지)¹¹⁴⁾

가. 위자료 액수

- (1) 명예훼손(모두 15건, 청구금액은 3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까지)
 - (가) 50만 원에서 150만 원 : ① 당구장 가스 폭발로 공덕동 재래시장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도(50

113)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실제적 구제수단”, 민사판례연구 11권(1999), 박영사, 690면

114) 합의, 취하 후 손해금지급, 직권조정결정수용, 중재결정 등 금액이 확정된 사례에 한하고, 각하, 기각, 불성립결정,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단순 취하 사례는 제외. 이 사례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장성원 조사관이 조사한 것을 기초로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법원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해 판결하는
위자료 액수가 적지 않아

만 원, 100만 원), ② 청학동 무허가 사당 난립 관련 인터뷰에 응한 것처럼 보도하고 실명, 나이, 거주지 공개(100만 원), ③ 아내가 산후우울증으로 자살한 양 단정 보도하고 인터뷰 내용을 동의 없이 방영(100만 원), ④ 아버지가 아파트에서 숨진 채 3일간 방치되었다고 보도(반론 및 100만 원, 100만 원), ⑤ 지하철에서 말다툼 동영상을 불리하게 편집 방영(기사 삭제 및 150만 원), ⑥ 호화주택에서 사치 생활자인 양 부정적 방송(150만 원)

(나) 200만 원에서 500만 원 : ① 유명 대학 출신자가 아르바이트직 전전 월세 내기도 벽차다고 보도(200만 원), ② 4년 전 여성잡지 기고 서평을 최근호에 무단 전재하며 직접 기고한 양 보도(알림 보도문 및 200만 원), ③ 30대 여성 살해 및 방화 후 숨기고자 기숙사에서 일부러 강도짓 했다고 보도 후 검찰 무혐의 처분(200만 원), ④ 수사경찰계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당사자인 양 보도(300만 원), ⑤ 교제 여성에게 두 번 임신, 유산 요구, 폭행했다고 허위 보도(정정 및 500만 원), ⑥ 빗 독촉 친동생 엽기 살해 보도 이후 무죄 판결 사건(사건별로 1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550만 원, 후속보도 등)

(다) 1,000만 원 이상 : ① 안산시 공무원들이 공사장 반출 뺄춤 처리 실사 없이 건축 허가 특혜행정 허위 보도(1,000만 원), ②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중 포스코 직원들과 식사 도중 심하게 다투었다고 허위 보도(정정 및 1,500만 원), ③ 부모로부터 숙제 안했다고 꾸지람 듣고 자살했다고 허위 보도(정정 및 1,500만 원)

(2) 초상권 침해(모두 41건, 청구금액은 1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가) 100만 원 미만 및 현물 지급 : ① 추위로 응크리고 있는 모습(30만 원 중재), ② 싱글 재테크 모임 소개 시 실명 및 사진 게재(30만 원), ③ 초고속인터넷 해지 업무 무관 근무자 업무 모습(49만 원), ④ 이직 기사에 서점에서 책 고르는 모습(50만 원), ⑤ 무단 사진 촬영 및 게재(50만 원), ⑥ 상의 노출 달리는 모습(50만 원, 1년 무료 구독), ⑦ 단역 배우 프로필 사진을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60만 원), ⑧ 쇼핑 요령 보도 시 홈페이지 사진 무단 게재(60만 원, PR 기사), ⑨ 댄스대회 과다노출 춤 장면(70만 원), ⑩ 살인 피해자 가족 우는 모습(80만 원), ⑪ 미니스커트 부정적 기사에 사진 게재(99만 원, 해당신문 평생 무료 구독, 자매 월간지 1년 무료 구독), ⑫ 대학 축제 참가자 편치왕 주먹 휘두르는 모습(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⑬ 옷차림 부정적 기사에 뒷모습(현물 지급, 100만 원 청구)

(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 ① 음료수 마시며 걷는 모습(100만 원), ② 산 오르는 모습(100만 원 중재), ③ 인터뷰 회피자 촬영 및 방영(100만 원), ④ 뇌졸중 기사에 얼굴 사진(100만 원), ⑤ 서해대교 사고 피해자 모습 및 음성 방영(각 100만 원), ⑥ 프로포즈 받고 우는 모습(100만 원), ⑦ 누드 크로키 모델 사진 게재(100만 원), ⑧ 미니스커트 차림 걷는 모습(약 100만 원 내외 현물 지급), ⑨ 옷가게에서 커피 쏟는 장면(115만 원), ⑩ 외국산 흡시어터 가격 거품 보도 시 근무 매장 사진 게재(정정 및 120만 원, 중재), ⑪ 동료와 벚꽃 길 걷는 모습(150만 원), ⑫ 생선 절도 보도 시 초상 및 음성

방영(150만 원), ⑬ 가출 청소년과 모친 만나는 장면(150만 원, 중재)

(다) 200만 원에서 400만 원 : ① 월드컵 경기장 응원 모습(200만 원), ② 주정차 단속요원 폭행자 초상과 차량 번호판 사진 게재(200만 원), ③ 성폭행 피해자 CCTV 모습 방영(200만 원), ④ 납치 피해자 CCTV 모습 방영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보도(200만 원, 200만 원), ⑤ 동물 사육 부정에 애완동물 가게 운영자 사진(200만 원), ⑥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척결대회 무산 보도 시 시설 근무자 사진 게재(200만 원), ⑦ 이혼 위기 넘긴 노부부 사연 소개 시 사진 방영 및 불륜 당사자로 묘사(250만 원, 중재), ⑧ 성전환 수술 전후 사진 소개 시 무관한 자의 사진을 전환 전의 사진으로 게재(280만 원, 취하), ⑨ 구의원 당선자 실종사건 보도에 무관한 자의 얼굴과 유세차량 방영(300만 원), ⑩ 동료와 벚꽃 길 걷는 모습(400만 원)

(라) 500만 원에서 700만 원 : ① 현상범 포스터에 사진 신고 강간 미수범으로 방영(500만 원), ② '된장녀' 기사에 초상, 성명 공개(500만 원 중재, 700만 원 중재), ③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자 모습 방영(500만 원), ④ 나뭇가지로 두개골 골절상 피해자가 승소한 사연 소개 시 사진과 실명을 공개(700만 원), ⑤ 주정차 단속요원 폭행자 초상과 차량 번호판 사진 게재(200만 원, 700만 원)

(3) 프라이버시권 침해(모두 8건, 청구금액은 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① 폭행 피해자 신원을 공개(70만 원, 중재), ② 식습관에 따른 비만도 조사 모델에 응한 자를 비만체형독자대표로 소개하며 사진, 신체 사이즈, 비만 정도를 공개(100만 원), ③ 현재 거주지 노출(200만

원), ④ 전국에서 가장 싼 집으로 보도(150만 원), ⑤ 성폭행 피해자 나이, 성씨 보도(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⑥ 텔런트와의 사생활 보도 시 인적 사항 공개(300만 원), ⑦ 방송 출연자의 과거 사생활 노출(300만 원, 중재), ⑧ 자궁내막증 수술 장면 및 음성 변조 없이 방영(750만 원, 중재)

(4) 음성권 침해(모두 7건, 청구금액은 1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①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과 관련 전자 팔찌 반대한 2005년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100만 원), ② 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 탄핵에 찬성한다고 보도하고 음성 방송(100만 원), ③ 프랑스마을 영아 사체 유기 사건 보도 시 용의자의 회사 동료의 음성을 변조 없이 방송(100만 원, 100만 원 중재), ④ 주유소 유사 휘발유 판매 관련 인터뷰 내용 방송(100만 원), ⑤ 킷서비스업체 임금 체불 보도 시 회사 직원의 음성 방송(100만 원), ⑥ 어린이 유괴사건 취재 시 범인의 아파트상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음성과 사무실 내부를 촬영 및 방송(100만 원), ⑦ 신분증 위조 사건 보도 시 음성 변조 없이 방영(200만 원)

(5) 신용훼손(모두 3건, 청구금액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 킷서비스업체 임금 체불 보도 시 회사 상호를 노출(250만 원)

(나) 이동통신 대리점 횡포 보도 시 대리점 전경을 보도(정정 및 300만 원)

(다) 남녀 치정관계 보도 시 무관한 피아노학원 전경 방영(1,000만 원)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낮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위로하거나 잘못된 보도의
재발방지 효과가 크지 않아

나. 평가

명예훼손의 경우 5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가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고, 1,000만 원을 넘는 것은 3건에 불과하다. 음성권 침해의 경우 대부분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은 1건에 불과하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가 25건으로 대부분이고,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가 10건,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가 6건으로 모두 1,000만 원을 넘지 않고 있다.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7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다양하나 모두 1,000만 원을 넘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인격권 침해의 피해 심각성의 정도를 보는 시각도 법원과 같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침해, 초상권 침해의 순서이고 음성권 침해가 가장 낮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가 법원에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절약하고 극단적인 해결을 피하는 인간적 화해를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정정보도나 기사 삭제, 향후 우호적 기사 게재, 간혹 조정시 사과 유도 등의 조건을 감안하고 있다는 점, 중재부의 결론이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상당수의 위원들이 언론사 출신인 점, 언론보도로 인한 어느 정도의 인격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안이한 과거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아직도 언론사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비록 법원의 것에 비교하지 않더라도 너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낮은 위자료로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위로하거나 비난받을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수 없다고 본다.

IV. 마치며

1. 인격권은 다른 권리와 달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과 모호함 그리고 그 내용의 광범위성,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의 충돌성 때문에 개념 규정과 보호의 방법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인격권의 개념과 보호방법은 원래 사회관습에서 출발했으나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호범위를 해석론으로 보완하여야 하고 사회의 발달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예컨대 이미 생성·발전되어 온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향후 논의되어야 할 환경침해나 성희롱 등 정조와 관련된 인격권의 침해 등) 새로운 인격권의 개발과 그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리의 개발 및 연구가 숙제로 남아 있다.

2. 학설과 판례는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생명권, 초상권 등 다른 인격권과는 구별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미국에서 생성, 발전되어 온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설정하기 위하여 양도성, 상속성, 사후 존속기간을 인정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

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양도성과 상속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는 법 논리의 설득력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논란을 종식하고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한류 열풍 등과 관련하여) 국내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셔티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판결¹¹⁵⁾과 일부 학설¹¹⁶⁾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퍼블리셔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최근 민법 개정안에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입법을 서두름으로써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의 보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최근 법원은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또는 억대의 고액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언론계와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되는 명예,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셔티권 등 인격권 침해의 내용, 위자료의 본질과 기능, 외국의 법리와 구체적인 사례, 국내 판례의 분석과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사안별 위자료 금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판례와 법률로 인격권이 보호되고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며 정보사회의 발달로 권리 실현의 수단이 널리 공유됨에 따라 언론의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침묵하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신청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앞으로 더 가속될 것이고, 조정이나 중재에 임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욕구도 더 강해져 중재위원들이 과거와 같이 언론사에 관대하다고 평가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할 것이다. 중재위원들로서는 법원의 위자료 액수의 고액화 현상을 도외시하지 말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구제율을 높이기 위하여 좀 더 전향적으로 위자료 액수 인정에 지금보다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5. 언론사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아래의 사항을 인식하여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개혁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① 과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강조되어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문제를 삼았으나 이제는 경제 발달로 인한 복지사회로 진입하면서 법률과 판례 및 국민의 여론이 언론의 자유 보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인격권의 보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② 이에 따라 언론 보도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변호사 수의 증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가 쉬워져서 그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인으로 자주 출석하게 되면 그만큼 법원에 피고로 자주 출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될 시간과 비용, 노력을 아끼고, 법원에서의 조정이나 판결 결과가 더 나쁠 가능성이 큼을 인식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안에 긍정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115) 서울고법 2002.4.16. 2000나4206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10.1. 2002가단24093 판결

116) 한위수, 위 논문 118, 127면 ; 김도희, 위 논문, 212면

법원의 위자료 고액화 추세나 언론중재위원회
위자료 조정 액수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
언론사는 사전에 보도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보완해야

④ 법원의 위자료 고액화 추세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자료 조정액수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사후에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하는 것 보다는 기자의 취재나 인터뷰, 촬영, 자유기고가로부터 기사 수집, 편집 과정에서 보도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저렴하다. 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에서 발표한 많은 글에는 인격권의 내용 및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언론사가 피신청인 또는 피고가 되었을 때 적절히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박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5
 김민중, 민법총칙, 두성사, 1997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3
 송영식·이상정·황중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1
 오승중·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 채권각칙(6),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 채권각칙(8), 2000

(논문)

강남진, “인격권의 보호에 대한 하나의 제안”, 한국민사법

학회, 민사법학 제13·14호, 1996
 김덕철, “언론에 의한 인격권침해와 민사상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김도희,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 한양법학 제18집(2005. 12.)
 김민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2000년 여름호)
 김상용, “인격권의 침해와 민사책임(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판례월보 제278호(1993. 11.)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제39권 제1호(1998년 5월호)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27호(2005)
 김원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소고(인격권, 부정경쟁방지법리, 저작권 요소의 구별과 권리의 범위)”, 법조협회, 법조 2003년 1월호
 박성호, “인격권의 변용(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3집 2호(2006. 10.), 한양대학교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성동규, “스포츠신문의 연예인 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2002년 봄호)
 손원선,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22집(1997)
 안상운,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양창수,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제175호(1991. 3.)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민사판례연구 11권(1999), 박영사

이재석, “언론과오와 인격권의 침해”,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5권 2호(1998)

정희섭,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Publicity)권리”, 재
산법연구 20권 1호(2003. 8.), 법문사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법원도서관
한위수,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제기와 명
예훼손”, 한국사법행정학회,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1권(2002)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초상·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 대한변호사협
회, 인권과 정의 1996년 10·11월호

함석천,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법조
협회, 월간법조 2006년 12월호

허 만, “언론보도에 대한 실제적 구제수단(손해배상·원
상회복·금지청구)”, 민사판례연구 11권(1999),
박영사

홍춘의, “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제2주제>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1. 문제 제기

- 옴부즈맨 6개월이면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진다.
- 옴부즈맨의 독립성은 이야기의 처음이자 끝이다.
- 옴부즈맨은 누구한테도 칭찬을 못 받는, 사주나 편집인한테도 칭찬을 못 받는 자리임에 틀림이 없고 그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한테 욕먹는 자리다.
- 언론의 특성은 남을 해집고 파헤치는 것인데, 언론종사자들은 본인이 해집 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혼나지 않았던 내부가 옴부즈맨을 통해 똑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신문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 지역주민의 가치와 지역 언론의 가치 괴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옴부즈맨 제도와 옴부즈맨 칼럼이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옴부즈맨 제도의 정착이 어렵겠지만, 100%가 아니더라도 1%라도 존재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 지방언론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옴부즈맨 성격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독자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고충처리인이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고충처리인이 옴부즈맨이다.
- 독자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잘 하려면 각 언론사별로 뽑지 않고 외부에 위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하면 좋겠다.
- 독자권익위원회 위원들에게 신문에 대해 가감 없이 신랄하게 비판을 해달라고 해도 칭찬일색으로 돌아선다. 이것은 위원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모를 거쳐 구성을 하게 된다면 신랄한 비판이 가해질 것이다.
-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인 앞으로 들어가는 사안이 없다. 외부에서 독자의 불만이나 항의가 나오면 기자가 징계나 불이익을 우려해 혼자서 자체 처리를 해 버리고 고충처리인도 특정인을 지목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다.
- 대부분의 언론이 옴부즈맨을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고 옴부즈맨 필자들도 언론의 그런 의지를 스스로 간파해서 무리한 수준에서 비판을 하지 않고 적당히 조율해서 쓰고 있다.

이 승 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박사
- 충남대학교 법학 석사
-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 「언론과 법」, 「언론과학연구」 편집위원
- (현)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위 내용은 지난 3월 개최된 옴부즈맨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발언 일부이다. 토론자로 나선 기자·데스크·고충처리인들은 옴부즈맨 제도가 현재 한국 언론의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언론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이 제도의 정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¹⁾ 옴부즈맨에 대한 언론사 내부의 인식이 낮고 사주·경영진·언론 종사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언론 관계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언론 수용자들의 권익을 보호·구제하거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상당히 촘촘하다. 신문법에 의거 신문사는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²⁾ 그런데 이 기구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선정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

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이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신문법 시행 이전부터 몇몇 신문사는 시대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신문사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표아래 독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또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방송프로그램을 사전에 심의하는 자체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는데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명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돼 있다. 더불어 시청자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방송위원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³⁾

한편, 일반일간신문 사업자나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언론중재법 제6조 규정에 의

1) 한국언론재단 주최, <신문 옴부즈맨 현황과 발전방안> 세미나, 2007.3.29. 안면도 롯데캐슬.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5.1.27 법률 7369호]

제8조 (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독자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방송법'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301호]

제86조 (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0.27]

제87조 (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방송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언론 수용자들의 권익을 보호·구제하거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상당히 촘촘해

거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동법에서 규정하는 고충처리인의 역할은 언론의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를 비롯한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

도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 구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도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구제와 관련한 자문활동이다.⁴⁾

<표 1> 언론으로 인한 고충·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

관 련 법	제 도	규 정	성 격 / 대 상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독자권익위원회	제9조	독자권익보호 위한 자문기구. 독자권익보호 위한 회의, 지면 반영
방 송 법	• 자체심의기구	제86조	방송 전 심의
	• 시청자위원회	제87조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제89조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주당60분 이상
	•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제35조	방송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고충처리인	제6조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뉴스통신사업자
	• 조정	제18 - 제23조	반론보도·정정보도· 추후보도·손해배상
	• 중재	제24 - 제25조	“
	• 소송	제26 - 제31조	“
	• 시정권고	제32조	언론중재위원회, 제3자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5.1.27 법률 7370호]

제6조 (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중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가 1961년 9월에 설립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독자불만처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형법의 명예훼손 규정, 민법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를 위한 특칙 등의 조항,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벌칙조항 등이 있다.⁵⁾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과 제도적 장치에 의해 한국의 언론피해구제는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현재 한국 언론의 현실은 고충처리인이 음부즈맨, 시민편집인, 독자권익보호위원회 등의 용어와 개념적으로 혼용되고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독자권익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 메커니즘을 통해 고충처리인의 역할을 감당케 하거나 편집·편성 부서의 데스크·책임자들로 하여금 음부즈맨 또는 고충처리인의 역할을 겸무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사들은 외부 필진으로 하여금 음부즈맨

칼럼을 집필케 해서 게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인에 대한 사내·외의 인지도는 높지 않아 보이고 활용도 또한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고충처리인 제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고충처리인의 개념과 국제적 동향

현행 언론중재법 입법 과정에서 음부즈맨 혹은 고충처리인 제도와 관련해 두 가지 입장이 개진되었다. 하나는 언론사 내부에 자율적인 음부즈맨을 두는 방식이었다. 언론분쟁은 사전 예방이 가장 효율적이며 사전 검색을 통한 예방 기능은 그 성

5)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고충처리인 제도가 원활히
기능할 경우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

질상 언론사의 자율적 기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언론사에 예속되지 않은 반 독립적 기관으로서 사내옴부즈맨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내 옴부즈맨에 대한 언론사의 부당한 간섭과 변칙적인 운용을 막기 위하여 그 자격과 신분을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면서 일정기간 동안 판사·검사·변호사 그리고 조교수 이상 법과 대학 교수직에 있었거나 언론 현업에 종사한 자 중에서 선임하고 직무상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당해 언론사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할 것이 제안되었다 (양경승, 2004).

다른 하나의 입장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옴부즈맨 제도는 민원의 처리를 통한 단순한 분쟁해결수단만이 아니라 위법한 국가작용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시정하게 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언론중재위원회도 사후적인 영역은 물론 사전적인 활동 영역까지를 아우르는 옴부즈맨의 지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기관들이 사전적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여론형성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도 이러한 사후적인 창구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후적인 작업은 아무리 치밀하게 구성돼 있더라도 사전적으로 그 피해를 예방하는 작업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활동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대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유리한데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병

행하는 옴부즈맨 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명칭도 의회 직속의, 독립된 법적 근거를 가진, 언론위원회 혹은 언론평의회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류지태, 2004b).

아무튼 과거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 2005년 제정·시행에 들어간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고충처리인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범위, 자율적 활동보장, 자격·보수·임기에 관한 사항의 공표, 활동사항에 대한 공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의 핵심적인 사항은 단일법의 제정, '중재'를 도입한 중재위원회의 기능변화, 손해배상도 포함한 조정·중재 범위의 확대,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조정·중재 대상의 확대, 필요적 전치주의의 폐지라고 할 것이다. 덧붙여 시정권고사항을 비롯한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등도 중요한 변동사항이라고 평가되었다(양삼승, 2005; 한위수, 2006).

그런데 2005년 소위 '언론관계법' 위헌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언론중재법 제6조의 고충처리인 규정이 '그 성질상 국가적·제도적 영역의 밖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남아 있어야 할 신문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권성과 김효종은 동조 제1항, 제4항, 제5항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통해 이 규정은 신문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고충처리인 제도의 설치·운영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도

록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나서서 이 고충처리인을 두게 하고 그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문사업자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이나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둘 것인지 여부는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은 고충처리인을 둬으로써 제약되는 신문기업의 자유와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면서 고충처리인 제도와 이에 관한 사항의 공표로 인하여 신문사업자가 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은 미약한 반면, 고충처리인 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할 경우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⁶⁾

헌법재판소가 언론중재법의 고충처리인 제도로 인해 언론사가 받는 기본권 제한이 미약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언론사에 강제되는 것은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는 것뿐이고 나머지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공표 역시 그 내용상 강제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고충처리인 제도가 언론피해의 예방, 피해발생시의 신속한 구제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정정보도청구 등의 다른 제도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서 고충처리인 제도로 인한 이익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언론기업에도 돌아간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제도의 경험 축적은 취재·편집 등의 언론활동에 반영되어 언론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 보았다.⁷⁾

옴부즈맨이라고도 불리는 고충처리인 제도는 반관반민의 신분을 가진 옴부즈맨이 행정관청과 시민 사이에서 시민의 고충과 민원 사항을 수집하여 행정관청에 전달하고 그 민원을 직접 처리해 주는 것으로써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다. 스웨덴어로 대리인, 대표자를 뜻하는 옴부즈맨은 관료의 권력남용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호민관(citizen's defender)제도이다. 옴부즈맨은 의회에서 임명되지만 의회 및 행정부로부터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신뢰인으로 개개국민의 권리 보호를 담당해 주는 자이다. 동시에 의회의 대행 정부 견제권에 근거하여 거의 전행정관청과 그 소속공무원을 감시하는 임무를 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접수된 민원에 근거하여 행정행위의 합법성 혹은 합리성 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따라서 옴부즈맨에게는 법률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그가 지휘하고 있는 참모진에 의해서 해결된다. 스웨덴에서는 1809년 헌법 제96조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핀란드는 1919년, 덴마크는 1953년, 노르웨이 1952년에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했는데 196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옴부즈맨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제도나 기관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이혜영, 2006; 양경승, 2005; 안광식, 1999; 김재홍, 1999; 장원석, 1994; 박영조, 1993; 최춘석, 1984).

1980년 전 세계의 뉴스 옴부즈맨들이 창립한 뉴스 옴부즈맨 협회(Organization of News Ombudsman, ONO)의 정의에 따르면 언론 옴부즈맨은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균형성, 품위 등에 대한 독자·청취

6) 헌법재판소 2006.6.29.선고 2005헌마165등 결정.

7) 헌법재판소 2006.6.29.선고 2005헌마165등 결정.

언론 옴부즈맨은 스웨덴형 옴부즈맨과 미국형 옴부즈맨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

자·시청자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뉴스 보도의 잘못을 수정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ONO, 2007).

이러한 언론 옴부즈맨은 스웨덴형 옴부즈맨과 미국형 옴부즈맨으로 분류되곤 하는데 제3의 모델로 일본식 옴부즈맨을 제시할 수 있다. 스웨덴은 1916년 언론 옴부즈맨의 효시인 ‘언론공정실현위원회’(Press Fair Practices Commission)를 설치하였는데 언론사와 시민사이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구를 ‘언론평의회’(Press Council)로 발전시키고 1969년 이 기구 내에 언론옴부즈맨(Press Ombudsman)을 도입하였다. 스웨덴의 옴부즈맨은 독자가 언론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일과 민원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권익침해 사안을 심의하여 시정권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스웨덴의 옴부즈맨은 미국과 달리 개별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평의회에 소속돼 있다(양경승, 2005; 김경호, 2004; 유일상, 2004; 박영조, 1993; 안광식, 1999).

스웨덴형 옴부즈맨이 외부 조정자에 가깝다면 미국형 옴부즈맨은 내부 비평가와 유사하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옴부즈맨이 각 언론사에 의해 독자

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옴부즈맨은 독자변론인(readers advocate), 독자대리인(readers representative), 독자편집인(readers editor), 시민편집인(public editor) 등으로 불려진다. 미국에서는 1967년 켄터키주 ‘루이빌 쿠리어 저널’(Louisville Courier Journal)과 ‘루이빌 쿠리어 타임즈’(Louisville Courier Times)가 도입하면서 시작되었고 워싱턴포스트, 시카코트리뷴,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등 유력 언론사들이 운영하고 있다.⁸⁾ 폴리처상을 수상한 워싱턴포스트지 자넷쿠크(Jannet Cooke) 기자의 ‘지미의 세계’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옴부즈맨을 통한 내부 비평과 감시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1970년 옴부즈맨을 채택한 워싱턴포스트는 벤 바그디키안(Ben Bagdikian), 리처드 하우드(Richard Harwood), 제네바 오버홀저(Geneva Overholser), 케틀러(Michael Getler)와 같은 인물을 배출했다(김균, 2007; 양경승, 2005; 김경호, 2004; 유일상, 2004; 박영조, 1993; 안광식, 1999). 현재 워싱턴포스트의 옴부즈맨은 2005년 10월 취임한 호웰(Deborah Howell) 여사가 맡고 있는데 매주 옴부즈맨 칼럼을 집필하고 있다.⁹⁾

한편, 다른 유력한 신문들과 달리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뉴욕타임즈는

8) 미국의 언론사들이 옴부즈맨을 고용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된다. 첫째는 돈 때문이다. 1999년을 기준으로 옴부즈맨의 평균 연봉은 7만 5,000달러에서 10만 달러였다. 둘째는 옴부즈맨 고용이 언론사 기자들을 미치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다수의 기자와 편집국 간부들은 엄격한 저널리즘 잣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지만 스스로 옴부즈맨 칼럼의 소재가 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심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옴부즈맨에 대해 냉소적인 분위기는 물론 더러는 격렬하게 분노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한국언론재단, 2005b).

9)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linkset/2005/03/25/LI2005032500838.html>(워싱턴포스트 옴부즈맨 현황. 2007. 8. 16. 현재).

창사 152년 만에 처음으로 2003년 12월 최초의 옴부즈맨으로 다니엘 오크렌트(Daniel Okrent)를 임명했다. 제이슨 블래어(Jayson Blair) 기자의 기사 날조 및 표절사건으로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후였다. 블래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과 사과를 담은 7천 단어의 장문이 뉴욕타임즈 1면 등 4개면에 실렸고 제럴드 보이드 편집인, 하월 레인스 편집국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뉴욕타임즈는 앨런 시걸 부국장을 위원장으로 3개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는데 2개월 뒤에 나온 시걸보고서는 사건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인력운용방안, 편집국 조직 및 업무관리 개선방안, 사내커뮤니케이션 강화와 윤리의식 고취방안 그리고 신문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퍼블릭 에디터, 즉 옴부즈맨 제도의 신설을 권유했다(한국언론재단, 2006a, 2005a). 그에 따라 제1대 옴부즈맨으로 Daniel Okrent가 2003년 12월 취임해서 2005년 5월까지, 제2대 옴부즈맨 Byron Calame는 2005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역임했다. 세 번째 옴부즈맨은 올해 5월 14일 취임한 Clark Hoyt로 정해진 임기는 2년이며 한 달에 최소 2번 이상 일요일자 신문에 옴부즈맨 칼럼을 집필한다. 뉴욕타임즈 옴부즈맨으로서 Clark Hoyt의 역할은 독자와 일반 시민들이 뉴욕타임즈 기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항이나 문제 제기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것과 뉴욕타임즈의 취재보도 관행이나 현안이 되고 있는 저널리즘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칼럼을 게재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즈가 옴부즈맨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측과 내·외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올해 64세

인 Clark Hoyt에게 향후 2년간의 옴부즈맨 역할 수행을 의뢰함으로써 이 제도의 정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¹⁰⁾

미국의 옴부즈맨 방식과 달리 일본은 일본식 제3자 기관에 의한 옴부즈맨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복수의 사외 지식인이나 독자대표에게 옴부즈맨의 역할을 의뢰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일본 옴부즈맨의 효시는 1922년 아사히신문이 설치한 '기사심사부'인데 본격적인 옴부즈맨 제도로 평가받는 기구는 1989년 초 소위 '산호초 허위보도 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아사히신문의 '지면심사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기사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불평·불만을 접수하여 편집진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순수한 언론 옴부즈맨 제도와는 거리가 있는, 사외이사의 자율적 기사심의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고충처리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2001년 1월 '보도와 인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기사나 사진 등에 의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해결에 주안을 두고 있고 보도·인권을 둘러싼 현상과 과제에 관련해서도 폭넓게 논의한다. 5인의 사외 인사로 구성된 마이니찌의 '열린신문위원회'는 독자들로부터 전달된 고충·의견·신문사의 대응 등을 사무국으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받는다. 위원회는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의 고충이나 의견에 대한 신문사의 대응을 체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당사자의 고충 표명이 없는 경우라도 위원들이 지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는 의견을 제시하며 차후 신문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2001년 1월 도쿄신문은 '신문보도의 바람직한 상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10) <http://topics.nytimes.com/top/opinion/thepubliceditor/index.html> (뉴욕타임즈 옴부즈맨 현황, 2007. 8. 16. 현재)

고충처리인을 권장하는 이유로는
뉴스보도의 질 개선, 독자·시청자들의
신뢰도 제고 등을 들 수 있어

2001년 6월 발족된 교도통신사의 '보도와 독자위원회'는 3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가맹사에 배신(송고)하는 기사에 관한 독자들의 의견·고충·비판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취재나 보도를 둘러싼 갈등, 분쟁에 대해 독자에게 설명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알려야 하는 정보를 독자에게 알기 쉽게 보도하고 있는가 등을 3명의 위원에게 제시하여 의견을 구하게 되며, 격월 1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기사화하여 가맹사에게 배포한다(한국언론재단, 2001; 권오근, 2003). 2007년 7월 제4기 보도와 독자위원회 위원 3명이 임명되었는데 대학교수, NHK 정치부 기자(이상 남성), 변호사(여성)으로 구성되었다.¹¹⁾

한국의 옴부즈맨 제도는 1993년 3월 조선일보가 사장실 직속의 '옴부즈맨 전화'를 설치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며 동아일보는 2002년 4월 '독자인권위원회'를, 조선일보는 2002년 4월 '독자권익보호위원회'를 각각 발족했다. 중앙일보는 1996년부터 옴부즈맨을 임명해 매주 옴부즈맨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방송의 경우 1993년 10월 KBS '시청자 의견을 듣습니다', MBC 'TV속의 TV', SBS 'TV를 말한다'라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각각 편성되었다(권오근, 2003; 김재홍, 1999). 김균(2007)

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 3월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유사 옴부즈맨 칼럼은 옴부즈맨 칼럼, 미디어 비평 칼럼, 미디어 또는 언론현상을 비평하는 일반 칼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기적인 옴부즈맨 칼럼과 정기적인 미디어 비평 칼럼을 모두 운영하는 신문사는 한겨레 1곳 뿐이고 정기적인 옴부즈맨 칼럼을 운영하는 신문사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이었다. 정기적인 미디어 비평 칼럼만 운영하는 신문은 한국일보 1곳이며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정기적인 옴부즈맨 칼럼과 정기적인 미디어 비평 칼럼을 모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옴부즈맨 혹은 고충처리인을 권장하는 이유는 첫째, 뉴스보도가 정확한지, 공정한지, 균형적인지를 모니터링해서 뉴스보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신문·방송사가 그들의 독자·시청자들에게 보다 더 접근하고 그리하여 언론으로서 책임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 언론매체에 대한 독자·시청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셋째, 언론인들이 공중의 관심사에 대해서 더 많은 경각심을 갖게 만들며, 넷째,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의 옴부즈맨이 독자·시청자들의 불평과 요구 사항을 짚어줌으로써 발행인과 편집·편성국 간 부들의 시간을 절약시켜 준다는 점, 다섯째, 소송으로 연결돼 고액의 소송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

11) <http://topics.kyodo.co.jp/kyodonews/dokusya/member4.html> (교도통신사 '보도와 독자위원회' 현황. 2007.8.20.현재) 新委員に佐和氏ら3氏 共同通信 「報道と讀者」共同通信社は7月2日、第3者機關「報道と讀者」委員會の第四期の委員を立命館大教授の佐和隆光氏(64)とジャーナリストの五十嵐公利氏(63)、弁護士的林陽子氏(51)に委嘱した。「報道と讀者」委員會は2001年に設立 外部識者三人で構成し任期は2年 報道の在り方や讀者からの批判 意見への對應の適否を論議し 共同通信の報道が國民の知る權利や讀者のニーズに十分應えているかどうかを檢證する 新委員の初會合は10月13日に開かれる。

는 사안들을 미리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옴부즈맨은 역할 수행을 위해 뉴스·칼럼·사진·그래픽 자료들의 정확성, 공정성, 균형성 등을 모니터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방법, 언론보도로 인한 의견과 불평을 조사해서 답변하는 방법, 정정에 대한 감독이나 독자들의 불평을 적어서 내부 뉴스레터로 돌리는 방법, 대부분의 옴부즈맨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공익과 관련한 이슈나 구체적인 독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정기적인 칼럼을 집필하는 것이 있다.¹²⁾

현재 세계 옴부즈맨 협회에는 14개 국가 64명의 정회원과 8개 국가 23명의 준회원이 가입돼 있다. 정회원은 미국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5명, 네덜란드와 캐나다가 각각 3명, 오스트레일리아·콜롬비아·영국·스웨덴이 각 2명이다. 덴마크·프랑스·인도·포르투갈·남아프리카·터키는 각 1명의 정회원을 두고 있다.¹³⁾

3. 한국의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

김균(2007)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국 신문의 옴부즈맨 칼럼은 주제에 대한 피상적인 보도 내용이 많았고, 미디어 비평 칼럼이나 일반 칼럼은 옴부즈맨 칼럼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설령 형식상의 필요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내용적으로는 자사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옴부즈맨으로서 고충처리인은 현재 어떤 사람들이 임명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 그들의 신분은 보장되고 있는가, 고충처리인에 대한 사내·외의 인식은 어떠한가? 필자는 자료를 획득하

기 위해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고충처리인 현황과 운영규정 등을 확보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각 언론사의 고충처리인과 전화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분석 대상이 된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가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고충처리인을 두고 있었다. 형태는 “사의 인사형”(한겨레,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내일신문, 무등일보, 전남일보, 충청타임즈), “사내 인사형”(중앙일보, KBS, 호남매일, 경기신문), “사내·외 병행형”(경북매일신문, 새전북신문, 전북도민일보), “사내 겸직형”의 형식이 유지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사가 ‘사내 겸직형’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칭 역시 대부분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한 ‘고충처리인’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민편집인’(한겨레), ‘독자권익위원’(경남도민일보)으로도 불리고 있었다.

둘째, 독립적인 고충처리인을 운영하기 보다는 언론사의 내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편집국장·편집부국장이 직접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도 있고 논설위원·주간이 겸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심의·독자관련 부서장이 고충처리인을 겸직하는 경우, 사회부장이 겸직하는 경우, 상무이사가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하면서 겸직시키지 아니하고 업무에 전념케 하는 언론사는 중앙일보·KBS였다.

셋째, 사외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언론사는 소수에 불과한데 한겨레·경기일보·경남도민일보·경남신문·경북매일신문·내일신문·무등일보·새전북신문·전남일보·전북도민일보·충청타

12) <http://www.newsombudsmen.org/what.htm> (2007. 08. 20).

13) <http://www.newsombudsmen.org/members.htm> (2007. 08. 20).

국내 언론의 고충처리인 운용 형태는
'사외 인사형', '사내 인사형', '사내·외 병행형',
'사내 겸직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

임즈·호남매일 등이었다. 사외인사들의 직업은 대부분 '변호사'였으며 호남매일이 초빙객원교수를, 경남신문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를 사외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하였다. 고충처리인으로 사내 인사와 사외인사를 동시에 임명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북매일신문·새전북신문·전북도민일보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 언론사의 사내 고충처리인은 편집국장·편집부국장·사회부장 등을 겸직하고 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현직 기자를 파견, 운영하고 있으며 조선일보도 9명의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주요 사안을 처리하면서 독자서비스센터장이 고충처리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데 현직

기자를 이 부서에 파견해 업무를 보조케 하고 있다.

넷째, 대부분의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을 사내·외 인사 중에서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내 인사의 자격은 경력 10~15년 이상의 부장·국장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외 인사 자격의 경우 언론관계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언론사가 많았다. 반면, 언론사 내부의 인사 중에서 고충처리인을 임명한다고 규정한 언론사로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KBS, 연합뉴스 등이며 문화일보의 규정 역시 사내 인사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경인일보, 영남일보, 중부매일, 충북

<표 2> 주요 신문·방송사 고충처리인 현황

언론사	성명	직위 및 겸직여부	비고
경향신문	이종근	고충처리인 겸 여론독자부장 (부임예정)	전임 전담식 고충처리인(편집국 부국장) 이임인사교체 중 (2007. 8. 15.현재)
국민일보	김경호	고충처리인 겸 비서실 조직역량강화팀장	언문학 박사
동아일보	송영언	고충처리인 겸 독자서비스센터장	독자인권위원회에서 처리 독자인권위원회위원(외부 4명, 내부 1명) 독자서비스센터장 참여
문화일보	김종호	고충처리인 겸 논설위원	'고충처리인 운용규정'에 없는 사항은 '언론중재법' 준용함
서울신문	신연숙	고충처리인 겸 미디어지원센터 심의위원	독자권익위원회운영(외부9명, 내부1명) 미디어지원센터장이 독자권익위원회 간사직 맡음
세계일보	정동길	고충처리인 겸 독자인권위원	체육부장, 논설위원 등 역임

언론사	성명	직위 및 겸직여부	비고
조선일보	김영철	고충처리인 겸 독자서비스센터장 겸직	김정형 기자가 고충처리인 업무보조 9명의 외부위원 독자서비스센터장이 고충처리인 업무겸직 김정형 기자가 고충처리인 업무보조
중앙일보	서명수	고충처리인	
한겨레	김형태	시민편집인	안창현 기자가 시민편집실 소속으로 업무보조
한국일보	변우찬	고충처리인(대리)겸 행정지원팀장	전임 권오현 고충처리인(생활부장) 이임 인사교체 중(2007. 8. 15.현재)
KBS	구능희	고충처리인	시청자서비스팀에 소속됨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리보호 분과와 연계
MBC	유창영	고충처리인 겸 홍보심의국장	시청자주권위원회에서 업무겸직처리 시청자주권위원(외부 3인, 내부 1인의 4인) 홍보심의국장 당연직, 고충처리인 겸직
SBS	박영호	고충처리인 겸 심의부장	심의실 서희정 사원 업무보조
연합뉴스	허형석	고충처리인 겸 기사심의실장	국제뉴스 부장 역임, 부국장 대우

〈표 3〉 지역 신문·방송사 고충처리인 현황

언론사	성명	직위 및 겸직여부	비고(임명자격조건)
강원도민일보	김찬영	고충처리인 겸 이사·출판국장	사내·외 인사
강원일보	이인영	고충처리인 겸 상무이사	2007. 4. 17. 선임/사내·외 인사
경기신문	왕성해	고충처리인	사내·외 인사 ※1대 고충처리인=김찬형 편집부국장
경기일보	조영진	고충처리인	변호사/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
경남도민일보	김종숙	독자권익위원(고충처리인)	변호사
경남매일신문	이대근	고충처리인 겸 사회부장	사내·외 인사
경남신문	강창덕	고충처리인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경남일보	김영우	고충처리인 겸 사회부장	2007. 7. 1.임명 (제3대 고충처리인)
경도일보	유만희	고충처리인 겸 사회2부 부국장	2006. 1. 1.임명
경북매일신문	김규동 공봉학	고충처리인 겸 사회부장 (사내) 고충처리인 (사외)	고충처리인 2명 (사내 1명, 사외 1명)
경북일보	정만영	고충처리인 겸 총무국장	사내·외 인사
경상일보	이태철	고충처리인 겸 논설위원	
기호일보	조광래	고충처리인 겸 편집국북부총괄이사	사내·외 인사
경인일보			사내 임직원 중에서 임명
광남일보	노해섭	고충처리인 겸 편집국부국장대우	사내·외 인사

언론사	성명	직위 및 겸직여부	비고(임명자격조건)
광주매일신문	추원룡	고충처리인 겸 관리국 이사	사내·외 인사
광주일보	김동영	고충처리인 겸 논설실장(부국장)	사내·외 인사
국제신문			임직원 중에서 임명(관리담당자가 담당)
남도일보	김성익	고충처리인 겸 편집국장	사내·외 인사
내일신문	김치걸	고충처리인	변호사
대구신문	김상만	고충처리인 겸 편집국부국장	사내·외 인사
대전일보	이용희	고충처리인 겸 심의실장	사내·외 인사
매일신문	홍석봉	고충처리인 겸 편집부국장	사내·외 인사
무등일보	강행욱	고충처리인	변호사(광주YMCA 부이사장)
부산일보		11명의 독자위원이 담당	별도 고충처리위원 없음
새전북신문	김광삼 송태영	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겸 편집부국장	사외(변호사, 제3기 고충처리위원) 사내(제3기 고충처리위원)
시대일보	조양현	고충처리인 겸 상무이사	사내·외
울산신문	이지근	고충처리인 겸 편집국장	
영남일보	장용택	고충처리인 겸 논설위원	사내인사 중 임명
울산매일	조재훈	고충처리인 겸 편집국장	
전남매일	배병화	고충처리인 겸 논설주간	사내·외 인사
전남일보	김용출	고충처리인	변호사 / 사내·외 인사
전민일보	이한호	고충처리인	사외(전북발전연구원 정보지원팀장)
전북도민일보	임환 황선철	고충처리인 겸 편집국장(사내) 고충처리인(사외)	사내(편집국장) 사외(변호사)
전북일보	최동성	고충처리인 겸 편집국장	사내·외
제민일보	김형훈	고충처리인 겸 문화체육부장	
제주일보	한문성	고충처리인 겸 사회부장	
제주타임즈	강선종	고충처리인 겸 총괄본부장	
중도일보	성기훈	고충처리인 겸 상임고문	사내·외 인사
중부매일	박상연	고충처리인 겸 편집부국장	편집국 부장급이상 경력자
중부일보	-	고충처리위원회 소속위원	※고충처리위원회 6명 위원 ※고충처리인은 통상 사내 인사 중 임명
충청타임즈	홍석조	고충처리인	변호사
충청투데이	박건호	고충처리인 겸 주필	사내·외 인사
충북일보	이상빈	고충처리인 겸 부사장	임직원 총회에서 적격자 선출
충청일보	어경선	고충처리인 겸 논설위원	
충청매일	김정원	고충처리인 겸 편집국부국장	부국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선임
호남매일	김영환	고충처리인	조선대 정치학부 초빙객원교수 임직원 및 편집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
한라일보	김병준	고충처리인 겸 편집부장	사내·외 인사

일보, 충청매일, 호남매일도 사내 인사 중에서 고충처리인을 임명하거나 임직원 총회, 임직원이나 편집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발·임명하는 형식을 유지하였다.

다섯째,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 혹은 2년이며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언론사도 있으나 대부분 횟수 제한 없이 연임규정을 두고 있다. 사내 임직원 중에서 고충처리인을 겸직케 할 경우 대부분의 언론사가 겸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언론사도 있다. 또 고충처리인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규에 의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도 있다.

여섯째,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대부분 언론사가 언론중재법 제6조의 규정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피해자가 피해의 구제

를 요청할 때 침해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을 권고하고 독자들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 등이 주요 직무로 돼 있다. 한겨레신문 등 소수의 언론사만이 시민·독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독자적인 칼럼을 집필하는 것을 고충처리인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의 경우, 방송법에 의거 시청자평가원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신청대상은 대부분의 언론사가 방송이나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아일보는 게재일로부터 90일 이내, 연합뉴스는 송고일자로부터 6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MBC 역시 방송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또 일부 언론사는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대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는 ① 신청자

〈표 4〉 고충처리인의 직무와 권한·임기 등

언론사	자 격	권 한 직 무	임 기 보 수
경향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원주주회장과 편집국장 합의에 의해 임명 혹은 위촉 • 편집국 소속기자 5년 이상 • 편집국 이외 국(실), 본부소속 인물로 사원주주회 또는 편집국장 추천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침해행위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 기타법익침해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요하는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권고 • 독자권익보호와 침해구제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가능 • 금고이상의 형선고, 장기간 신체·정신장애 없는 경우 외에는 신분보장 • 회사경영과 직접 관련 있는 부서 등 겸직금지
국민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사 구성원 중 • 보도 사항에 대한 식견과 경험 • 고충처리 업무관련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시정건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 권고 할 수 있음 •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처리 업무와 관련한 출장, 자료 수집, 회의참석 등을 수행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금전을 제공할 수 있음.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언론사	자 격	권 한 직 무	임 기 보 수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사외 4인, 사내 1인을 임명 • 독자서비스센터장이 사내위원으로 독자인권위원회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의 구제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필요한 결정과 조치 • 인권피해사례 주제 토론과 지면반영 통해 피해사전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1년 • 매월 일정액의 심의비 지급
문화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처리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 가진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2. 부장급 이상인 자 • 고충처리인에 선임된 자는 부장급 이상의 지위를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사 발행매체(문화일보, AM7 등)의 보도에 따른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담당.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요하는 피해자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직원신분을 보장받음 • 선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임. •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부장급 이상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고충처리인과 고충처리 보좌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 정산.
서울신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요하는 피해자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른 경비를 지급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
세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언론사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대학 또는 언론 유관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③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그 밖에 언론에 관한 연구실적 또는 경력 등이 제②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권고 • 구제요하는 피해자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독자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자문 • 기타 독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기사심의와 제도개선 방안 수립 등의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 • 보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부장급 이상에 준함.

언론사	자 격	권 한 직 무	임 기 보 수
조선일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조선닷컴의 보도로 인한 침해행위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 침해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의 권고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 참석, 의견개진 	-
중앙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일보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사내 또는 외부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 고충처리인은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처리센터도 함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한겨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유관기관 경력 10년 이상의 사내의 언론인 가운데 선임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 법익침해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요하는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의 권고 기타 독자권익보호 침해구제자문 시민목소리 전달위한 독자적 칼럼집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급여나 수당을 지급함. 사내임직원 겸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한국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내외를 불문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자 - 변호사 자격소지하고 언론보도 사건 유경험자 - 기자로 언론경력 15년 이상(편집국 차장 이상)의 당사 사원 또는 언론보도에 관한 다수의 경력 가진자 - 언론에 관하여 학식, 경험 풍부한 자로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5년 이상 중재위원으로 활동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행위 상담처리, 해소, 개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 명예, 그 밖의 법익침해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요하는 고충에 대한 정정,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권고 그 밖의 독자권익보호 침해구제 자문 첫판의 대장, 축쇄지를 열람해 제3자 부당한 침해 우려 있을 때 고지 및 주의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는 2년이며 연임가능 사내 임명시 회사 급여기준적용하며 다른 업무겸직 시 수당지급 가능 사외 임명시 보수는 회사와 고충처리인 합의로 정함

* 동아일보는 '독자인권위원회' 운영현황 및 규정을 반영하였음

* 조선일보는 '독자권익위원회' 운영현황 및 규정, 고충처리인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음

언론사	자격	권한직무	임기보수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 1-3명으로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피해예방과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 타부서 발령 시에는 임기종료됨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원 3인, 사내위원 1인 • 외부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법률전문가, 방송 전문가, 인권전문가 등으로 위촉 • 사내위원은 홍보심의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회 간사역을 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보도,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 시청자의 고충처리사안에 대한 심의 및 조정방안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보수규정에 의한 임금지급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인 • SBS 내의 위원급 이상의 제작 또는 보도분야 전문가로 함 • 단, 사외선임의 경우 별도규정을 두어 이에 따르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는 1년, 연임할 수 있음 • SBS 사내 선임의 경우, 사규에 정한 임직원의 신분, 보수 규정에 따름 • 사외 선임의 경우, 별도규정을 두어 이에 따르도록 함
연합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구성원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처리인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전 제공할 수 있음 •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 KBS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리보호분과와 연계해서 고충처리문제 해결
 ※ MBC는 시청자주권위원회가 고충처리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겸하고 있음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②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③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 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④ 기사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이의의 제기, ⑤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⑥ 신청내용이 국가·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이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과정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었다. 한편, 조선일보는 중재절차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도 독자권익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특

성을 갖고 있다.

여덟째, 고충의 접수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대체로 3~4주 정도로 정하고 있다.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고충처리를 하고 있는 언론사의 경우는 대체로 월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에 고충사안을 상정해서 다루고 있고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수시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

아홉째,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하여 대부분의 언

〈표 5〉 고충처리 대상 및 처리절차

언론사	신청대상	신청제외사항	처리기간 및 접속방법 등
경향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이 아닌 기사, 타인의 명예, 기타 법익을 침해한 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방문
국민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일보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국민일보 보도. 기타 국민일보 보도로 인한 권익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 단체, 이익단체 이해에 관한 사항.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단체일 경우.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기사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처리결과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 고충처리 결과는 국민일보 지면을 통해 공표될 수 있음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 보도사실이 있음을 독자가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게재일로부터 9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기사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이의 제기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 이메일, FAX(문서로만 접수) 독자서비스센터가 우선 해당 독자와 관련 취재부서간 접촉을 주선, 해소방안 모색 →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위원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피해 구제 조치를 의결 관계부서, 해당독자에게 통보 의결 내용이 편집권 보호가치와 상충하지 않는 한 '정정보도' 또는 '사과문' 등을 지체 없이 지면반영
문화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일보, AM7 등 보도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 인터넷, FAX, 방문
서울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신문에 보도한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 전화, 인터넷, FAX
세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일보 보도 내용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중재, 소송 중인 사안 포함)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이 당사자가 아닌 타인 이거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 집단(정치-종교 등)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이거나 보도 내용이 공공성을 띤 경우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신청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특정 단체인 경우 중재 소송 중인 사안 가운데 위원회의 중재나 판단 이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 인터넷, FAX, 방문 월1회 정기회의에 정식 안건상정 긴급사안, 임시위원회의 안건상정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을 만한 사안은 상근위원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제방안 신속판단 심의/의결된 결과는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통보

언론사	신청대상	신청제외사항	처리기간 및 접속방법 등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 • 중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접수, 해결시도(독자권익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중앙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 •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이메일 · 팩스 • 접수 → 사실여부 조사 → 관련부서 권고 → 정정 ·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한겨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전화
한국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보도로 고충 겪는 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전화, FAX, 이메일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상권,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 보도로 인한 재산상 피해 •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모든 KBS 채널의 보도, 방송프로그램, 기타 KBS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우편, FAX • 처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부서 해결책 강구 권고(2-3주) - 시청자권리보호 분과 안전상정 -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인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통해 공표될 수 있음.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MBC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타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내용이 공공성을 띤 경우,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 고충처리 신청 자격은 프로그램에 의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받은 당해 개인(자연인)에게만 있으며 기업, 단체 등의 신청은 제외.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고충처리 신청인이 소송제기를 현실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고충처리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 인터넷, FAX, 방문 • 월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 • 처리 결과는 접수 1개월 이내 불만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직접 통보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심의 신청자에게 심의 신청 1개월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결서 사본을 우송 • 심의결과는 시청자 프로그램 <TV속의 TV>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 • 기타 관련 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언론사	신청대상	신청제외사항	처리기간 및 접속방법 등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BS의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SBS 채널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단체일 경우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 인터넷, FAX, 방문 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열린TV 시청자세상' 통해 공표될 수 있음
연합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합뉴스 보도로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으로, 송고일자 기준 6월을 경과하지 않은 보도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신청내용이 국가·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과정의 사실 보도에 관한 사항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우편, 방문

론사가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공지와 이용절차가 복잡한 경우도 적지 않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고충처리인' 명칭으로 직접 링크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안내하고 있거나 다른 경로를 경유하도록 구성하는 언론사의 예는 동아일보 '독자서비스센터',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세계일보 '회사소개', 한겨레 '사설·칼럼', 한국일보 '독자투고', KBS '시청자위원회', MBC '시청자센터'였다.

열 번째, 고충처리인에 대한 사내·외 인지도가 높지 않고 활용도 역시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필자가 고충처리인들과의 전화 면담을 해 본 결과나 다른 세미나에서 고충처리인들이 발표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난 2년간 실질적인 고충처리 건수가 미미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기사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을 제시하거나 제보를 해 오는 경우, 시청자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법익 침해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고충처리인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기자와 해결하려고 하는 예,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열한 번째, 고충처리인에 대한 언론사 내의 전화 안내시스템도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직접 서울에 소재한 주요 신문·방송사의 대표 전화를 통해 고충처리인과 접촉을 시도한 결과 안내 전화 담당자들조차 고충처리인의 존재를 잘 모르고

고충처리인에 대한 사내·외 인지도 낮고
활용도 역시 높지 않다는 문제 있어

있거나 안내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었다.¹⁴⁾

4. 결론 및 제언

한국의 고충처리인 제도의 현황에 비춰볼 때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을 예방하

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이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 중복돼 있고 이에 근거한 고충처리인 혹은 옴부즈맨의 역할이 상당히 모호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스웨덴의 옴부즈맨은 ‘언론평의회’ 양식을 지니고 있고 미국의 옴부즈맨은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임명 운영하는 ‘칼럼니스트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 자체적으로 ‘독자위원

<표 6> 각 언론사 대표전화를 통한 고충처리인 연결여부

언론사	비고
A	저희 고충처리부는 따로 없는데요.
B	고충처리요? 예, 알겠습니다.
C	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D	잠시만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E	잠시만요, 편집국으로 연결해드려 볼게요, 따로 없거든요.
F	아, 고충처리인이에요. 잠시만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G	아, 죄송하지만, 의견을 말씀하실 건가요? 시청자상담실을 연결해드릴까요?
H	네, 무슨 부서요? 고, 뭐라구요? 고충처리인이에요? 없는데요, 그런 부서는 없는데요. (고충처리인이라고 혹시 없나요?) 네, 없는데요.
I	어떤 고충처리인데요. 기사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J	예? 고충처리인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서가 없는데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신가요?
K	어디요? 아, 잠시만요.
L	상담실 연결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연결번호는 따로 없거든요.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M	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N	예, 연결하겠습니다.

14) 전화연결은 2007년 8월 17일 11시부터 12시까지 서울에 소재한 주요 신문사·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14를 통해 각 언론사의 대표전화를 안내받고 직접 연결을 선택, 각 언론사의 전화안내 담당자와 통화하였다. 필자의 질문은 모든 언론사에 공통적으로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인에게 연결 부탁드립니다”였다. 각 언론사 표기는 전화통화 시점의 전화안내원 신원보호를 위해 무작위로 처리하였다.

회형'의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피해의 구제와 시정권고, 방송법과 신문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와 독자위원회 그리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고충처리인 등 다양한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 외에도 방송사의 자체 심의부서나 신문사의 독자부, 심의홍보실 등 역시 시청자와 독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2007년부터 시행 중인 한국언론재단의 옴부즈맨 지원제도가 있고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에 고충처리인 제도 유지 여부가 포함돼 있다. 언론으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중층·복합적인 장치를 가동하는 그 자체는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고충처리 절차상 오히려 혼선과 책임 전가의 문제를 빚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법상 고충처리인 제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전화 인터뷰에 응한 각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 역시 현재 고충처리인 제도가 거의 사문화 되어 있고, 실제로 고충처리인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각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현황자료에서도 나타난다. 편집국장·편집부국장을 비롯한 편집국의 부장급 인사들이 고충처리인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논설위원실이나 독자담당부서, 심의홍보실 관계자 등이 겸직하는 경우도 많다. 사내 인사 중에서 전임자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하는 경우나 사외 인사를 임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셋째, 현행 고충처리인 제도가 형식적 혹은 사문화 돼 있다는 언론 현업의 평가는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의 옴부즈맨들은 신문을 읽는데 8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고 하

루 대부분의 시간을 독자들의 문의·의견·불만에 답변하거나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뉴스레터의 작성 그리고 칼럼 집필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옴부즈맨들은 임기를 보장받고 업무의 독립성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옴부즈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조건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반면 한국의 고충처리인들은 편집국장으로서 업무와 논설위원으로서의 업무, 해당 데스크 업무를 병행하면서 형식적으로 고충처리인의 역할까지 겸직하고 있다. 옴부즈맨 업무가 뉴스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처리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이들 뉴스 취재·보도 담당 책임자들이 고충처리인을 겸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능상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고충처리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현행 고충처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다른 이유는 한국의 고충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언론피해자들은 피해가 발생할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해당 언론사의 담당 부서, 혹은 담당 언론인과 직접 해결을 도모하고 있고 담당 언론인 역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 비공식적으로 민원이나 피해구제를 자체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요구나 진행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도 많다는 점이다. 필자와 면담한 고충처리인들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 중인 사안들을 언론사에서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언론사가 고충처리운용 규정상 중재신청건이나 소송 중인 사안은 고충처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독자·시청자들의 고충처리 문제를 대응하는 시스템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경영진, 내부종사자, 고충처리인의
각별한 의지가 필요해

오히려 고충처리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스웨덴 형이든 미국형 혹은 일본형이든 언론 ombudsman 제도를 도입한 까닭은 언론의 취재 보도 관행에 대한 자기비판과 반성을 통해 뉴스·프로그램의 질을 높임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독자·시청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다. 물론 뉴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기사의 정확성, 공정성, 균형성 등을 유지하는 것이며 내부적인 경고나 뉴스레터의 회람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공표하거나 칼럼을 집필, 게재하는 것 역시 언론사 내부에 대한 감시·비판의 효과적인 장치이자 수용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지름길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ombudsman 제도 도입·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인 ombudsman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언론사 경영진, 내부 종사자 그리고 해당 ombudsman의 각별한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언론사들의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보면 대부분의 고충처리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사 종사자들은 고충처리인의 요구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무의미하다. 또 외부 독자위원들에 의한 감시·비판 역시 은연중에 비판의 칼날이 무디어지고 자칫 홍보성 기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언론 종사자들 역시 고충처리인 혹은 ombudsman의 칼럼에 의한 기사 비판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 안의 외로운 섬으로, 식사를 함께 할 대상조차 없어지는 것이 미국형 ombudsman의 현실이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러한 현실을 수용하고 그러한 현실 위에서 주어진 역할을 의연하게 감당

하는 것이 ombudsman의 숙명이라는 점을 ombudsman 역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고충처리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충처리인에게 언론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본다. 현행법상의 법정 요건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인 ombudsman을 원할 경우 사내 인사 중에서 임명하든, 사외 인사 중에서 임명하든 ombudsman으로서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매일 50면 이상을 발행하는 전국지들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지방 일간지들의 경우에도 ombudsman이 전체 기사를 낱낱이 읽고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무 겸직이 어려울 것이다. 소위 전임자를 두어야 한다. 더불어 뉴스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과 비판·의견을 받아서 답변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내부에 알려주거나 칼럼으로 집필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결코 적지 않다. 내부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때는 법적 지식에 능통할 필요가 있고 외부 법조인을 고충처리인으로 활용할 때는 언론의 취재 보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언론사 내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가동하는 것도 고충처리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 터인데 한겨레신문이나 조선일보, 부산일보 등의 사례가 검토해 볼 가치가 높다고 본다. 한겨레신문은 시민편집인으로 불리는 고충처리인을 보조하는 현직 기자를 해당 부서에 전임 배치시켰고 조선일보 역시 독자권익위원회 업무 보조하는 현직 기자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명시적인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는 대신 11명의 독자위원으로 하여금 부산일보의 기사

에 대한 비평 칼럼을 매주 게재하면서 관련 독자부서에서 이에 대한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섯째, ‘한국형 옴부즈맨’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옴부즈맨의 주요한 역할을 보도로 인한 고충의 해결과 칼럼 집필을 통한 언론 비판·감시라고 규정한다면 현재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외부적 고충해결 장치로서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언론사 내부의 고충처리인 제도가 실질적이지 않게 된 이유 중에는 해당 데스크나 언론인들이 비공식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것과 피해자들이 그들의 고충을 언론사 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언론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단일법으로 언론중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언론중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더불어 언론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언론소송의 절차와 기간 역시 간소화·신속화 되었다. 현실적으로 언론사 내부의 고충처리인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다. 반면, 고충처리인 혹은 옴부즈맨에 의한 자기비판 칼럼은 극히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면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옴부즈맨이 뉴스보도의 질을 제고시켜 수용자들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있다면, 그리하여 당장의 발생한 법익 침해와 고충을 구제하고 장차의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면 옴부즈맨들에 의한 옴부즈맨 칼럼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현황과 여건 위에서 한국형 옴부즈맨 제도의 전형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상현(1993). 진일보했으나 홍보용에 그칠 우려: 언론옴

부즈맨 제도 도입. <신문과 방송>, 12월호, 16-20.

권오근(2003). 미국·일본 신문사의 옴부즈맨제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겨울호, 통권 제89호.

김경호(2004). 프레스 옴부즈맨 제도 운영에 관한 외국사례 고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최 <합리적인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방안> 세미나 자료집.

김 균(2007). 한국 신문 옴부즈맨 칼럼의 현황과 개선방안: 형식과 내용적 특성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 주최 <신문옴부즈맨 현황과 발전방안> 세미나 자료집.

김동규(1993). 국내 신문의 기사불만처리기구 고찰: 그 운용실태와 과제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여름호, 통권 제47호.

김재홍(1993). 언론의 신뢰향상, 확대 도입돼야: 옴부즈맨·독자전화. <신문과 방송>, 6월호, 14-17.

김재홍(1999). 한국 언론의 옴부즈맨제도 운용 실태와 전망. <언론중재>, 봄호, 통권 제70호.

류지태(2004a). 옴부즈만 유사 권익구제기관 현황과 평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류지태(2004b).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과 발전 방향. <언론중재>, 제24권 제3호, 통권 92호, 20-34.

류한호(2006). 언론법을 통한 독자·시청자 권익보호운동의 방향. 언론인권센터, <언론법을 통한 독자·시청자 권익보호운동의 방향 세미나> 자료집.

박영조(1993). 옴부즈맨제도의 실태: 미국 제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여름호, 통권 제47호.

박형상(2000). 옴부즈맨을 아는가. <신문과 방송>, 5월호, 통권 353호, 124-127.

성병욱(2005). 신문자율규제 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최 <한국의 언론자율감시기구 현황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송윤숙(2000). 미국의 옴부즈맨 제도. <신문과 방송>, 1월호, 통권 349호, 158-161.

안광식(1999). 옴부즈맨 제도의 기능과 역할. <언론중재>, 봄호, 통권 제70호.

양경승(2006). 언론중재법 개정방향과 쟁점.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토론회 자료집.

양경승(2004).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언론중재>, 제24권 제3호, 통권 92호, 5-19.

양경승(20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 위헌인가. <언론중재>, 제25권 제3호, 통권 96호, 45-81.
- 양삼승(20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제25권 제1호, 4-25.
- 양동구(2005). ombudsman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봉논집>, 제36집, 169-187.
- 유일상(2004). 신문독자불만처리제도의 정착과 발전 방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최 <합리적인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방안> 세미나 자료집.
- 유제열(1996). ombudsman 제도로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24권 제2호.
- 이혜영(2006). 주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지방ombudsman제도 활성화 방안: 서울시 시민감사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23집, 263-287.
- 장원석(1994). ombudsman 제도의 이론과 실제. <제대논문집(인문·사회)>, 제39집, 551-570.
- 조대근(2005). 대부분 십의나 독자서비스 업무와 겸직: 언론사 고충처리인 현황. <신문과 방송>, 10월호, 160-161.
- 조수정(2006). 언론보도 분쟁의 재판 외 해결절차로서의 언론중재. <언론중재>, 여름호, 75-87.
- 최춘석(1984). ombudsman 제도에 대한 소고.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연구>, 제3집, 43-53.
- 하동원(2002). 한국형 ombudsman 제도에 관한 연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용걸(2001). 신문 신뢰도의 창구: '뉴스 ombudsman'. <신문과 방송>, 11월호, 통권 371호, 94-96.
- 한위수(2006).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위원회 2006년도 정기세미나 주제 논문집, 9-33.
- 홍수원(1999). 칼럼분석을 통해 본 미국 ombudsman의 역할과 한계. <신문과 방송>, 9월호, 통권 345호, 152-155.
- 홍수원(2000). 미국 ombudsman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신문과 방송>, 5월호, 통권 353호, 128-131.
- 한국언론재단(2006a). 용기와 독립성 견지로 독자 신뢰 되찾아: 퍼블릭 에디터 제1호, NYT 첫 번째 ombudsman 칼럼집. <MEDIA WORLDWIDE>, 8월호, 78-79.
- 한국언론재단(2005a). 상처받은 자아, 무법자, 그리고 음흉한 이기심: 뉴욕타임즈 ombudsman 오크렌트의 경험. <MEDIA WORLDWIDE>, 6월호, 40-45.
- 한국언론재단(2005b). 일간신문은 1500여 개, ombudsman은 40여 명: 미국 신문사 ombudsman 현황. <MEDIA WORLDWIDE>, 8월호, 34-39.
- 한국언론재단(2004). 신문사 안의 아웃사이더 ombudsman. <MEDIA WORLDWIDE>, 6월호, 36-40.
- 한국언론재단(2001). 일본 언론의 '제3자위원회': 번지는 일본식 ombudsman. <MEDIA WORLDWIDE>, 5월호.
- ONO(2007). <http://www.newsombudsmen.org/what.htm> (2007. 08. 20).

2007년도 정기세미나 토론내용 요약

한진만 강원중재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인격권 관련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손해배상제도와 언론중재법 제정에 맞춰 신설된 고충처리의 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각각의 이론적 배경과 현장의 사례들을 제시해가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인격권 관련 손해배상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각 중재부가 결정하는 손해배상 액수가 법원에 견주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올려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언론사에서 초청된 참석자들과 발제자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또한 언론 보도에 있어 초상권 침해는 비롯한 인격권 침해의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인격권 침해의 기준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참석자들 간의 논쟁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국민의 인격권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이야기가 오갔다.

한편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고충처리인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 또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해 오히려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언론중재위원회와 각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이 연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나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제1주제 토론

양윤석(SBS 보도본부 사회2부 차장) : 4년간의 일본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국내 언론 현장에 복귀해보니 예전과 달리 언론이 취재 대상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때문에 때로는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많은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변조되어 오히려 시청자들로부터 '제대로 보여 달라'는 항의를 받는 경우도 많다. 취재 당사자들의 인격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청자의 알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고민하며 취재, 보도하고 있다.

그 동안 궁금했었던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언론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직접 조정신청하거나 법원에 소

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먼저 언론사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언론사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항의나 문제 제기가 된 보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방송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언론사 입장에서는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선의로 행한 조치들이 무위로 끝나고 결국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어 또 다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 즉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경우의 사건들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으로 갔을 경우 언

론사에서 했던 조치들이 사건 처리에 있어 감안되고 반영되는지 궁금하다.

김동하 부장판사(발표자) :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감안을 해 사건 처리에 임하고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 이전에 당사자가 서로 간의 합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감안해 형의 선고에 있어 참작하게 되며, 민사 사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일방 당사자가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참작해 조정이나 판결에 반영을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제기된 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등 적절히 응대했음에도,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배상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어려움을 언론사 분이 말씀 해주셨다. 일단 손해배상금액은 한 가지 사정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산정하게 된다. 사실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에 따라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낼 것을 신청인과 합의할 경우, 그 같은 사실이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부각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청구를 자제하는 것으로 양해되기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옴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 판결의 후한 배상액보다 현저히 낮아 언론사 입장에서 결코 불이익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보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을 경우, 언론사는 신청인의 요구에 (신청인이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내 변호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상담 등을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문

제를 제기한 신청인을 만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문제 제기 초기에 신청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절한 사과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적절한 사과를 했음에도 신청인이 강하게 나올 경우, 언론사 역시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하고 그 한 방법으로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는 수용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다시 생각하도록 협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신청인, 언론사 모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통해 만족할만한 실익 거둘 수 있어

노태홍(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 판사) : 언론사에서 충분한 수준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해주었는데도 사건이 법원까지 오게 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실제 그런 사건이 법원에 신청됐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법리적으로 언론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원고 청구를 기각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일단 명예훼손 등 위법한 사안이 된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언론사의 사전 조치들이 법원에서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 어느 정도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구능희(KBS 고충처리인) : KBS의 경우 사회고발, 사회비평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늘 지뢰밭을 걷는 심정으로 취재, 제작에 임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론사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언론사와의 상대적인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KBS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대체적으로 보도

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우선 제작진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취재 현실상 사무실로 연락을 하더라도 낮에는 취재 담당자들과 연락이 되기 어렵고 대개 해당 보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직원들이 전화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제작진과의 1차적 접촉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령 제작진과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이 격해져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발제자의 말씀처럼 초동조치를 적절히 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제작진들에게 그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취재·제작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북 마련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노하우가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주제 발제 내용 중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낮은 수준이고 액수를 좀 더 높여 언론사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동안 쌓은 조정·중재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송협회 등의 단체와 협력, 방송사의 제작진들이 실무 제작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편람이나 가이드 북 등을 제작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어쨌든 시청자의 불만 처리에 있어 더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절감한다.

김강덕(대전중재부 중재위원) :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사는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가 합일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애써야 함은 물론 동시에 언론 보도로 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

한 아이가 부모로부터 숙제를 안 했다는 꾸지람을 받고 자살했다는 보도에 대한 조정 사건이 대전중재부에서 있었다. 그런데 신청인은 조정 심리 전에 이미 억대에 달하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고 피해 배상에 대한 확신과 함께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중재부는 조정 과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1천 5백만 원으로 낮춰 직권조정결정 했고, 이를 양 당사자가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신청인의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 한편 언론사는 법원으로 갔을 경우 더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건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낮은 금액으로 모든 문제를 아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결국 언론사와 언론중재위원회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언론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관이라 생각된다.

안창현(한겨레신문 시민편집인실 담당기자) : 현장 취재기자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명예훼손의 면책 요건 중 ‘상당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동하 부장판사(발표자) : 주제논문집 21페이지 각 주 37번을 보면 상당성에 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상당성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취재하면서 필요한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물론 기자로서는 여러 번 찾아가고 연락을 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질 않아 사실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명예가 훼손되거나 초상권이 침해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자가 여러 번 전화하고 방문하고 연락처를 줬다는 이유로 기자에게 연락해 해명하고 취재하러 오라고 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기자 자신이 취재의 대상이 된 입장이라면 다른 기자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서 친절하게 다시 연락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론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취재해야 한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초상권 침해의 경우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을 전용하는 등의 경우, 촬영된 당사자에게 연락해 동의를 구해야 하고 만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 경우 기본적으로 촬영된 사진을 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다. 만약 그 사진을 게재하겠다 라고 할 경우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의 경우에는 상당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을 담고 있을 경우 프라이버시에 있어서는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더 올라간다.

초상권과 프라이버시의 경우 동의를 전제로 한다.

다만 공인의 경우 사진 공표 등을 스스로 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 비난하는 내용으로 악용될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안창현(한겨레신문 시민편집인실 담당 기자) : 일반적으로 구속 영장만 보고 기사를 쓰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괜찮은가?

김동하 부장판사(발표자) : 그러한 기사를 쓸 경우 피의자나 피의자의 가족을 만나 반론권을 줘야 한다. 그리고 구속 영장을 토대로 혐의 사실 자체를 적시하는 것은 괜찮지만 혐의가 '드러났다'거나 '밝혀졌다'는 식으로 단정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김현진(충청투데이 사회부장) : 재판관을 받게 되면 틀림없이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서조차도 이니셜 처리나 익명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도 익명 처리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또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일 경우 다소 과도한 표현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데스크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김동하 부장판사(발표자) : 먼저 자극적인 표현을 데스크에서 거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른 표현이 있는데도 굳이 인격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는 공익성 차원에서 보도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하는 것은 공익적인 관심사항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한다면 공익사항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은 공익적인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실명을 밝힐 경우 성명권 침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범죄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진실성과 상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공익성이라는 부분에 걸릴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니셜로 나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된다.

범죄 사건 등에 있어 피해자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 관심사항으로 볼 수 없어

이수언(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 : 피해자의 특정 문제는 실제 조정을 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발제문을 보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다수'의 개념이 애매하다. 한편에서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한 사람만 알아도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현직에 있는 후배 기자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김동하 부장판사(발표자) : 피해자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수 개념을 따져봐서 명예 등을 회복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다수라고 봐서 피해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주 쉽게 저렴한 비용, 작은 노력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

자 특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제2주제 토론

구능회(KBS 고충처리인) :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충처리 대상 사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고충처리인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심지어는 알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실제 중요한 것은 보도나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바로 고충처리인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현 시스템상에서는 그렇지 못해 고충처리인으로서의 역할이 어렵고 부족하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신청인과 해당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이 사전에 교감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언론중재위원회 측에서 각 언론사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수렴해 고충처리인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고충처리인의 위상,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위임하는 수준에 그쳐서 고충처리인이 사내에서 충분한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종호(문화일보 논설위원 겸 고충처리인) : KBS 고충처리인의 말씀처럼 고충처리 사항으로 신청되는 일이 적기도 하고 사안 자체가 아주 사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옴부즈맨 제도가 신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은 받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거나 현실화 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법에 의해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과 자각에 의해 고충처리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법으로 강제해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또한 1주제와 관련해, 정치인이나 행정부 고위 국정담당자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지나치게 자주 조정·중재 신청을 하고, 특히 사실 보도가 아닌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까지 조정·중재를 신청함으로써 기자들이 위축되는 측면도 있다. 지나친 조정·중재신청은 기자와 칼럼니스트를 위축시키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승선 교수(발표자) : 고충처리인의 역할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나 법원 절차 이전 단계로서 언론사 차원의 자체적인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사건의 발생 자체를 예방해 보고자 노력하는 역할이 고충처리인 혹은 ombudsman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위축효과와 관련해 소송의 위협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신청 자체가 언론인들에게 위축을 준다는 것에 대해 많은 언론학자들이 동의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그러한 위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장치가 바로 고충처리인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소송이라는 위축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감시, 비판, 견제함으로써 그러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고충처리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다.

김종호(문화일보 논설위원 겸 고충처리인) : 발표자의 이야기에 동의하지만 언론사의 자발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고충처리인 제도가 도입되어야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용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사마다 현실이 다르고, 아직까지 고충처리인 제도를 도입할 만한 현실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강제해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또한 1주제와 관련해 행정부나 국가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조정·중재 신청으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법을 통해 타율적으로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있어

김동하 부장판사(발표자)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단체나 정부의 경우에는 조정·중재 신청이나 법원에의 소송이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하는 언론사 대리인의 태도를 보면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와 대기업 또는 정부인 경우가 상당히 다르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을 많이 이해하려 하고 중재부의 의견에 따르려는 반면, 신청인이 대기업이나 정부일 경우 언론사가 자존심을 세우려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언론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언론사의 그러한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정부기관이 다소 무리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조정·중재 신청이 위협이 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언론사의 책임이라고 본다면 정부의 조정·중

제 신청을 위협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는 초기에
고충처리인이 잘 대처하면
문제가 확대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

심흥식(국정홍보처 분석총괄팀장) : 최근 정부의 언론 대응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 부처의 언론 보도 대응에 대한 점수는 법적 대응을 하되 피해가 구제되었을 때는 가점하고, 무분별한 소송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받아내지 못한 경우에는 가중치만큼 감점을 한다. 최근 경향을 보면 조정 신청은 줄고 피해구제율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 기관이 조정, 중재를 신청해서 피해구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언론사 입장에서 돌아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려면 우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언론이 쓴 대로 정책을 바꾼다고 했을 때 만일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오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바꿔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국정홍보처는 언론 대응에 관해서는 전국의 언론을 모니터해 정책과 관련한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고치기 위해 노력하며 언론 보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여섯 단계로 나누어 법률을 고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언론 대응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는 수용기사가 대응기사보다 1.5배 많다. 국정홍보처가 운용하는 언론 수용, 대응시스템은 언론 보도 내용을 정책에 참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언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언론인들이 땀 흘려 취재한 보도 내용은 정책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다만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언론 보도만을 보고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부가 언론에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한진만(사회자) : 다시 고충처리인 제도와 관련한 토론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한성일(중도일보 사회단체팀장) : 시청자위원회나 독자위원회가 사외 옴부즈맨 제도라면, 고충처리인 제도는 사내 옴부즈맨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제도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고충처리인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벌써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사문화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왕 시작된 제도라면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허형석(연합뉴스 기사심의실장 겸 고충처리인) : 고충처리 실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고충처리인 제도가 활성화되고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기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초기 단계에서 고충처리인들이 잘 대처할 수 있다면 일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민이나 언론사의 기자, 사주, 경영진 등이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홍보 역시 부족한 상황은 안타깝다. 고충처리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보도로 인한 권익 침해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의 경우, 고충처리인이 취재 기자에게 직접 확인해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사 수정을 하거나 대체 기사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충처리인과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잘 협의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사례도 있다. 기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안창현(한겨레신문 시민편집인실 담당 기자) : 한겨레신문사의 경우 아직 고충처리인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도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해 긍정하는 의견과 부정하는 의견이 나뉘어 있다.

고충처리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나타난 장점은 취재기자들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기사를 보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기사를 쓴 기자에게 연락을 하면 기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또 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를 시민편집인이 일괄적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기자나 논설위원이 직접 대응을 하거나 처리하는데 드는 노력을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외부의 비판을 싫어하는 기자들의 속성상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기자가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보니 갈등이 쌓이고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편집국 간부나 경영진이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용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제도의 정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용택(영남일보 논설위원 겸 고충처리인) : 사실 일반 기자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고충처리인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기자들이 고충처리인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내의 기자들에게 고충처리인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서명수(중앙일보 고충처리인) : 중앙일보는 고충처리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부터 기사불편불만센터를 운영해 왔다. 중앙일보 역시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

다. 문제는 실제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현업부서에서 일어난다는 점이고 따라서 고충처리인의 역할은 형식적인 면에 그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기사로 인한 권익 침해를 예방하는 문제는 기자들의 교육, 훈련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고충처리인 제도로 해결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수언(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 : 고충처리인 제도라는 것이 언론사 내부의 고충을 처리한다는 의미와 언론 기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충을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해결한다는 의미의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고충처리라는 번역 자체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음부즈맨 제도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일반 독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개인적인 생각은 언론사가 언론 보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제도가 어떤 제도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표현해 '독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언론사 스스로 해소하는 기구'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충처리인 제도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언론사 내·외부의 구성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 구해야

한진만(사회자) : 계속해서 고충처리인 제도의 홍보 문제, 용어 선택의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 같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언론사에서는 활성화가 될 것이고, 해당 언론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든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사의 필요에 따라 가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다

만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고충 처리인이나 옴부즈맨을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 언론사에서 고충처리인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언론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이승선 교수(발표자) : 논문을 정리하고 관련법을 검토하면서도 고충처리인이 적합한 번역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다. 고충처리라 하면 이미 법익이 침해되어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로 갈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칼럼, 기사에 대한 감시비판 칼럼이라는 측면에서는 고충처리라는 의미보다는 시민이나 독자의 입장에서 언론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된다. 고충처리인 역할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볼 것인지에 따라 용어 선택 문제 등도 달라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종합토론

진영록(전북일보 미디어팀장) : 1주제 발표 내용 중 법원 배상액만큼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액도 높아져야 한다는 부분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봐 주었으면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는 사안과 법원으로 가는 사안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배상금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금액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예전에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사가 후속보도를 포함해 여러 차례 심층 보도될 예정이었는데 첫 기사가 보도된 후 관련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후속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이 후속 보도를 막는 역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동하 부장판사(발표자)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 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의 배상액이 너무 낮다는 평가를 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 금액이 언론사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특히 인격권 중에서도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에는 조정 금액을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 조정을 하다보면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 금액이 낮아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치유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법원이 점차 손해배상액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으로의 조정 신청 또는 제소로 인해 후속 보도가 나가지 못하는 역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까지 보도를 할 수 없도록 막는다면 역작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일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그대로 보도했을 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면 후속 보도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역작용이라 볼 수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진영록(전북일보 미디어 팀장) : 문제의 당사자는 언론사가 정당하게 보도했지만 후속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일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본 것이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들어가면 사안이 복잡해지기 때문

에 후속 보도를 결국에는 못하게 되는 경우이다.

김동하 부장판사(발표자) : 신청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면 다시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진만(사회자)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과 상관없이 언론사 스스로 판단해서 보도할 사안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언론사 내부의 지나치게 유약한 판단으로 보인다.

김동하 부장판사(발표자)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이나 법원에서의 소송이 언론사를 지나치게 위축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된다. 그러나 언론사에서도 제소 당하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다. 준비를 잘 해서 그러한 소송 등을 방어하면 되는 것이다. 준비를 잘 하면 손해배상액을 감액 받거나 배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도하면 그만큼 배상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안종배(경기중재부 중재위원) : 최근 경기중재부로의 방송국 르포 프로그램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모 씨가 조정 신청을 했다. 문제의 방송 주제는 ‘애견남’ 이었는데, 이 ‘애견남’이란 일정 금액을 주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고발 의식도 담겨 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애견남’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는 장면과 그 사이트에 담긴 사진을 방송하고 실제 애견남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에게 방송이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음성만 들리는 상태로 방송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물론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다. 당시 인터뷰를 했다는 신청인은 이 프로그램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한 점, 인터넷 사이트에 나온 사진을 자신과 가까운 친구는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르포 프로그램들이 방송에 대한 출연자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하는 경우와 관련한 잣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본인 스스로 자신이 ‘애견남’이며 어떤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미 다 공개한 내용을 르포 프로그램이 방송했다면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중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금보다 더 올릴 필요 있어

김동하 부장판사(발표자) : 공개된 내용을 동의 받지 않고 함부로 방송하거나 하는 경우, 이미 공개된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개된 영역에 대해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공개를 승낙할 때의 범위나 목적과 다른 새로운 범위나 조건으로 변경된다면 침해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가족, 친구, 친척이 알 수 있고 본인이 위치한 곳 주변의 모습 또는 음성 등으로 인해 본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했다 하더라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신일(충북일보 정치부장) : 1주제 발표와 관련해 발표자가 지나치게 폭넓게 초상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2주제와 관련해 발표자가 고충처리인 제도를 언론중재위원회로 가기 전의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충처리인 제도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의 단계 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들, 즉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김동하 부장판사(발표자) : 초상권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과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사 내부 비판의 역할과 보도로 인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이 혼합돼 있어

이승선 교수(발표자) : 고충처리인 제도가 독자를 위한 서비스인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의 완충장치인지를 물었는데, 바로 이 점이 한국의 고충처리인 제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형의 경우에는 시민이나 독자의 입장으로 언론을 보고 어떤 기사가 문제됐을 경우 그에 대한 칼럼을 게재하는 것을 모델로 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불만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충처리인 제도를 보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혼합해 가동하고 있는데 고충처리인 제도가 어느 쪽으로 가야할 것인가는 언론사의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 제도는 스웨덴 형처럼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해결을 해보는 제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본다.

방민준(서울 제5중재부 중재위원) : 음부즈맨 제도 혹은 고충처리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980년대 초, 울산에서 대규모 노사분규가 터졌을 때 노조 간부를 회사의 프락치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보도됐

다. 노조 간부로서는 치명적인 기사였다. 노조 간부의 부인이 하소연을 해와 사실 전달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 회사에 보고해 정정을 하도록 요구했다. 그런데 정정 기사는 나오지 않았고 신문사에 다시 항의를 하니 신문사에서는 정정 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기사를 정정하는 내용을 담은 진단지를 직접 제작해 신문과 함께 배달했고 나중에 노조 간부의 가족들이 그 내용을 보고 감사의 뜻을 표해왔다. 그 때 그 사건으로 언론피해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신문사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거나 바로잡는 것에 대해 자존심을 상해한다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정함으로써 독자의 신뢰와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 측면에서 음부즈맨 제도나 고충처리인 제도를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구창훈(KBS 지역/법무팀 변호사) :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주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봤을 때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과연 친척이나 친구 등의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인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친구나 친척이 자신을 알아보고 전화 또는 연락을 했다고 주장을 할 것인데 그런 식의 입증을 법원이나 중재부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좀 더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친척이 알아봤다는 주장을 듣고 특정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피해자 특정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한편 음성권이라는 부분은 좀 더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방송을 통해 들었다고 해서 정확히 자신의 목소리로 인식할 수 있는지, 음성변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목소리가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초상권, 음성권 등이 절대적 권리화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 보도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보도됐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초상권, 음성권을 절대적 권리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익의 침해, 즉 특징이 되어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었을 때와 같은 새로운 이익의 침해가 있었을 때만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보호의 영역에서 지켜주어야 하고 상업적 이용도 아닌 방송의 공익적 보도를 위해 나간 보도에서까지 초상과 음성을 절대적 권리로 판단해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례로 어떤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옷을 뒤집어쓰고 경찰서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 분명히 인터뷰를 한 피의자는 목소리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뷰에 응했지만 후에 그 피의자는 음성변조 없이 자신의 목소리가 나갔다는데 대해 항의를 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과연 목소리가 나가는 자체가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인지 인격권의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동하 부장판사(발표자) : 주변인이 인식했는지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입증에 관한 문제인데, 특징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나 친척에게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를 당연히 물을 것이고 이 때 친구

나 친척이 재판부는 모르는 피해자의 특정 행동이나 모습 등을 증언한다면 특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인격권은 자신의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 자체를 공개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옳지만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주위의 누군가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른 인격적인 침해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상이나 음성이 보도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인격권 보호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묵시적 동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초상이나 음성이 보도됐다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인격권은 자신의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김민아(국정홍보처 변호사) : 정부의 대 언론 정책으로 인해 언론의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입장에서 홍보 방법에 있어 언론 대응은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홍보를 잘하지 못해서 언론이 한 면만을 부각시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최선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 특히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그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언론의 입장에서나 정부의 입장에서나 어떤 정책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야 공익이 실현된다. 언론도 정부의 입장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한다

면 반론에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독자의 입장에서든 반론에 인색하지 않는 언론사에 더 신뢰감을 느낄 것이다.

정부 업무 평가에서 홍보는 작년의 경우 15%였고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15% 중에 다시 10%가 언론대응 점수다. 승소, 패소에 대한 점수 부여는 대응의 적절성 항목 때문인데 이 부분은 국정홍보처에서 임의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질적, 양적 평가 기준에 따라 하고 있다. 질적 평가는 신문방송학 전공 교수에게 맡겨 평가를 받고 있고 양적 평가는 피해구제율이 따라 평가한다. 예를 들어 각 부처가 10건을 대응했는데, 8건이 구제됐으면 80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무리한 대응을 한 경우 피해구제율이 낮아져 오히려 대응하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는 언론에 과잉 대응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언론 자유와 국민 인격권 조화 위해
고충처리인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상호 협조·노력할 수 있는 방안 고려해야**

김병일(한국경제신문 법조팀장) : 언론에 대해 이런 저런 지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긴 하지만, 그런 지적들이 자칫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언론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지금은 분명 과거와 환경이 달라져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언론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한진만(사회자) :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해 달라.

김동하 부장판사(발표자) : 중재부장으로서는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언론사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조정대리인을 출석시켰으면 한다. 정부의 경우에도 실질적

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출석해주었으면 좋겠다.

이승선 교수(발표자) : 이 자리에는 언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판사, 재판 외의 절차로서 조정,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위원 그리고 이 전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자체 해결 장치로서의 고충처리인이 자리를 함께 했다. 언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이라는 상충하는 두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자리한 모임이어서 값지다고 생각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재판 외 절차로서 25년 여 전에 탄생했을 때 찬반 혹은 의구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중재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언론사의 고충처리인들이 갖고 계신 고충들을 언론중재위원회가 잘 수렴해서 향후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제도가 한국적인 모델로 만들어져 발전,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진만(사회자) : 오늘 세미나를 통해 언론과 국민, 정부 모두가 다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다.

조준희(위원장) : 이번 세미나가 손해배상 문제와 고충처리 문제를 주제로 해서 대단히 실무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법의 내용, 고충처리인 제도 도입의 적절성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논의되고, 심지어 정부의 언론 대응 등에 관해서까지 이야기되는 등 무척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토론이 진행된 것 같다. 열심히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손해배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특정,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과 관련된 문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손해배상 액수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발제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손해배상 금액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손해배상 액수가 좀 더 높아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손해배상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언론의 위축 효과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시행 결과가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조정이나 중재, 피해구제의 최고 이념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에 있다고 본다. 이를 어떤 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되느냐는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이미 연구하고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라는 것은 사후적 구제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사 내에 고충처리인 제도를 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론사에서 수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한다면 언론에 대한 신뢰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2년 전 영국 가디언 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가장 크게 감명 받은 것이 바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모습이었다. 고충처리인은 사내 기구이지만 그 직위가 독립되어 있고, 바람직한 언론의 모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런 확신으로 고충처리인이 경영자나 편집인에게 얘기하면 대체로 수용이 된다고 한다. 또 그와 같은 역사가 오래 이어지면서 언론사 전체가 언론 수요자의 이익이나 언론 편집의 객관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당시 편집회의를 참관하기도 했는데, 각 팀의 책임자들이 모두 모인 1시간가량의 편집회의에서 상당 시간은 어제 나간 기사에 대한 자체 평가에 할애하는 모습이였다. 언론인인 자신들의 모습을 단순히 고충처리인만이 아니라 취재, 보도의 실무자들도 점검하고 있는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물론 우리의 언론 환경은 영국과 전혀 다르지만 명망있는 선진 언론의 모습을 통해 우리 언론의 현재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한다. □

정정보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파장

김 재 협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I.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과 위헌결정

지난해인 2006. 6. 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¹⁾에서 새로 도입한 정정보도청구권에 기한 소송에 관하여 한 건의 법원의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르게 한 조항(제26조 제6항의 본문 전단 중 정정청구부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었다.²⁾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³⁾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

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⁴⁾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이나 재판절차 등의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며, 그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와 보도의 허위성의 개념과 입증방법 등에 관하여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된다. 바야흐로 언론계는 물론 국회, 시민단체,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도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반론권 제도의 본질과 가치, 언론중재제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하여 제대로 된 법률안을 만들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위헌결정이 난 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합의된 법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라서 안타까운

1) 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2)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 결정. 그와 함께 부칙 제2조 중 정정보도청구권을 소급적용하게 한 부분도 위헌이라는 결정도 선고되었다.

3)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4) 그 근거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제14조 제2항), 정정보도청구의 소 제기로 인하여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제26조 제4항),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비하여 현저히 짧은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제14조 제1항)을 들고 있다.

마음 금할 수 없다.

II. 언론중재법 이전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 연혁과 법적 의미

1. 반론권 제도에 포섭되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정정보도청구의 도입과 그 법적 의미

가. 도입의 과정

언론기본법이 1980. 12. 31. 제정되면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언론법제에 처음으로 반론보도 제도를 도입하였다.⁵⁾ 그 의미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해당 언론사에게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 주장의 보도를 무상으로 구하는 권리이고, 그 성립요건으로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그 보도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⁶⁾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가해자의 고의·과실이나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종래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권리이다. 말하자면 반론보도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로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받게 되고, 언론사로서는 다른 입장을 가진 상대방에게 토론이나 반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

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에 그 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반론보도 제도를 통하여 쌍방의 사실적 주장과 자료들이 보다 충실하고 균형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진실발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언론의 공익 목적에게도 부합하게 된다.⁷⁾

한편 언론기본법은 반론권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언론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원의 소송절차에 앞서 필요적 중재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신속하고 경제 적이며 간편한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채택하였다. 그 후 민주화 과정에서 1987. 11. 28. 언론기본법은 폐지되었으나 반론보도 제도에 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과 중재위원회의 필요적 중재전치제도를 그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⁸⁾과 방송법에 흡수되는 방법으로 유지되게 되었다. 반론보도청구 제도와 언론중재제도는 정정보도청구라고 이름 붙여진 그대로 존치되었고, 언론사가 2회 이상 중재절차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도록 중재제도를 강화하였으며, 1991. 12. 31.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러다가 1995. 12. 30. 정간법과 방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법령상 반론권 제도의 본질인 정정보도청구권의 용어를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리하고, 그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적 중재전치주의를 그대로 두되,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하나로 인정되는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임의적 중재사항으로 보아 중재대상의 폭을 넓혔

5) 1907. 7. 24. 통감부가 법률 제1호로 공포한 공무신문지법 제20조이었으나, 그 법률의 제정 목적이 일본이 한국의 신문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우리 신문은 식민지 하에서 애국애족, 사회의 목탁으로서의 긍정적 역할만을 하여와 그 반론권 제도가 실제 운용된 바는 전혀 없었고, 그 후 5·16 쿠데타 이후 방송법과 언론윤리위원회법에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축소되어 수용되었으나 역시 한 건의 운용사례도 없었다고 한다.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Ⅱ, 2002. 법문사, 440-448쪽 참조.

6) 반론권으로서의 법적 성격 규명은 서울고등법원 1983. 11. 17. 82타20095 결정.

7)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1997. 조선일보사, 521-522쪽; 박선영, 위 책, 437-440쪽 참조.

8) 이하 정간법이라고 줄여 쓴다.

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직권중재결정 권한을 주었다.

하여튼 지금까지 언론 관련법에 규정된 반론보도 제도의 근본 목적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권리의 행사요건으로 그 언론보도의 진실이나 위법성 여부, 나아가 언론사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것에 그 제도의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반론권의 행사에 있어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요건인 행위자의 고의·과실, 행위의 위법성을 요구하면 신속한 구제의 길이 봉쇄될 우려가 있고 이는 반론권의 본질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도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보도가 허위인 경우에는 반론보도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중재절차나 소송절차에 있어 그 행사 요건으로 보도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파악하더라도 '진실 여부를 묻지 아니 한다'에는 '진실이든, 허위이든, 진실인지 허위인지 불명하든, 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반론보도 제도의 중재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신속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경우로든 보도의 허위성이 밝혀지면 당연히 피해자는 다른 입장이나 보충의 의미를 담은 반박보도를 넘어 전부나 일부의 정정의 의

미를 담은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도 반론보도 제도의 본질이나 목적에 전혀 어긋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정간법이나 방송법상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와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면, 정간법 제16조 제1항이나 방송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사실적 주장 속에 허위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정간법 제18조 제1항(방송법 제92조에 의하여 방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에서 반론보도청구권 외에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도 중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정간법 제19조 제1항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필요적으로 중재절차를 전치절차로 거쳐야 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제2항에서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⁹⁾ 한편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¹⁰⁾ 제2조 제4항에서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신청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¹¹⁾ 제5조 제1항에서는 반론보도청구사건의 판결

9) 그 밖에 제19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소에 관한 관할, 가처분절차의 규정(다만 보전의 필요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77조와 본안의 제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제외)에 의하여 재판함을, 제5항에서 그 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함을 규정하고, 제19조의 2에서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항소만을 허용하고(제1항),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취소판결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제2항)를 규정하고 있다.

10) 2005. 7. 13. 대법원규칙 제1951호로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중재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1) 이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가 반론보도청구권과는 행사방법이 서로 다름을 나타낸다. 즉 반론보도청구사건은 신속한 반론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하고,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는 통상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민사본안 소송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¹²⁾에 규정된 절차에 따름을, 제2항에서는 그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가압류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채권자에게 채권을 고지하거나 송달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간법 등의 반론보도에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정정보도도 포함한다

정간법 제16조 제1항이나 방송법 제91조 제1항에서 반론보도청구권자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실적 주장에는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한 주장만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정정을 포함하는 반박을 구할 필요성과 신속한 권리 구제의 요구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기본법에서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물론 정간법이나 방송법에서 말하는 반론보도청구에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청구하는 정정보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개념상으로 보아도 반론보도는 그런 의미의 정정보도를 당연히 내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는 반론권 제도가 생긴 연혁이나 프랑스나 독일 등의 반론권 제도의 기본 원칙과 성격 나아가 반론권의 본질과도 부합한다.¹³⁾

다른 한편 정간법에서 정정보도라는 문구를 쓰고 있는 조항은 제18조 제1항으로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임의적 중재대상으로 넣고 있는 것뿐이다. 그 규정 이외에는 정정보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당연히 그 의미는 민법의 불법행위의 특칙으로 인정되는 민법 제764조의 정당한 해석에 따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그와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분쟁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¹⁴⁾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사항으로 포함한 것은, 우리의 정간법이나 방송법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언론중재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며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그 분쟁을 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론권청구와 마찬가지로의 기간 내에 조기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피해자는 물론 방송사나 언론사도 포함한다)가 임의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독특하고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¹⁵⁾

12) 민사집행법 제309조는 가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것이다.

13) 다만 그 의미로서의 정정보도에 관하여는 반론보도와 다른 정정보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

14) 물론 이 청구에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15) 입법론으로는 일반인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와는 달리 언론사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분쟁 절차의 해결을 언론중재, 반론권소송의 제도로 흡수시키고, 그 소멸시효도 특별히 제한하는 특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신문이나 방송, 특히 방송의 속성(방송 내용을 장기간 모두 보관하는 것은 어렵고 불필요하다는 등), 인터넷 시대의 언론매체의 신속성과 다양하고 다량의 보도로 인하여 그 전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여 명예훼손된 경우에도 쉽사리 잊혀 지는 점, 언론의 자유신장과 기능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언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아 채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우리의 언론 환경과 대비하여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절한 처분의 하나로 인정되는 정정보도에 대하여도 독립적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정간법이나 방송법상의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나 법원의 가치분절차에 따른 심리결과 신속한 반론권을 통한 구제의 목적에 배치되지 아니하면서 언론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허위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단순히 다른 입장에서 본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근거를 들어 그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고 완전한 권리 구제와 신속한 권리 구제¹⁶⁾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게 되어 합리적이다.

결국 피해자의 이름으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기본법에 처음으로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당연히 인정되어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¹⁷⁾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의 경우 그 정정보도의 근거 법규는 민법 제764조가 아니라 정간법 제16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1항의 반론권 규정이다. 따라서 정간법이나 방송법에서 말하는 반론보도청구에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청구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되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실적으로도 언론보도의 대부분은 여러가지 사실적 주장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일부는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한 보도이고, 일부는 허위의 보도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반론보도를 구함에 있어 단순한 반론과 허위 보도의 정정을 함께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청구는 별개의 청구가 아니고 반론권으로서 하나의 청구이어서 병합이나 청구변경이니 하는 것은 맞지 아니한다. 이는 반론권 제도의 발상지인 프랑스나 독일, 나아가 오스트리아의 법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의 법적 성격과 의미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는 반론권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불법행위이론의 특칙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다. 즉 침해유형으로는 신문이나 방송 등 일반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에 한정하지 않는 등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침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반론권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인정되어 온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한 원상회복 방법의 하나인 민법

16) 그 경우에도 반론보도만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면, 당사자는 다시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권리의 불완전한 반쪽 구제에 그치고 다시 민법상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게 하는 것은 절차의 지연과 반복, 비용부담의 증가 등의 폐해를 당하게 된다.

17) 혹자는 이와 같은 태도가 반론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민사신청절차에 의한 경우 보도의 자유와 편집편성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을 들고 있다(안상운, 위 논문, 55쪽 이하). 그러나, 위 결정은 “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지 아니한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정정보도문이, 만약 이를 그대로 언론보도의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잡는다는 정정의 성격을 갖고 그와 같은 의미로 게재된다면 이는 보도의 자유와 편집, 편성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반론권의 내용으로서 정정권은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하여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정정을 명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양경승,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문제, 사법논집 28집, 1997. 217쪽도 같은 견해이다). 그리고 반론권의 가치분절차도 본안절차와 마찬가지로의 필요적 변론을 여는 것이고,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로 재판하는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가져 올 염려가 없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반론보도의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모든 정정보도청구가 반론보도청구의 소에 병합될 수 있다거나 그렇게 청구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반론보도청구의 소에서 정정보도도 허용된다고 하여 반론권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가 결코 반론보도와 대비될 수 있는 차원의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제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법률 용어를 붙인 바도 없다. 따라서 반론권 제도가 등장함에 따라 새삼스레 이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로 포장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다.¹⁸⁾ 다만 침해 주체나 방법 등이 언론의 사실적 보도로 인한 경우에 그에 관한 다툼을 법원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한다.

Ⅲ.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는 그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단일화하고,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확대하며, 종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고 명시하고 있다.¹⁹⁾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제14조 제2항), 정정보도청구의 소제기로 인하여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제26조 제4항),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비하여 현저히 짧은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제14조 제1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이 타당한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1.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관련된 규정 내용

언론중재법은 용어의 정의로 정정보도는 언론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제2조 제15, 제16호). 그리고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첫머리에 정정보도청구를 두어 그 요건과 행사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반론보도청구는 본질적 차이에 관한 약간의 차이를 담은 규정을 두

18)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492쪽 이하, 이진웅: 언론에 의한 법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재판자료77, 1997. 189쪽 이하에서도 반론청구와 대비되는 정정보도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 하고,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의 경우는 별도로 취급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도 필자와 같은 입장을 전제한 것으로 보여 진다.

19) 2005. 1. 27.자 「관보」 등 참조. 그와 함께 방송보도에 관한 반론보도 등의 규정인 방송법 제91조와 반론보도 등의 방송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5호가 삭제되었다. 또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그 법률의 명칭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언론 침해에 대한 구제 규정인 반론보도 등에 관한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 제6호로 뉴스통신도 언론에 포함시키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면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뉴스통신으로 인하여 침해를 받은 자에 대한 구제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뉴스통신으로 인한 피해구제도 언론중재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였다.

고 있을 뿐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이 다른 점은 권리행사요건에서 전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 후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는 차이 뿐이다. 즉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보도내용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같은데 반론보도청구권에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한다는 내용만이 다르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제14조 제3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나 판례상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인정되어 온 원칙을 정정보도청구에 반영하고, 이 규정도 동일하게 반론보도청구에도 준용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²⁰⁾ 또한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소송계속 중 상호간의 변경을 할 수 있고(제26조 제2항),²¹⁾ 그 소 제기는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제26조 제4항), 법원은 그 소 제기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가. 반론권 제도에 포섭되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허위보도의 정정을 구하는 권리라는 견해

이 견해는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청구권을 도입한 것은 반론권 제도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법적으로 개념화하여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에 당연히 포섭되는 것이다.²²⁾

그 근거로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다같이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보도내용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언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의 보도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만 차이를 둘 뿐인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언론사의 정정보도의 방법이나 그 거부사유가 반론보도의 그것과 동일하고(제15조 제4항, 5항, 6항),²³⁾ 정정보도에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만이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 그 해명도 할 수 있는 점(제15조 제5항) 등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느냐 허위 보도임을 전제로 하느냐라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모두 같은 점 등도 간접적 근거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의 논거가 다소 부족하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위 위헌결정에서 정정보도는 언론사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런 유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의 당연한 것을

20) 그러나 반론보도청구를 넘어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도 확대하여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가 민법 제764조의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양 제도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이론상 전혀 다른 제도라 적어도 법이론상으로는 별 무리는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거의 같은 구실을 할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그 타당성에 의문이 남는다.

21) 더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조정신청시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신청까지 허용하고 있어(제18조 제2항) 형식상으로는 그 손해배상조정에도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보도내용의 위법성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22) 해당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함.

23) 특히 정정보도 거부사유 중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는 피해자만이 구할 수 있는 사유이다.

입법화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²⁴⁾ 언론중재법상으로도 정정보도문의 게재나 방송 의무자가 언론사이고(제15조 제3항),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5조 제5항, 제6항), 정정보도의 통상적 의미는 오보 또는 허위 보도한 해당 언론사가 자기 이름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보도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²⁵⁾

나.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와 유사한 권리라는 견해

이 견해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행사요건에 있어 언론사에게 허위보도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고,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에 따른 정정보도문의 게재나 방송의 주체, 방법, 내용, 효과 등 그 실질적 사항 등이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절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에 관한 그것과 같은 점을 그 근거로 한다.

이 견해는 언론사가 위법성조각사유를 전혀 항변할 수 없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관하여 허위보도가 아님을 적극 주장할 것이고, 그에 따른 판단이 결정적이어서 사실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절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에서의 위법성 존부의 판단에 관한 것보다 더 치열해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도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

예회복에 적절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와 같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취지와 상응하는 이점이 있다.²⁶⁾

그러나 이 견해도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명백히 어긋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제14조 제2항), 정정보도청구의 소제기로 인하여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제26조 제4항),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비하여 현저히 짧은 제소기간을 둔 규정(제14조 제1항)으로 보아 다르기 어렵다.

다. 언론중재법상 특별히 창설된 새로운 권리라고 보는 견해

이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서 밝힌 것이다. 그 근거로는 당연히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제14조 제2항), 정정보도청구의 소제기로 인하여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제26조 제4항),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비하여 현저히 짧은 제소기간을 둔 규정(제14조 제1항)을 들고 있다. 그밖에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문의 게재나 방송 의무자가 언론사이고(제15조 제3항),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5조 제5항, 제6항), 오보 또는 허위 보도한 해당 언론사가 자기 이름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보도한다는 정정보도

24)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제도도 반론보도청구권을 기본적 권리로 먼저 규정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을 보완적으로 실시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언론중재법은 완전히 반대로 규정하고 있다.

25) 필자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전에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적은 있으나(언론중재 2005년 불호, 새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는 언론중재법의 문제되는 여러 조항을 합천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따라서 이후로는 더 이상 위 견해가 유지될 근거가 상실되었다.

26) 물론 이에 관하여는 입증의 정도만을 소명이 아닌 증명으로 하면 족하고 다른 점은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위 결정의 취지라는 견해가 있을 수는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뒤에서 상론한다.

의 통상적 의미와 정정보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이나 법원 등의 그간의 관행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나 언론중재법상의 위와 같은 규정이나 정정보도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로 보아 이 견해가 타당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견해에 따를 경우에도 이러한 정정보도 청구권을 법률상 제도로 창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재판절차상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남는다.

IV.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절차적 의의

1.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제도 창설의 필요성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 관련하여 입법자가 언론자유와 언론 피해구제의 적절한 조화를 위하여,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에 중점을 두어 입법화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²⁷⁾ 즉 허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

실하지 않은 한, 피해자는 언론주체의 주관적 귀책 사유의 존부는 묻지 않고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논거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1) 허위의 신문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신문사 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신문보도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가 그러한 심각한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이 필요하고, 이에 적합한 구제책은 신문사나 신문기자 개인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니라,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의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추궁과 별도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²⁸⁾

(2) 진실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못지않은 강한 정의의 요구이므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 한,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진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27)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은 정정보도로 인하여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신문의 자유와 진실에 부합한 정정보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피해구제의 이익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28) 이러한 경우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 반론보도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대당사자의 반박을 강제함으로써 형평을 유지하는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이미 행하여진 허위보도를 진실에 부합하게 교정하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내용이나 행사방법에 있어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일정한 경우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하고 있고, 제소기간도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정보도의 방법도 동일 지면에 동일 크기로 보도문을 내도록 하여 원래의 보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고 있지도 않다(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제6항).

나. 헌법재판소 견해의 타당성 여부

(1)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창설 필요성 여부

평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그 논리는 지극히 정당해 보여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이라는 정의를 위해 그간 허위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억눌린 고통을 어루만져준 진일보한 획기적인 법적 장치로 추앙될 기념비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으로 돌아와 보건대,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창설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서 우려하는 부정의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 그동안 비밀비재하게

일어났던가? 즉 명백히 허위의 보도임이 입증되었는데도 그 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언론사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으로 허위의 언론보도의 계속적 전파로 심각한 피해상황에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하고 망연자실해야 하는 부정의가 일어났는가? 구체적으로 명백히 허위보도라고 판명된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으로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례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실증적 연구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그간 언론보도에 따른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우리의 판례를 보아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도의 허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위법성은 물론,²⁹⁾ 언론사의 과실도 거의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그 판단의 중점은 위법성조각사유(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의 인정여부 그중에서도 상당성 판단에 치중하여 왔다. 이는 대부분의 언론보도로 인한 소송에서 쌍방이 보도의 허위성이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이어서 언론사측에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성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어 온 것임을 방증해 주고 있다.³⁰⁾

29) 인격권 침해, 특히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존재만으로 그 보도의 허위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성이 곧바로 추단되는 듯한 실시를 한 판결도 많다. 즉 보도의 진실성은 보도의 공공성과 함께 위법성조각사유이므로 피고인 언론사측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에 선 설시라 보인다. 그러나 명예훼손 침해행위로 이익형량 없이 위법성을 추단할 수는 없다. 이익의 비교와 가치의 형량에 관하여 우리나라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그 비교 및 형량의 3대 기준이 바로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이라고 볼 수 있다.

30) 상당성 판단이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보기보다는 언론사측의 과실 판단요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세한 논거는 전원달,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69-71쪽 참조.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a)기사의 성격, (b)정보원의 신빙성, (c)사실확인 의 용이성, (d)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2)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상당성 준비의 판단은, 위 (a), (b), (c), (d)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러한 사정들의 한계 내에서, (1) 조사의무를 다하였는가, (2) 그 조사결과에서 결론에 이르는 추론이 합리적인가를 결정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즉 (1) 사실조사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와 (2) 추론작업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주의의무 위반 유무, 즉 과실 유무의 판단이다. 그러나 그 과실이 명예훼손행위 전체에 대한 고의·과실은 아니다.

더구나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관하여는 허위보도라는 입증책임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런데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보도한 때로부터 6개월 내, 보도를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제기 시로부터 3개월 내에 1심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7조 제1항). 더구나 언론중재위에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인 것이고 그것도 신속히 조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제20조). 따라서 허위보도라는 입증은 보도당시나 그에 근접한 시점에서 쌍방이 접근가능한 자료를 통해 쉽게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오랜 시일이 지나거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의 판단이 개입된 후에 허위보도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부분 사후보도청구권이나 이에 준하는 제도로 불법행위법에 의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고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따른 분쟁해결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허위보도로 인정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허위보도이거나 피해자가 가진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당해 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위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명백한 오보임이 분명하거나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준하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일응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러한 경우에도 위법성조각사유, 특히 상당성을 인정하여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지 않거나 소송을 지나치게 오래 끈 경우는 없

을 것이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해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경우를 예상하여 입법으로 위법성조각사유를 일체 배제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제도라는 새로운 혁신적 제도를 창설할 것은 아니다. 이런 유형의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³¹⁾

(2) 보도의 허위성 입증을 둘러싼 불만 증대 가능성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보도의 허위성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그 쟁송도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허위보도라는 입증은 그리 간단하지 아니하다. 허위보도임이 누구에게나 명백한 경우라면, 언론사가 서둘러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통례일 것이다. 때로는 보도당시에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되었으나 후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추적보도가 이루어져 자연스레 앞서 잘못된 보도가 정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보도 행태이다. 민주사회에서 어느 언론사가 명백히 허위보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고 우기는 객기와 어리석음을 범할 것인가? 그럴 만용을 가진 언론사는 민주사회에서 설 땅을 잃어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다.

쟁송으로 다투어질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서로 자신의 주장사실이 진실이거나 그에 가깝다고 침례하게 대립하는 경우이고, 그 경우에 그 보도의 허위성 입증방법은 소극적 사실이든 적극적 사실이든 간접

31) 독일의 경우 언론의 사실주장이 허위의 것으로 입증되고 인격권 또는 기업권이 침해되면 언론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언론보도로 인해 초래된 부담적 결과의 제거를 요구하는 결과제거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방법으로, 보도의 철회, 교정, 보완 등을 들 수 있으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당초 보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도 해당 언론사의 자체 판단으로 자연스레 정정되도록 맡기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여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황 등을 통하여 할 수밖에 없다.³²⁾ 그런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목적과 재판기간 제한 규정과도 어긋난다. 또한 보도의 진실성과 허위성에 대한 입증 판단에 관하여 쌍방의 불만이 증폭될 것이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창설되어도 여전히 정의가 바로 서게 된다고 속단할 수 없다. 오히려 이해관계인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보도의 진실 여부에 대한 신속한 법원의 판단에 불만이 더 증폭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관하여 한정된 입증자료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후에 집적된 충분한 자료나 추가적으로 진실이 밝혀진 경우에 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큰 침해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3) 피해자에게 유리할 게 거의 없다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가장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해당 언론보도의 허위성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 결정에서도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보도의 허위성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보도의 허위성 입증은 수사기관의 조직적이고 방대한 수사를 통하여서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물며 피해자가 스스로 그 입증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더구나 짧은 기간 내에 제한된 방법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언론보도의 허위성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있는 한 획기적이라고 주장하는 정정보도청구제도의 창설로도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유리할 게 거의 없다. 다만 언론사로부터 보도에 있어 보다 신중한 태도로 사실 확인

작업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의의가 있을 것이다.

(4) 보도의 주체, 대상, 내용 등의 구별 없이 위법성 고의·과실을 배제한 조치의 타당성 여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그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포함)이나 고의·과실 판단을 함에 있어 보도의 주체(언론사의 성격 여하), 대상(공적 인물인지 여부와 그 정도), 내용(공적 관심사인지, 비공적 관심사인지), 피침해 이익의 내용(일반적 명예에 관한 것인지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 등에 따라 판단기준을 달리하여 온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그런데 이 같은 판례 준칙을 대부분 배제하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하여 특칙으로 허위보도인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이나 피침해이익의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정정보도를 하게 함은 판례의 입장에 어긋난 것일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이 허위성의 입증에 쌍방이 수급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하게 판단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런 경우란 극히 드물 것이다.

(5)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 판단의 의문점

한편, 헌법재판소가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

즉 언론중재법의 시행 전에는 비록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고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의·과실과 위법성

32) 명예훼손 불법행위에서 문제되는 과실, 진실 같은 개념들의 입증은 대체로 다양한 간접사실의 종합으로 증명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인정되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언론사로서는 정정보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부칙 조항 중 본문부분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과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심리절차(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에 관하여 언론중재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언론사의 중전의 법적 지위가 새로이 변경되어,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새로이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진정 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단의 사정도 이 조항들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이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³³⁾ 차라리 정정보도청구권 창설의 당위성 근거, 즉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 한,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진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근거를 들어 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하거나, 소수의견이 밝힌 대로 허위보도 자체는 보도와 동시에 완료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보도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확산되는 것이므로, 언론중재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함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판례의 중요성 증대³⁴⁾

앞으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법원의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허위성 인정 판단에 관심과 불만이 집중될 것이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것은 법원의 몫으로, 그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새로 창설된 정정보도청구권이 형해화 될 수도 있고 언론자유 침해라는 소용돌이에 다시 휩쓸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우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소 제기 3개월 내에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두 세 기일 내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보도의 허위성,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을 구할 이익의 존부, 손해배상의 수액 등의 판단이나 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마무리하여 그 상태에서 신속한 판단을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예외적인 조치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중재법 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는 가처분 절차로,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본안의 통상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나 소의 병합이나 소의

33) 나아가 언론중재법 제31조 후문은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명예훼손에 관하여 재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헌이라는 판단도 그 결론은 타당하지만, 법체계상이나 논리상으로도 지극히 부자연스럽다.

34) 아울러 민법 제764조에 따른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에서 우리나라 판례가 그간 공공성요건의 판단에서 표현의 완화 외에는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나아가 공공문제에 관한 발언과 비공공문제에 관한 발언의 보호 정도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여지도 있다) 사실상 형해화된 점을 반성하여야 한다. 명예훼손 성립부정의 근거로서 운위되는 공공성이란 그 민주사회 구성원 각각의 공동복지를 위한 공공정책 결정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이고 왜 공공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원렬, 위 박사학위 논문 참조.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조기에 분쟁해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자료 제출을 위한 기일 연기 등을 허용하지 말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 등을 중심으로 바로 하급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기일이 촉박하여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밖에 없고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소송 진행과 결론에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수정 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 한하는지, 일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모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부문의 보도와 비공공부문에 관한 보도에 있어 그 보도의 허위성 인정의 정도에 관련된 법적 확신에 실질적 차이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하여 정할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법리 수립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언론중재법에 새로운 성격의 정정보도청구 제도가 창설됨으로 인하여 그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가름할 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어, 이를 담당하는 법관 모두가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V.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처리방법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미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일의적으로 확정짓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제26조 6항 본문 전단은 정정보도 등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른다는 것인데,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배제한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관하여는 가처분절차에 따른 재판할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 가처분절차에 관한 다른 관련조항이나 병합청구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위 결정의 심판대상도 되지 않았으나, 합헌이라고 보아야 하거나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게 아닌가 등의 의문이 남는다.

법원으로서의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르고 있던 종전의 절차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본안소송절차에 따를 것인지, 두 경우에 있어 어느 정도의 특례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반론보도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나아가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와 병합할 수 있는 지 등이 문제된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가. 결정 주문의 내용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위헌이다.

나. 결정 이유의 내용(가처분절차 적용의 문제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소명만으로 인용하고 언론사에게 충분한 증거제출이나 방어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소명으로 임시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증명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고 별도의 본안소송이 따로 없어 가처분절차에서 소명에 의하여 임시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증명을 통하여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 결국 통상의 소송과 똑같은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하여,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특히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다.³⁵⁾

- (2) 가집행선고나 확정 없이 즉시 집행력이 생기게 한 것도 문제다.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확정이나 가집행선고도 필요 없으며 그에 대한 불복은 항소밖에 없다(언론중재법 제28조 제1항)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집행정지는 예외적인 조치일 따름이다.

- (3)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사에 주는 부담이 크다.

정정보도청구는 보도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그 소송절차에서 확정하고 언론사의 이름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므로 언론사의 공신력과 명예에 손상이 오고, 사실인정 문제가 반론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 비하여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³⁶⁾

- (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처분절차에 따라 소명만으로 인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론사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다.

언론사가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진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확보하지 못하는 한 사실 주장에 관한 보도를 주저하게 되고,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하여 진위가 불명확하거나 신속하게 법정에서 방어할 자원이 없는 경우, 그 보도를 편집에서 배제하도록 작용하는 등 언론의 위축효과로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이 저하된다는 피해가 발생한다.

3. 가능한 몇 가지 견해

35)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2005. 7. 13. 대법원규칙 제1951호)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가처분사건은 필요적으로 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고(제3조), 담보제공으로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내지 제4항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제3조 제4항),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재판에는 가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309조를 따르도록 하여(제4조 제1항) 문제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 문제가 소멸될 수는 없다.

36)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박권이어서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종전 입장을 바꿀 필요 없이 지면만 할애해 주면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이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되어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와 같이 언론사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언론사에게 부당하게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가. 민사소송법상의 본안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

결정의 주문에 따르면, 정정보도의 소에 관하여 제26조 6항 본문 전단에 의해 민사집행법상 가치분 절차에 따른 것을 위헌이라 한 것이므로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관하여는 가치분절차에 따른 재판을 할 근거의 기초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파생적이거나 부수적인 가치분절차의 개별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³⁷⁾

헌재결정은 위헌제청 또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법률조항에 관하여만 판단하므로, 형식적으로만 보면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관련 법률 조항에 관하여는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위헌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배치되는 관련 규정도 사실상 위헌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위 헌재결정 이유에 따르면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 전체가 아니라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 중 입증의 정도와 관련하여 “증명”이 아니라 “소명”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만 위헌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선고와 동시에 생기는 즉시집행력 등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소명과 즉시집행력에 관한 조항을 배제하고 필요적 변론과 항소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살려두는 것은 가처분제도로서 실질적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가처분제도의 규정 중 정정보도청구와 성질상 맞지 않지 않는 수 개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조항(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단서 등)도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도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본안소송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주장입증하게 되는데, 보도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절차는 진실성 입증에 준하거나 상당성 입증보다는 더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함은 보도의 진실성과 허위성의 본질적 성격에 의하여 당연하다.

그리하여 정정보도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당연히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할 것이다. 정정보도 인용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와 관련하여 허용한다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정하는 입장과 긍정하는 입장으로 갈라질 수 있으나, 긍정하는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³⁸⁾

한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청구의 병합과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와는 별개의 관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즉 정정보도청구라는 본안 소송절차에서 반론보도청구라는 가처분절차에 따른 소송절차를 병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는 법률로 해결할 것이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핀다.

나.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

위헌결정의 이유는,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 전체가 아니라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 중 입증의 정도와 관련하여 “증명”이 아니라 “소명”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만 위헌 판단을 하였으므로, 위헌결

37)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참고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가처분절차가 아닌 본안소송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사실의 인정을 소명이 아닌 증명에 의하도록 하며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선고를 붙이도록 하고(제28조) 나아가 법원으로 하여금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제30조) 언론피해구제법안의 타당성도 들고 있다.

38) 그 다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입법적으로 언론중재법 등에 명문의 규정을 둬야 타당하다.

정은 입증의 정도와 관련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견해에도 정정보도를 인용하는 판결이 가집행선고나 확정 없이 즉시집행력이 생기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라질 수 있다. 즉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한 것이지 위헌이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선고만으로 집행력이 발생한다는 입장과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후자의 입장에 서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임으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의 병합이나 변경의 문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청구의 병합과 변경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은 앞서 본 바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다른 별개의 관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즉 정정보도청구라는 본안 소송절차에서 반론보도청구라는 가치분절차에 따른 소송절차를 병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는 법률의 해석으로 해결할 것이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가치분절차에 따른다는 견해를 취하면 소의 병합이나 변경이 자유로이 허용됨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에서는, 이에 관하여는 두 가지 견해로 갈라질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의 소의 병합이나 변경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견해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견해이다.

(1) 청구의 병합과 변경을 허용하는 견해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론청구에 관한 가치분절차를 포기하고 통상의 본안소송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을 그 근거규정이라고 본다.³⁹⁾ 그 경우 반론보도에 관하여는 입증의 정도는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 된다고 한다.

(2) 청구의 병합과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견해

본안소송절차와 가치분절차는 본질적 성질을 달리함으로⁴⁰⁾ 소의 병합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반론보도청구의 소의 병합을 허용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특별히 허용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분절차에 따랐기 때문으로 보아 이번 현재의 결정으로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본다.⁴¹⁾ 그 근거로 그밖에 본안소송절차를 따르는 손해배상청구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와 조정이나 중재절차에서는 병합이나 변경이 허용되나(언론중재법 제18조 제6항) 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함(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과 구(舊)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2005. 7. 13. 규칙 제1951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반론보도청구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병합이 아닌 병행심리의 방법에 의하여 동시에 진행하고 입증의 용이성과 구제의 신속성이 강한

39) 김윤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32쪽 참조.

40)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변론을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 23232 판결).

41) 한위수,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 2006년 겨울호, 14-15쪽 참조.

반론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 먼저 판결, 선고함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한편 이 견해에서도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모두 본안소송절차로 하도록 하여 병합이나 변경이 자유롭게 하되, 입증의 정도를 증명과 소명으로 이분화하는 입법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3) 필자의 견해

정정보도의 소와 반론보도의 소라는 두 소송은 언론이라는 매체의 보도에 따른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그 매체가 다른 매체와 달리 신속성, 공익성, 중립성, 객관성이 요구되는 정도가 강하고 비판과 감시라는 역할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도 그 존재기반으로 하는 특성 등을 가진 점을 고려하면 다른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등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강하다. 그리하여, 정정보도의 소와 반론보도의 소를 특별한 규정을 두어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1회에 의한 중구적 해결, 심리와 해결 방법의 특수성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이 정정보도의 소를 반론보도의 소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절차에 따른다는 전제 하에서 마련된 것은 맞지만, 반드시 그 전제를 필연적인 조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그 규정을 병합 가능의 근거규정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동일한 언론보도에 관하여 보도의 내용이 다양한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요한다고 볼 보도부분과 반론보도를 요한다고 볼 보도부분이 복합적으로 또는 중첩되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정정보도의 소와 반론보도의 소를 시기를 달리하여 이 중으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 소는 동시에 제기되고 동시에 해결됨이 바람직하다. 즉 동일한 언론보

도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신속히 해결함이 바람직하고 언론중재법이 두 청구권을 모두 둔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신설된 정정보도의 소는 보도의 위법성, 언론사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재판기간도 3개월로 규정된 점 등에서 민법 제764조에 의한 다른 정정보도의 소와 다르고 반론보도의 소와 유사한 측면도 있다는 점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가처분절차와 통상의 본안소송절차는 본질적 성질을 달리함으로 소의 병합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소송의 원칙이고 그러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특별한 법률의 규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그 근거규정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만 청구의 병합이나 변경이 절차 지연을 초래해서는 안 되므로, 그 경우에는 청구의 병합이나 변경을 불허함이 타당하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정보도청구로 변경하는 경우나 반론보도청구에 정정보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나 병합신청시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단기간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라는 제소요건이 요구된다(그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정정보도청구는 그 성질상 당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소송에 관하여는 반론보도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종래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정정보도 소송이 다른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보다도 더 오랜 시일을 끌던 재판관행을 답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론보도청구에 따라 가처분절차로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가 병합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새로운 본안소송의 사건번호를 붙여 본안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

고,⁴²⁾ 그 반대의 경우, 즉 정정보도청구로 본안소송 절차로 소송계속 중 반론보도로 청구를 병합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절차의 변경 없이 본안소송으로 진행함이 타당하다.⁴³⁾ 다만 후자 중 반론보도로 소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건번호 부여 필요 없이 종전의 정정보도청구의 본안사건번호를 그대로 이어받으면 충분하다고 본다.⁴⁴⁾

4.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처리방법

따라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본안재판으로 하고,⁴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선고를 붙임이 타당하며,⁴⁶⁾ 필요한 경우 간접강제를 명할 수도 있다. 또한 소의 병합이나 변경에 관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 근거는 위에서 상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나 그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의 소나 손해배상소송을 병합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그 제도 취지가 서로 다르고, 심리내용이나 방법이 현저하게

다르며, 소송절차지연의 우려가 농후하므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타당하다. 다만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소를 변경하는 것은 소송절차지연의 우려가 없으므로 허용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병합은 허용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⁴⁷⁾

VI. 글 마무리

이상으로 언론중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법원에서의 재판처리절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어차피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마당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절차와 유사한 보전처분절차에 준용하여 심리하는 것으로 그 소의 성질을 전제해 두고, 단지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변론절차를 열어 판결로써 결론을 내리고, 그 불복절차도 상소의 절차를 따르며, 집행절차에서도 임시절차인 가처분절차에 따를 경우 맞지 아니하게 되는 조항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을 두는 등⁴⁸⁾ 복잡성⁴⁹⁾을 과감히 던

42) 병합의 경우 남은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입증의 정도는 소명으로 충분하고 그 인용 판결시 주의적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43) 마찬가지로 병합이나 변경된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입증의 정도는 소명으로 충분하다.

44) 병합된 경우에는 추가된 반론보도의 소에 관하여 가처분 사건번호 부여가 필요하다.

45)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신청사건으로 접수된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재배당절차를 통하여 민사본안 사건의 형식을 부여함이 타당함.

46) 종래의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도 인용판결에 가집행을 붙여 왔다. 그리고 이 판결 선고 후(또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00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주문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경우에는 주문의 내용상 당연히 가집행을 붙임이 적절하다.

47) 한편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 다과의 차이는 있지만 현행 정정보도 등 사건 처리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아직 모범이 고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대법원규칙만을 먼저 고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 바뀌는 내용과 방향에 따라 그 이후에 적절하게 규칙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48) 정정보도 등에 관하여 그 다툼을 신속히 해결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의 소송절차가 아닌 보전처분절차를 따르게 하되, 정정보도청구 등의 성질상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규정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면이 있어 배제 조항을 특별히 많이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49) 그 복잡성은 대법원규칙인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에서 집행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두게 되는 복잡한 구조로 이어진다.

저버리길 요구한다.

그간 필자가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우선 정정보도 등에 관한 다툼이 통상의 민사쟁송과 성질상 본질적으로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권리구제의 신속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보전처분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절대적 명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 등에 관하여 권리의 신속 구제는 특별 전담재판부를 두고 사건 접수 후 바로 기록을 파악한 뒤 최대한 빨리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넣고 쌍방에 대하여 즉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증거조사에 협조하게 하는 등 담당재판부의 적극적인 조기

처리 방식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에 관하여 굳이 민사소송법의 변론이나 불복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거나, 민사집행법의 준용이나 예외조항 등을 두는 등의 복잡한 법률적 구성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는 다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특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⁰⁾ 아무쪼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의미를 되새김질하여,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반론권 제도와 언론중재제도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정보도제도를 도입할 것을 기대한다. □

50) 반론권 제도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가 반론보도청구에 관여하는 우리처럼 언론중재위원회라는 특수한 중재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통상심리절차와는 다른 급속심리절차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의 가치분절차와 유사한 점은 있지만 반드시 동일한 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선거보도관련 피해구제 시스템 개선 방안

-조정신청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진아 · 조준원 · 최승민¹⁾

I. 문제제기

현대 선거는 미디어 선거로 대변된다. 정당과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이성적 정보를 제공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보다는 후보의 감성적 이미지 전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으나 미디어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미디어 선거의 핵심은 공정성에 있다. 특히 선거의 불공정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 여부의 핵심은 바로 언론이라 할 수 있다. 불공정 시비의 중심에는 언론의 편파보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기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재 현장의 기자들 스스로 최근 제17대 대통령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벌써부터 일부 경제지의 특정 대통령 후보 편들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듯이³⁾, 선거 문화에서 언론의 편파 보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접어두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거보도의 공정성이 여전히 주요한 사회

적 과제로 남아 있고, 선거 결과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틀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보도에 관한 미디어 규제 방안이 순차적으로 법에 반영된 것이 지금의 공직선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의 언론 관련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공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부여한 조항(공직선거법 제8조)이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의 목적도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 외에 공직선거법 언론 관련 조항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선거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조항들이다. 선거 관련 보도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1997년 1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에 반론권에 대한 특칙 조항이 명문화된 것이 그 시발점으로 보인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1) 이 글은 언론중재위원회 내 언론법연구회인 'MEDIA&LAW' 소속 회원들이 작성했음.

2) 「기자협회보」, 2007년 8월 15일자, "기자 61%, '대선보도 불공정'"

3) 「기자협회보」, 2007년 9월 4일자, "경제지, 이명박 후보 편들기 지나치다"

경우 48시간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여, 당시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처리시한을 대폭 앞당겼다.

선거 관련 보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칙의 필요성은 선거 관련 보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데 있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하여 보도된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이 선거일 이후로 미루어진다면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보도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반론권 제도의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직선거법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후 관련 규정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구를 방송에 이어 정기간행물, 인터넷언론 등 매체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등 변화를 겪어왔지만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다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등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인정할 만큼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어느 정도나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선거보도피해 양상을 진단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이 글은 선거보도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의 운용 실태를 진단하고, 선거보도 관련 피해구제를 요청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에 국한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 각 매체별로 두고 있는 심의기구를 통해 반론권을 비롯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선거보도는 비단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도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 친지, 운동원 등에 관한 보도나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다른 정치인에 관한 보도 역시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또한 후보자의 가족이나 지근거리에 있는 자에 관한 보도가 선거 결과를 좌우했던 경험이 있고, 이러한 보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등에 한정하여 반론보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피해구제 사례보다, 그 권한행사의 폭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로 넓게 규정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사례가 보다 풍부하리라 판단되어 선거보도 관련 조정신청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⁴⁾ 각 매체별 심의기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의신청한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고 그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선거보도 관련 언론조정신청사례 현황 및 선거보도 피해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선거보도 관련 조정신청인의 유형 및 조정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선거보도 관련 현행 법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4)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구는 매체별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으로 구별되어 있다. 2004년 이후 각 매체별 심의 기구에서 처리한 후보자 등이 신청한 시정요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풀기 위해 2000년 이후 운영되었던 선거보도심의기구(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⁵⁾) 활동 기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처리된 선거보도 관련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내용분석과 문헌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2000년 이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대해 설치·운영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처리된 선거보도 관련 조정신청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⁶⁾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되어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해당 선거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 2. 25.~2000. 5. 13.)
-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2. 14.~2002. 7. 13.)
-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2002. 8. 21.~2003. 1. 18.)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3. 12. 17.~2004. 5. 15.)
-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 1. 31.~2006. 6. 30.)

위 기간에 해당하는 선거보도 관련 조정신청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고, 조사대상 사건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선거보도 관련 조정신청사건은 신청을 누갔는지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보도내용의 선거 관련성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III. 현행 선거보도 관련 피해구제제도 진단

1. 선거보도의 정의

선거보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법문에는 명확히 규정된 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 선거기사, 선거보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미는 찾을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에서 언론사는 “정당의 정당·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선거보도의 영역을 간접적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 및 구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선거보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선거보도의 개념을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는 연구문헌 또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선거보도의 보도 추이 패턴을 연구한 결과⁷⁾에 따르면, 선거보도 흐름에 있어서 차별성을 보이는 주요 시점은 선거대책기구 정비, 즉 각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설치, 운영되었으며, 상설기구이다.

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이지만, 조사대상의 일관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에 맞춰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조정신청사건으로 선정하였다.

7) 백선기, “한국신문의 선거보도 경향과 심층구조”, 한국언론학보 제39호(1996 겨울), pp.135~138.

가 발족하는 시기, 공천자·전국구 입후보자 발표 시기, 법정선거일, 투표당일로 구분한다. 각 정당이 선거대책기구를 발족하기 전까지는 지역별로 ‘관세분석’이란 이름으로 입후보자들의 소개 및 동정, 그들 사이의 우열에 대해 평가한다. 그 후 각 정당의 선거대책기구가 정비되고 정당별로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지면 지역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당별 대책에 보다 깊은 주목을 하고 정당 대표자나 책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시기부터 전체 기사량에서 선거관련 보도의 비중이 점차 증대된다고 분석하였다.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각 정당의 공천자가 발표되는 시기로 공천과 관련하여 공천현금 수수나 공천관련 비리 등이 폭로되고 공천과정을 둘러싼 실력자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기와 예상기사가들이 난무한다.

그러다 법정선거일이 공포되면 지역구 유세장에서 벌어지는 입후보자들의 발언이나 유세관련 사항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입후보자들 사이의 공격이나 상호비방과 관련한 부정적 언사들이 지상중계 방식으로 게재된다. 선거부정에 관한 사항들, 이른바 금권선거, 관권선거, 부정선거 등에 주목하고 폭로, 고발하는 기사가 주를 이룬다.

선거 당일 전날까지 이러한 보도경향은 지속되고 각종 폭로와 입후보자들 사이의 음해와 비방이 끊임 없이 게재되다가, 선거 당일에는 유권자들의 투표행위 및 투표율에 주목하고 선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보다는 선거의 공명성을 강조하는 보도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방송의 선거보도 내용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선거 관련 보도를 “선거유세관련 보도, 정책 및 쟁점 공방, 선거감시

활동 및 공명선거캠페인, 선거에 대한 종합보도나 전체적인 추세보도, 선거사무, 선거법 위반·선거 관련 고소·불법선거, 선거운동전략이나 선거활동 소개·비교, 선거에 대한 여론 동향 및 유권자 반응, 선거관세 분석, 정당의 주요정책 소개·비교”로 나누고 있다.⁸⁾

김기중은 “선거보도란 선거가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선거참여자, 특히 정당, 정당관계자,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와 그 관계인에 대해 보도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조직과 형태를 갖춘 기관은 물론이고 개인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도(정보의 제공)”라 정의하였다.⁹⁾ 즉 언론사는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정당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에서 이뤄지는 보도까지 선거보도의 영역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선거보도의 개념을 그 시기와 내용, 정보발신자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으로 선거보도에 관해 비교적 명확한 개념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거보도는 통상적으로 “선거에 관한” 보도를 의미한다. “선거에 관한 보도”는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보도의 영역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선거 시기에 선거와 비(非)선거를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사실상 대부분의 사회적 담론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¹⁰⁾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선거보도란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와 관련,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 그리고 그 가족, 관계인 및 정당 등에 관하여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언론사가 제공하는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사”로 정의하고자 한다.

8) 황근, “텔레비전의 선거보도에 비추어진 지역정치 특성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쟁점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6-4호, 한국언론학회, 2002 가을.

9) 김기중, “관결에 나타난 선거보도의 문제점”, 『언론중재』 2002 봄호, p.28.

10) 김영석 외, 『인터넷 언론과 법』, 한국언론재단, 2004, p.44.

2. 선거보도피해구제 관련 현행 법규 비판적 검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로써 여러 가지 규제책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1994년 3월 16일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을 통합해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994년 제정된 이래 가장 최근인 2007년 6월 1일까지 선거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개정이 거듭되어 왔다. 이 가운데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규제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의 연혁을 살펴보고, 과연 현행 선거법이 후보자의 피해구제에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1)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선거법 연혁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선거보도에 관한 조항은 방송·신문·통신·잡지 및 기타 간행물 등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¹¹⁾가 유일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조항이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단순한 선언적 조항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1997년 11월 14일 개정 법령에서 선거방송보도에 대한 심의기구로 방송위원회 산하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과 함께 신설된 반론

보도청구권에 대한 특칙조항은 선거보도로 인한 후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¹²⁾

언론의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으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에 대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는 특칙조항을 만들어 방송일 또는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방송사 및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하면 협의를 통해 방송은 24시간 이내에, 정기간행물은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했다. 당사자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방송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로 지체 없이 회부하고, 48시간 이내에 심의·결정하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처리기한이 14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보도의 처리시한을 상당한 수준으로 단축했다는 점에 있어서 가히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매체별 반론보도청구 소관 심의기구가 다른 점에 대해, 방송의 경우 일반 사건에 대한 반론권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선거보도에 관한 조정신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이중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데다,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법적인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의 관할기관은 언론중재위원회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¹³⁾

11)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답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12) 일부에서는 반론보도청구를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문재완, "선거방송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점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18권 2호, 2006) 반론권 제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됨이 타당하다.

13) 성낙인, "언론관련 선거법제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세계의 언론법제, 2002년, p.23.

〈표 1〉 선거보도 피해구제 관련 선거법 주요 개정 연혁

개정 시기	신설 및 개정조항	개 정 내 용
1997. 11. 14.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선거방송에 대한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 까지 방송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후보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제8조의3 (방송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자는 그 방송이 있음을 안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방송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결정함.
	제8조의4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자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회부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심의·결정함.
2000. 2. 16.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정기간행물에 의한 선거기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 조항 준용.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선거일전 90일부터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방송사 및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 회부하고 각 심의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심의·결정함.
2002. 3. 7.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선거일전 90일부터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위 기간 내에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004. 3. 12.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인터넷 언론에 의한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제8조의6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등)	-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공표 인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왜곡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 또는 정당은 공표 인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즉시 회부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결정함.

이후 2000년 2월 16일 법령개정으로 정기간행물 선거기사 심의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선거법 특칙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절차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48시간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늘어났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조항을 준용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 3월 7일 개정 법령에서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중앙당’에 한함)으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반론보도를 통한 피해구제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켰다.

2004년 3월 12일에는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표 인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나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 기간이나 심의위원회에서의 처리시한 등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2) 선거법상 피해구제조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앞서 살펴봤듯이, 공직선거법에는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절차와는 별도로 방송·정기간행물·인터넷언론 등 각 매체별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선거일전 90일부터¹⁴⁾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보자 및 정당은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단, 보도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할 수 없음)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사와의 협의가 48시간 이내에(인터넷 언론사는 12시간 이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각 소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용 또는 기각 등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선거법에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이중규제라는 비판도 있다.¹⁵⁾ 그러나 선거보도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데다 후속보도가 선거일 이전에 게재되어야 선거보도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옥상옥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언론사와의 협의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정하고, 이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로 회부될 경우에도 심의 및 결정의 시한을 48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어(인터넷 언론은 반론보도청구회부건의 처리시한 규정이 없음¹⁶⁾) 선거법상 반론보도청구절차를 이용할 경우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

14) 선거일과 보도일을 기준으로 한 제척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달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보도일 만을 기준으로 한 제척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15) 성낙인, 앞의 논문, p. 23.

16) 제8조의6(인터넷 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 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절차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심의위원회에서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론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다. 실제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제도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반론보도청구 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만 총 2건이 있을 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용 건수가 전혀 없었다. 반면 각 같은 기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후보자에 의한 조정신청건수는 제17대 총선 13건, 제4회 지방선거 10건으로 총 23건이 접수·처리된 것으로 조사되어, 선거법상 반론보도청구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언론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절차가 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심의기구 운영기간 동안 선거보도에 따른 조정신청사례 분석은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논하도록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반론보도청구절차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용이한 대신 청구자격범위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정당(‘중앙당’에 한함)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드시 당해 선거의 후보자나 정당이 아니더라도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반론보도절차를 이용¹⁷⁾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반론보도청구보다 그 자격범위가 넓다. 실제로 선거보도 심의기구 운영기간 동안 당해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었지만 선거법상으로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후보자 외 신청인’들이 신청한 사건이 44건이나

될 정도로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절차는 피해구제를 위한 외연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직선거법상 반론보도청구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언론사와의 협의절차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적 전치절차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간이 선거일전 120일부터이고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 역시 선거일전 120일부터 가능한 데 반해,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제척기간만 ‘선거일전 90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선거일전 120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¹⁸⁾

이에 덧붙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절차는 공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단, 공표일로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라면 언제든지 청구 가능한 반면, 방송 및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공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을 넘을 수 없도록 하면서 청구가능기간을 ‘선거일전 90일’로 제한한 것은 매체 간 형평에도 어긋나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의 반론보도청구회부건에 대해 회부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의 반론보도청구회부건에 대한 처리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도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의 일관성 있는 운용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을 ‘방송 및 게재 인지 일로부터 10일 이내(단, 방송 및 게재일로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의 보도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17) 반론보도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 및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18) 김창룡, “선거보도심의기구를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언론중재, 2007년 여름호, p. 42.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인터넷 언론의 경우는 '이의 신청')는 단순히 '선거일전 120일부터 신청 가능한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시정요구의 대상보도를 '선거일전 120일부터 게재된 보도'로 할 것인지, '선거일전 120일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당해 선거에 관한 보도'로 할 것인지(이 경우는 과거의 보도에 대해서까지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언론의 위축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도 아니면 '선거일전 120일부터 방송 및 게재 인지일이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보도'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IV. 선거보도 관련 조정 신청 사례 분석

1. 선거별 조정신청 현황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6대 대통령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 등'이라 한다)의 설치 기간인 선거일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 동안 선거 관련 조정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27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

선거별 조정신청현황을 보면 <표 2>에서와 같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조정 신청이 47건(37.0%)으로 가장 많았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조정신청은 39건(30.7%),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건(16.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건(15.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조정신청은 같은 기간 동안 한 건도 없었지만, 선심위 운영기간 전 후보와

정당이 신청한 사건은 9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2> 2000년 이후 각급 선거 관련 조정신청 현황

구 분	신청건수(%)	선거기사심의기구 운영기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39(30.7%)	2000. 2. 25.~2000. 5.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16.5%)	2002. 2. 14.~2002. 7. 13.
제16대 대통령 선거	·(0.0%)	2002. 8. 21.~2003. 1. 18.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15.8%)	2003. 12. 17.~2004. 5.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7(37.0%)	2006. 1. 31.~ 2006. 6. 30.
계	127(100.0%)	

2. 신청인별 분류

신청인을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후보자'라 한다)¹⁹⁾, 정당, 후보자의 친인척, 정당인 및 선거운동원, 지방자치단체, 후보가 아닌 국회의원 및 지자체의원, 국가기관 및 공무원, 언론사 등으로 분류한 결과, 후보자의 신청건수가 73건(57.5%)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지자체의원의 신청이 20건(15.8%)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정당이 신청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친인척, 정당인 및 선거운동원, 지방자치단체,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의원, 국가기관 및 공무원, 언론사 등이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해 신청한 조정건수가 42.5%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선거보도에 대한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만 하면 조정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언론중재법상 조정절차와 달리, 해당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보자에 국한하여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등을 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

19)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2 제6항에 의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분리하여 파악하지 않았다.

선거법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표 3〉 신청인 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신청인 유형	신청건수 (%)	비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73 (57.5%)	
후보자의 친인척	2 (1.6%)	
정당인 및 선거운동원	8 (6.3%)	
지방자치단체	7 (5.5%)	
후보 아닌 국회의원 및 지자체의원	20 (15.8%)	
국가기관·공무원	6 (4.6%)	
언론사	3 (2.4%)	
기타	8 (6.3%)	
계	127 (100%)	

신청인 유형별 분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후보자의 친인척이 신청한 사건 2건은 현역 국회의원의 동생이 신청한 것이며, 정당인 및 선거운동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정당선거사무소장, 선거운동원 등이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장이 조정신청한 것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지자체의원 항목에 포함했다. 국가기관은 기획예산처와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1건을 신청했으며, 공무원은 노무현 대통령, 국정상황실장, 함안군 대산면장, 경찰관이 각 1건을 신청했다. 기타 신청인으로는 여론조사회사 대표, 시민단체가 각 1건씩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유형을 선거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제3회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조정신청이 가장 많은 반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지자체의원의 조정신청(19건, 40.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역자치단체 선거임에도 해당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조정신청이 가장 많은 이유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등에 대해 정당

공천제가 실시되어 공천 과정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공천비리에 대한 보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국회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단지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제공자로 지목된 지방선거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도이기 때문에 선거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상 선거보도심의 기구를 통해 구제받지 못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에 나타나듯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조정신청이 많았던 반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부터는 조정신청인 유형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신청인이 선거보도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표3-1〉 각급 선거별 신청인 유형에 따른 조정신청 현황

선거인유형 \ 선거	선거				계
	제16대 총선	제3회 지선	제17대 총선	제4회 지선	
후보자	35(89.7%)	15(71.4%)	13(65.0%)	10(21.3%)	73(57.5%)
후보자 친인척				2(4.3%)	2(1.6%)
정당인 선거운동원		1(4.8%)	1(5.0%)	6(12.8%)	8(6.3%)
지자체	1(2.6%)	1(4.8%)		5(10.7%)	7(5.5%)
후보 아닌 국회의원 및 지자체의원			1(5.0%)	19(40.4%)	20(15.8%)
국가기관 공무원	1(2.6%)		3(15.0%)	2(4.2%)	6(4.6%)
언론사			2(10.0%)	1(2.1%)	3(2.4%)
기타	2(5.1%)	4(19.0%)		2(4.2%)	8(6.3%)
계	39(100%)	21(100%)	20(100%)	47(100%)	127(100%)

3. 피신청인 분류

피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간지가 88건 (69.3%)

으로 가장 많았고, 주간지가 25건(19.7%), 방송이 8건(6.3%)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5년 7월 28일 이후 조정신청이 가능해진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청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건이 있었다.

각급 선거별로 피신청인 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4>에서 보듯, 국회의원선거 시에는 중앙일간지에 대한 조정신청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에는 지역일간지에 대한 조정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중앙일간지에 대한 선거보도 조정신청은 28건(71.8%)이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는 9건(45.0%)이었다. 반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일간지에 대한 조정신청은 17건(80.8%)이었으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1건(44.7%)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일간지에 대한 조정신청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어 중앙당의 영향력이 커졌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간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 각급 선거별 피신청인 유형에 따른 조정신청 현황

피신청인유형 \ 선거	제16대 총선	제3회 지선	제17대 총선	제4회 지선	계
중앙일간지	28 (71.8%)	1 (4.8%)	9 (45.0%)	11 (23.4%)	49 (38.6%)
지역일간지		17 (80.8%)	1 (5.0%)	21 (44.7%)	39 (30.7%)
지역주간지	7 (17.9%)	1 (4.8%)	5 (25.0%)	9 (19.1%)	22 (17.3%)
종합주간지	1 (2.6%)		2 (10.0%)		3 (2.4%)
월간지			2 (10.0%)		2 (1.6%)
인터넷 신문				2 (4.3%)	2 (1.6%)
중앙방송	2 (5.1%)			4 (8.5%)	6 (4.7%)
지역방송		1 (4.8%)	1 (5.0%)		2 (1.6%)
뉴스통신	1 (2.6%)	1 (4.8%)			2 (1.5%)
계	39 (100%)	21 (100%)	20 (100%)	47 (100%)	127 (100%)

*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가능했다.

4. 기사유형 및 보도내용 분류

기사유형별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117건(92.1%)으로 조정신청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선거보도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듯,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관련 기사(35건, 27.6%)와 공천관련 기사(31건, 24.4%)가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 비리 관련 기사(24건, 18.9%)와 정책공약 관련 기사(13건, 10.2%)가 그 뒤를 이었다.

선거보도 내용 중 공천비리, 후보자 및 친인척 비리, 후보자의 전과 관련 보도 등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한 보도 내용이 98건(77.1%)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조정신청은 13건(10.2%)에 불과해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보자는 자신의 신상 관련 보도에 더욱 적극적인 피해구제 신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공천 관련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이 많은 이유는 앞서 신청인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 수수 관련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며, 이는 정당공천제 도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각급 선거별 보도내용에 따른 조정신청 현황

보도내용 \ 선거	제16대 총선	제3회 지선	제17대 총선	제4회 지선	계
여론조사관련	3 (7.7%)	1 (4.8%)		1 (2.1%)	5 (3.9%)
공천관련	2 (5.1%)	2 (9.5%)	4 (20.0%)	23 (49.0%)	31 (24.4%)
후보자비리관련	16 (41.1%)	3 (14.3%)	1 (5.0%)	4 (8.5%)	24 (18.9%)
친인척비리			5 (25.0%)		5 (3.9%)
선거법 위반	11 (28.2%)	4 (19.0%)	8 (40.0%)	12 (25.5%)	35 (27.6%)
후보자전과경력		3 (14.3%)			3 (2.4%)
정책공약 관련	6 (15.3%)		1 (5.0%)	6 (12.8%)	13 (10.2%)
기 타	1 (2.6%)	8 (38.1%)	1 (5.0%)	1 (2.1%)	11 (8.7%)
계	39 (100%)	21 (100%)	20 (100%)	47 (100%)	127 (100%)

보도내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론조사 관련 보도에 대해 여론조사 대표가 2건, 국회의원이 2건, 언론사가 1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대표가 신청한 사건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회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발표했다는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이었으며, 국회의원이 신청한 사건은 신청인의 지지율이 낮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이었다. 언론사가 신청한 사건은 지역 주간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타 지역신문의 보도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것이다.

공천 관련 기사에 대한 조정신청은 전·현직 국회의원이 21건(67.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후보자 비리 관련 기사는 크게 후보자 개인 비리 의혹 관련 보도와 후보자의 재산 의혹 관련 보도로 나뉜다. 후보자 개인 비리 의혹 사건 보도는 8건으로서 후보자가 각종 로비에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와 이중당적을 보유했다는 보도 그리고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할 당시의 수입 비리 및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 등이 있다. 후보자 재산 의혹 보도는 16건으로 그 중 후보자의 재산 증가액을 잘못 보도했다며 조정신청을 한 사건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의 탈세 의혹 보도와 신청인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 의혹 보도가 있었다.

친인척 비리 의혹 관련 보도는 5건으로 그 중 4건은 후보자 부친의 친일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것이었으며, 1건은 후보자 자녀의 고액 유학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이었다.

선거법 위반 관련 보도는 35건으로 후보자가 신청한 건수는 23건(65.7%)로 가장 많았고, 정당인·선거운동원이 7건(20.0%)이었으며,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3건(8.5%)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 관련 보도 내용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보도 내용은

불법 선거자금 관련 보도로 16건(45.7%)을 차지했다.

정책공약 관련 보도 중 후보자가 신청한 건수는 7건(53.8%)이었으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건수는 7건(46.2%)이었다. 국가기관 신청은 기획예산처가 1건, 지방자치단체 신청은 전주시가 4건, 송파구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한 소관 부처의 평가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거나, 현재 시행중인 시당국의 행정에 관한 사항이 보도내용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한 사건이 주를 이뤘다.

기타 관련 보도 중 서울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가 부산 금정구 구의원 당선자의 실종사건을 방송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한 사건도 있었다.

5. 청구권별 신청현황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92건(72.4%)으로 가장 많았고, 반론보도청구는 24건(18.9%)이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조정신청의 경우, 정정보도청구가 60.5%, 반론보도청구 30.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보도와 관련해서는 정정보도청구가 여타 청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쟁점사항에 대한 반박보다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 잘못된 조정대상기사에 의해 형성된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 제 4회 동시지방선거에는 선거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비율이 반론보도청구에 이어 23.4%(11건)를 차지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듯이, 정정보도가 78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정정 및 사과보도(18건, 15.8%)와 반론보도(17건, 14.9%)가 뒤를 이었다.

6. 조정결과

각급 선거별 조정신청 처리결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8>과 같이, 조정신청 결

과는 취하가 75건(59.0%)으로 가장 많았고, 합의 26건(20.5%), 조정불성립결정 16건(12.6%), 직권조정결정 9건(7.1%)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조정신청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취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합의는 다소 떨어졌다. 취하된 사건 75건 중 피해구제 보도가 되어 취하된 사건은 34건(45.3%)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조정신청 사건 중 취하된 사건의 피해구제보도율(55.3%)에 비해 10%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각급 선거별 청구유형에 따른 조정신청 현황

청구명 \ 선거	제16대 총선	제3회 지방선거	제17대 총선	제4회 지방선거	계	2000년~2006년 전체 조정신청
정정보도청구	33 (84.6%)	13 (61.9%)	14 (70.0%)	32 (68.1%)	92 (72.4%)	3,088 (60.5%)
반론보도청구	6 (15.4%)	8 (38.1%)	6 (30.0%)	4 (8.5%)	24 (18.9%)	1,554 (30.5%)
손해배상청구				11 (23.4%)	11 (8.7%)	459 (9.0%)
계	39 (100%)	21 (100%)	20 (100%)	47 (100%)	127 (100%)	5,101 (100%)

<표 7> 각급 선거별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내용 현황

요구보도 \ 선거	제16대 총선	제3회 지방선거	제17대 총선	제4회 지방선거	계
정정보도	30 (76.9%)	11 (52.4%)	9 (45.0%)	28 (82.4%)	78 (68.4%)
반론보도	4 (10.3%)	7 (33.3%)	4 (20.0%)	2 (5.9%)	17 (14.9%)
정정사과보도	4 (10.3%)	3 (14.3%)	7 (35.0%)	4 (11.7%)	18 (15.8%)
반론사과보도	1 (2.5%)				1 (0.9%)
계	39 (100%)	21 (100%)	20 (100%)	34 (100%)	114 (100%)

* 손해배상청구는 제외

<표 8> 각급 선거별 처리결과

조정결과 \ 선거	제16대 총선	제3회 지방선거	제17대 총선	제4회 지방선거	계	2000년~2006년 전체 조정신청
합 의	6 (15.4%)	8 (38.1%)	4 (20.0%)	8 (17.0%)	26 (20.5%)	1,869 (35.7%)
직권조정결정	3 (7.7%)	1 (4.8%)	3 (15.0%)	2 (4.3%)	9 (7.1%)	295 (5.6%)
조정불성립	3 (7.7%)		6 (30.0%)	7 (14.9%)	16 (12.6%)	908 (17.4%)
기각		1 (4.8%)			1 (0.8%)	121 (2.3%)
각하					0	36 (0.7%)
취하	27 (69.2%)	11 (52.3%)	7 (35.0%)	30 (63.8%)	75 (59.0%)	2,001 (38.3%)
계	39 (100%)	21 (100%)	20 (100%)	47 (100%)	127 (100%)	5,230 (100%)

보도내용에 따른 조정결과를 살펴보면, 후보자의 비리 의혹 등 후보자와 후보자 친인척의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의 취하율(86.2%)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보자 전과 경력 보도의 경우 합의율이 6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공약 관련 보도의 경우 직권조정결정율이 23.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 비리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 처리결과 취하가 된 21건 중 피해구제 보도가 되어 취하한 건수는 16건(76.2%)인 반면, 공천 관련 보도 중 취하가 된 19건 중 보도가 되지 않고 취하한 건수가 17건(89.5%)으로 나타나 후보자 비리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유형별로는 정정보도청구의 합의율(18.5%)보다 반론보도청구의 합의율(33.3%)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하율은 반대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60.9%로 반론보도청구의 취하율 41.7%보다 높게 나타났다.

V. 결론을 대신하여 - 제도적 개선 방안

조사 결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보도와 관련한 피해구제창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기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선거보도 관련 조정신청사건 수는 총 127건으로 각 매체별 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접수 현황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공식선거법상 각 매체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반론 내지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례가 73건이나 되었다.

상설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한 후보자 등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공식선거법 조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²⁰⁾ 언론보도 내용의 일부

〈표 9〉 보도내용에 따른 처리결과

보도내용	처리결과	합 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기 각	취 하	계
여론조사관련		1 (20.0%)	1 (20.0%)	1 (20.0%)		2 (40.0%)	5 (100%)
공천관련		6 (19.4%)	3 (9.7%)	3 (9.7%)		19 (61.2%)	31 (100%)
후보자비리관련		1 (4.2%)		2 (8.3%)		21 (87.5%)	24 (100%)
친인척비리		1 (20.0%)				4 (80.0%)	5 (100%)
선거법 위반		5 (14.3%)	2 (5.7%)	5 (14.2%)	1 (2.9%)	22 (62.9%)	35 (100%)
후보자전과경력		2 (66.7%)				1 (33.3%)	3 (100%)
정책공약 관련		5 (38.5%)	3 (23.1%)	4 (30.7%)		1 (7.7%)	13 (100%)
기 타		5 (45.5%)		1 (9.1%)		5 (45.4%)	11 (100%)
계		26 (20.5%)	9 (7.1%)	16 (92.0%)	1 (0.8%)	75 (59.0%)	127 (100%)

20)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는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연 정정보도문이 불공정 보도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적절한지, 불공정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에 어떤 형식과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정정보도나 당사자의 반론보도 요청은 보도의 불공정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도의 불공정 여부를 권리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한,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청구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 언론중재법과 선거법의 피해구제영역과 구제방법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거법에서와 같이 언론중재법에도 선거보도의 경우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법으로 구제가 어려운 피해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선거보도와 관련 조정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가족, 선거운동원,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정치인 등 이 조정신청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선거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조항 탓에 그 밖의 선거보도 피해자는 선거법상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선거보도 관련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거보도의 영역은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에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외의 선거보도 피해 사례가 42.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행사권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선거보도와 관련 반론권 행사는 선거일전 90일 이전으로, 정정보도 등 시정요구는 선거일 120일 전으로 차별적으로 적용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므로 이는 일률적으로 통일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현행 대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선거일 120일 이전의 신문과 방송기사는 아무리 불공정해도 꼭 참고 인터넷 언론만을 상대로 이의신청해야 하며, 재·보궐선거보도 역시 인터넷 매체에 게재된 보도만이 선거보도에 해당하는 옷지 못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체간 형평에도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현행 공직선거법의 언론보도 관련 조항들은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각 매체별 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을 달리 설정한 근거도 없으며, 권리행사와 관련해서도 매체별로 제각각이다. 시정요구 대상 보도시점도 인터넷 매체만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방송이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명시하고 있지 않다. 청구권별로도 달리 적용된다. 반론보도청구 회부 사건은 신청기한이나 처리시한을 명시하였지만 정정보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나 이의신청의 처리시한에 관해서는 선언적인 규정뿐이다. 또한 언론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반론권 행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신속한 반론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선의의 법 조항이 사문화될 처지이다.

선거보도와 관련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선거보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매체별로 산재한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통합 논의보다 선거보도 관련 피해구제 조항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보호와 언론중재위원회

장 성 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팀 서울제3중재부 조사관

I.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또는 ‘법’) 시행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 정기간행물법상 언론사의 명예훼손적인 사실적 주장(주로 오보)에 대해 가능했던 반론·정정·추후보도청구 외에 새로운 청구권으로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위원회에 단독 또는 병합청구형태로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다.

당초 손해배상청구를 언론중재법에 도입한 것은 손해배상을 독자적인 손해전보제도로 보기보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기존에 활용되어 온 원상회복방법인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인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주로 사실적 주장과 관련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일회적 절차

내에서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¹⁾

그런데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초 도입 의도와는 사뭇 다르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명예 이외의 인격권’(이하 ‘기타 인격권’²⁾)의 ‘독자적이고 유효한’ 보호 장치이자 피해구제수단으로 위원회에 정착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의 손해 특성상 오보에 대한 정정, 반론 및 추후보도와 같은 원상회복처분으로는 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고, 손해(주로 정신적)를 금전으로 위자(慰藉)하는 것 외에는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구제 방법 및 피해자의 주관적인 만족 수단을 법률상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손해배상에 인색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피청구인인 언론사에서조차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 기타 인격권 침해의 경우 실정법 및 법원 판례 등을

1) 이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과 제18조 제2항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2) 현재 위원회 내에서도 학계에서도 용어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필자는 인격권 침해 사건의 대부분이 명예훼손인 점을 고려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등을 ‘(명예 외) 기타 인격권’으로 묶어 명예와 대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고려할 때 면책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점을 대부분 잘 알고 있고, 법원소송절차에 드는 시간, 비용에 비해 손쉽게 피해자와 화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 판결액에 비해 소액으로 합의할 수 있고 이미 보도된 기사를 되돌려야 하는 정정보도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까닭에 쉽게 잘못을 시인하고 위원회에서 간편하게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점도 현재 위원회에서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분쟁해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유이다.

필자는 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사건이 기존의 명예훼손 사건유형과 어떻게 다르며, 언론중재법상 국민의 인격권 보장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위원회 중사자로서 그동안 기존의 인격권 관련 연구자료들이 명예 위주의 추상적인 인격권 분류에 머물거나 미국 판례 내지 일본과 독일의 관련 법규 분석에 치우치는 점을 보고, 위원회에 축적된 기타 인격권 사례들을 우리 법체계와 현실에 맞도록 실증적이고도 귀납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이 글에서는 위원회의 새로운 사건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타 인격권 침해(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등)를 이유로 한 조정·중재신청사건(주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주목하면서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각종 법규, 특히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의 인격권 보장원칙을 구체적으로 선언한 조항이 실정

법률상 최초로 언론중재법에 도입된 취지와 의미를 살펴보고, 위원회의 기타 인격권 관련 조정·중재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법 시행 후 2년간의 성과를 파악함과 함께 향후 접수되는 사건 처리에 참고토록 하며, 명예 외의 기타 인격권 침해 판정 기준 및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위원회가 앞으로 효과적인 인격권 분쟁 해결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점을 쓰고자 한다.

II.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현행 법률 규정

1. 일반 법률

가. 민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89헌마160 1991. 4. 1. 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공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나. 형 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처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특별법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

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나.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과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권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의 2(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다만,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

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 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①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 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및 제12조(제5조·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생략)
2. 제21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III. 언론중재법상 인격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1. 인격권 보장 및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

가. 인격권의 보장 :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5조 제1항)

나. 위법성 조각사유 :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동법 동조 제2항)

다. 검토

(1) 법상 인격권 규정의 의의

종래 인격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선언한 제10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제17조에 의해 도출되는 권리로, 법원 판

례에 의해 추상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전되어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학자들은 이를 다양한 개념으로 규정하였는데, 김동하 판사는 인격권을 광의로는 권리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그 인격에 전속하는 모든 인격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일반적 인격권)로, 협의로는 생명·자유·신체·건강에 관한 신체적 인격권과 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정신적 인격권(개별적 인격권)으로 정의하고 있다.³⁾

그동안 헌법 뿐 아니라 각종 일반 법률과 특별 법률에서도 구체적으로 인격권의 개념이나 종류 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이 인격권 침해 사례에서 구체적인 법원(法源)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된 개별 법률 중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하는 정도로만 인격권을 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 최초로 인격권의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하게 되었다. 그동안 사법부와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 인격권의 보장원칙과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밖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라고 하여 향후 새로이 등장하는 인격권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대비하고 보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⁴⁾

(2)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

언론의 ‘명예’ 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3) 김동하,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주제논문, 2007. 9. 6. p. 15.

4) 인격권 규정이 언론중재법 총칙에 명시됨에 따라 언론중재법의 개별 조항(예를 들어 ‘피해자’ 개념을 규정한 법 제18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준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서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⁵⁾가 있는 데 반해서 언론에 의한 '기타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다.⁶⁾

위 언론중재법 규정 해석상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승낙 또는 공적 관심사 및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피해자의 승낙)는 주로 일반인에게, 후자(공적 관심사 및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주로 공인 또는 각종 사건사고에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전자의 경우 초상권이나 사생활 비밀 침해사건시 방송촬영 또는 사진취재 관행상 일반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에 언론사의 면책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다.

2. 피해자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가. 피해자의 개념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법 제14조 제1항)

나.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중

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다. 검토

피해자 개념을 법 제14조 제1항의 문리적 해석으로 보게 되면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이 침해당한 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총칙의 인격권 보호 규정을 봤을 때 명백한 입법실수로 보인다. 언론의 오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는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된 피해자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될 뿐만 아니라, 제5조의 인격권 보장 규정과도 상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 절차에서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개념을 넓게 보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중재를 하고 있다.⁷⁾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입법론적으로는 법 제18조 제2항의 "피해자"를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보도에 부수하는 강압취재 등 취재과정의 불

5)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이를 공식화하면 언론사의 손해배상 면책조건 = [공익성 + (진실성 α 상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6) 다만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회사 직원의 불법 촬영에 대한 2006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서 대법원 최초로 초상권 개념을 정립("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하고 충돌하는 법익을 이익형량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7) 인격권 조항을 근거로 한 필자의 견해 외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해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 뿐 아니라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도 가능한 것을 들어 '피해자' 개념을 넓게 보는 견해도 있다("2006년도 정기세미나 토론 내용", 『언론중재』, 2006년 겨울호, p. 44. 참조)

법도 포함)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IV. 기타 인격권 관련 조정·중재 사례 유형 분석

1. 기타 인격권 침해 유형에 관한 기존의 논의

기타 인격권 침해 유형과 관련한 연구는 기존에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 전반에 대해서 주로 이뤄지거나 기타 인격권 중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안상운 변호사는 인격권 전반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면서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를 미국과 국내 판결을 참조하여 ① 초상 본인의 동의 없이 또는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촬영한 경우, ② 타인의 주거를 무단침입하여 초상 본인 몰래 촬영한 경우, ③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초상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④ 타 매체에 실린 사진을 복제하여 무단 전재한 경우, ⑤ 정보원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제공받아 게재한 경우, ⑥ 촬영조건과 다르게 게재된 경우, ⑦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사진을 사용한 경우, ⑧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을 삽입한 경우 등 8가지로 분류하였다.⁸⁾

엄동섭 교수는 언론보도와 초상 본인과의 연관성에 따라 ①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경우, ②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③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 내용과 전혀 무관한 경우 등으로 나눈 바 있고,⁹⁾ 한위

수 판사는 초상권 침해 유형을 ① 명예훼손적 기사에 대해 사진을 무단 게재하는 경우, ②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③ 승낙 당시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초상을 공표하는 경우 등 3종류로 나누고,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을 ① 사생활의 무단공표 경우와 ② 본인이 승낙한 것과 다른 방법에 의한 사생활보도로 나눈 바 있다.¹⁰⁾

조준원¹¹⁾은 1990년대 인격권 관련 법원 판결을 모두 분석하면서 인격권 침해유형을 크게 명예훼손(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합쳐진 경우 포함), 사생활 침해(사적사항 공표, 초상권, 음성권 침해로 세 분류), 피의사실공표(범죄사건보도와 관련하여 보도대상이 된 혐의자나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신용훼손, 기타의 범주로 나눠서 분석한 바 있다.¹²⁾

2. 기타 인격권 분쟁 조정·중재사례 유형화

(2005. 7. 28. ~ 2007. 7. 31.)

가. 8개 유형으로 분류

필자는 기존 연구자들의 분류를 모두 참고하여 보도내용과의 관련성 여부, 동의범위 초과 여부, 타 매체 자료 게재 여부, 범죄피해자 및 가해자 신상공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5년 7월 28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된 총 160건(신청건수 기준, 청구건수는 196건)의 기타 인격권 침해사례를 다음과 같이 8종류로 유

8) 안상운,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특히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p. 39.

9)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998년 여름호, pp. 28~34.

10) 한위수,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언론중재』, 1999년 가을호, pp. 26~29.

11) 현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혁신팀 차장.

12) 조준원, “1990년대 언론 관련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 2000년 가을호, pp. 47~50.

형화하였다.¹³⁾

- A. (보도내용과 직접 또는 간접 관련이 있는) 일반인의 초상(A-1) 또는 업체의 상호(A-2)를 동의 없이 촬영·게재한 경우
- B. (보도내용과 무관한) 일반인의 초상(B-1) 또는 업체의 상호(B-2)를 동의 없이 촬영·게재하면서 자료사진 내지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경우
- C. 촬영 당시 동의 범위 내지 사전 약속을 넘어서 부정적인 내용에 초상을 게재하거나 신상을 공개한 경우
- D. 타 매체나 홈페이지 등에 실린 사진·동영상 등을 무단 사용한 경우
- E. 범죄피해자 및 각종 사건사고 제보자의 초상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E-1), 범죄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의 초상 등 신원을 노출한 경우(E-2)
- F.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 G. 음성을 동의 없이 내보낸 경우
- H. 성명권, 대화, 저작물 침해의 경우

나. 유형별로 본 기타 인격권 조정·중재사례¹⁴⁾

A-1. (보도내용과 직접 또는 간접 관련이 있는) 일반인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한 사례

- (1) 신청인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걷는 전신 장면을 동의 없이 '봄을 맞은 대학가 미니스커트 패션 사진'으로 촬영, 게재해 초상권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103(손배); 200만 원; 합의(100만 원 상당의 현물지급: 대학 졸업 시까지 무료구독 및 발간서적

10권 지급]]

- (2) 신청인이 직장 동료 여직원과 함께 벚꽃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제목 '벚꽃 길따라 사랑이', '벚꽃 만끽하는 시민들')[2006서울조정129(정정·손배); 500만 원; 합의(정정 및 사과), 직권조정결정(손배 400만 원, 수용)] [2006서울조정130(손배); 300만 원; 합의(150만 원)]
- (3) 모 케이블 방송사가 주최하는 댄스경연대회에서 젊은 여성인 신청인이 신체를 과다 노출한 채 춤추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07(손배); 700만 원; 합의(70만 원)]
- (4) 신청인의 동생이 가족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병원에 있던 신청인의 모습(모자이크 처리 안 함)과 인터뷰를 동의 없이 촬영,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 [2006대전조정6(손배); 200만 원; 합의(사과)]
- (5) 모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사기 혐의자의 지명수배를 해제시켜준 사건을 보도하면서, 검찰 직원인 신청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방송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충북조정5(손배); 1,000만 원; 합의(대포이사 명의 사과문 발송)]
- (6) 젊은 여성들인 3명의 신청인들이 더운 여름에 컵에 든 음료수를 먹으면서 찡그린 표정으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주위의 놀림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59(손배); 600만 원(각 200만 원); 합의(도합 100만 원)]
- (7) 신청인이 참여한 싱글들의 재테크 모임을 '이성에는 관심 없는 자산불리기 모임'으로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실명과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

13) 8가지 유형을 침해법익별로 본다면, 초상권(A, B, C, D), 피해자·피의자 등 인적사항 공개(E),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F), 음성권(G), 성명권·대화·저작물(H)로 분류할 수 있다.

14) []안의 순서는 [사건번호: 청구액; 처리결과]임. 조정중재사례의 액수별 분류에 대해서는 김동하, 앞의 논문, p. 46.

- 례[2006서울조정289(손배); 1,000만 원; 합의(30만 원)]
- (8) 젊은 여성인 신청인이 월드컵 축구경기장에서 개성있는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한 후 월드컵 응원사진을 공모하는 해당 언론사 사고(社告)의 자료사진으로 다시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¹⁵⁾[2006서울조정323(손배); 3,000만 원; 직권조정결정(200만원) 수용] [2006서울조정324(손배); 300만원; 취하]
- (9) 주유소의 유사 휘발유판매를 고발하는 보도에서 주유소 소속 직원인 신청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모자이크나 음성변조처리 없음)[2006강원조정6(손배); 1,2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수용]
- (10) 신청인이 한 남성과 지하철에서 말싸움하는 동영상을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편집·방송하면서 초상과 음성을 공개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410(손배); 1,000만 원; 직권조정결정(150만 원) 수용] [2006서울조정411(손배); 1,000만 원; 합의(기사삭제)]
- (11) 예술가로 활동하다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신청인의 모습을 신청인이 촬영을 거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470(손배); 1,0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0만 원)-> 언론사 이의신청 후 법원판결 700만 원(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¹⁶⁾]
- (12) 잘된 패션과 안 좋은 패션을 대비하는 기사에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옷차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486(손배); 100만 원; 합의(60만 원 상당의 현물지급)]
- (13) 고속철도역 앞의 무질서한 주차난을 보도하면서, 역 무실에 항의하는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501(손배); 500만 원; 직권조정결정(반론)->신청인 이의신청]
- (14) 대형 교통사고 참사를 다룬 프로그램에서 피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518(손배); 3,000만 원(각 1,500만 원); 합의(각 100만 원)]
- (15) 금은방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초상과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524(손배); 500만 원; 취하(100만 원 지급)]
- (16) 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온 입주예정자들을 제지하고 있는 건설회사 직원인 신청인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안 했음)[2007충북조정1(손배); 1,800만 원; 취하(방송 다시보기 삭제 및 후속 보도 약속)] [2007충북조정2(손배); 1,950만 원; 취하(방송 다시보기 삭제 및 후속보도 약속)]
- (17) 신청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고객을 가장한 사람들이 판매용 옷에 일부러 커피를 쏟는 장면을 연출하고 이를 몰래 촬영·방영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16(손배); 250만 원; 합의(115만 원)]

15) 참고로 이 사건을 맡은 중재부장(서울제2중재부)이 신청인의 개성있는 응원모습을 일종의 상품으로 본다면 언론사의 사고(社告) 자료사진 게재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사례로 법 시행 후 최초의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주부모델)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로는 동부지법 2004. 2. 12. 2002가합3370 판결(항소심 조정 성립) 참조.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이를 인정한 판례에 대해서는 김동하, 앞의 논문, pp. 33~40.

16) 서울중앙지법 2007. 7. 25. 선고 2006가합108300 판결. 이 외에 위원회 경우 사건의 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황정규(서울제1중재부 중재부장), “언론중재제도의 운영현황과 평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 주제논문, 2007. 9. pp. 2~14.

- (18) 청소년 수련관을 그만 둔 학생에 관해 취재하면서 인터뷰를 거부하는 담당 선생님인 신청인을 몰래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17(정정·손배); 500만 원; 취하(정정), 직권조정결정(손배 100만 원, 수용)]
- (19) 결혼정보회사의 단체미팅행사에 참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한 사례[2007서울조정100(손배); 23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3(손배); 230만 원; 중재결정 100만 원] [2007서울조정102(손배); 23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4(손배); 230만 원; 중재결정 100만 원]
- (20) 지방세 체납 실태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신청인의 모습과 차량번호 등이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108(손배); 3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21) 신청인이 누드 크로키 모델로 나선 현장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118(손배); 2,000만 원; 합의(100만 원)]
- (22) 강풍으로 체감기온이 뚝 떨어졌다는 날씨를 보도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추위로 웅크리고 있는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124(손배); 10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6(손배); 100만 원; 중재결정 30만 원]
- (23)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비리척결 대회가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신청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134(손배); 1,000만 원 ; 합의(200만 원)]
- (24) 모 회관 수영장 재건축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집회 시위현장을 보도하면서, 집회 참가자와 모 회관 관

계자 간의 몸싸움을 만류하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155(손배); 400만 원; 합의(사진 삭제 및 기사말미 사과문 게재)]

- (25) 대학 축제기간 중 '편치왕 이벤트'에 참가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171(손배); 200만 원; 합의(50만 원)] [2007서울조정172(손배); 200만 원; 합의(50만 원)] [2007서울조정173(손배); 300만 원; 합의(100만 원)]
- (26) 모 전자상가의 강매 현장을 보도하면서 판매원인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변조는 했으나 옆얼굴이 1초 정도 노출)[2007서울조정194(정정·손배); 2,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A-2. (보도내용과 직접 또는 간접 관련이 있는) 업체의 상호 등을 노출한 사례

- (1) 특정 회사의 특허 취득 로고를 사용하던 스포츠센터의 폐업사기를 보도하면서, 로고를 방송화면에 내보내 이를 공동사용하고 있는 신청인 회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05서울조정56(반론·손배); 322,208,200원; 반론(합의), 손배(취하)] [05서울조정57(반론·손배); 322,208,200원; 취하(반론보도)] [05서울조정58(반론·손배); 322,208,200원; 반론(합의), 손배(취하)]
- (2) 가짜 외제 담배의 불법유통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적법하게 제조하는 담배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방영해 가짜 담배로 묘사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05서울조정65(정정); 조정불성립결정]
- (3) 일부 웨딩업체들의 엉터리 결혼 서비스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웨딩업체의 상호를 모자

- 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34(정정·손배); 4,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2006서울조정35(정정·손배); 4,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4) 퀵서비스 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상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29(손배); 2,000만 원; 취하(250만 원 지급)]
- (5) 일부 지하철 택배업체가 고의적으로 직원의 임금을 체불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45(손배); 2,000만 원; 기각결정(피해자 불특정)]
- (6) 비만치료제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비만치료 부작용 사례와 무관한 신청인 병원의 내·외부 전경을 방송하였고, 신청인이 처방한 약품이 간질약이기 때문에 비만치료제로서 부적절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례(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는 하였음)[2007서울조정129(정정·손배); 3,000만 원; 직권조정결정(반론+동영상 삭제)->언론사 이의신청]
- (7) 식당동업자 및 피살자의 가족인 신청인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식당 간판과 전경을 방영하고 신청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 등을 동의 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사례[2007강원조정3(손배); 5,000만 원; 취하(80만 원 지급)]
- B-1. (보도내용과 무관한) 일반인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하면서 자료사진 내지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사례
- (1) 이직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대형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신청인 모습을 자료사진으로 보도한 사례 [2006서울조정36(정정·손배); 400만 원; 합의(정정 및 손배(50만 원))]
- (2) 신청인의 남편이 지하철역에서 실족사하는 모습을 자살 관련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05서울조정84(정정·손배); 13,000만 원; 각 기각결정(당사자 불특정)]
- (3) 모 지역 구의원 당선자의 실종사건을 방송하면서 자료 화면으로 실종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유세차량과 얼굴을 내보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36(손배); 3,000만 원; 합의(300만 원+사과문발송)]
- (4) 한의원의 보험약재 사용기피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진료하는 화면에 제3자의 목소리를 덧씌워 신청인이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전북조정23(정정); 취하(자진취하)]
- (5) 여름철 피부 화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제대로 복장을 갖추지 않는 것을 들면서 신청인이 상의를 벗고 달리는 모습의 사진을 자료사진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77(손배); 300만 원; 합의(50만 원, 무료 구독 1년)]
- (6) 미니스커트 착용으로 인한 질병 가능성 등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면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신청인의 전신 사진(얼굴 절반 노출 포함)을 무단으로 배경사진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312(손배); 1,000만 원; 합의(99만 원, 해당 매체 평생무료구독, 자매지 1년 무료구독, 참고: 조정심리전 사과문 게재했음)]
- (7) 여름철 일사병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야외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신청인들을 몰래 촬영, 자료화면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321(손배); 400만 원(각 2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중재부 권고액을 양 당사자가 모두 거부]
- (8) 첫눈 소식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량이 폭증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젊은 여성들인 신청인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사진(실제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카메라 사진을 보고 있었음)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 495(손배); 200만 원; 합의(각 50만 원)]

- (9) 유명 영화배우의 귀국 현장을 필사적으로 취재 중이던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비명을 지르고 있는 영화배우와 같이 촬영 게재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198(손배); 2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10) 마라톤 등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무릎 및 발목 부상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달리는 모습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215(손배); 5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수용]
- (11) 초고속인터넷 해지 제도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지 업무와 상관없는 업무에 종사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258(손배); 100만 원; 합의(49만 원)]
- (12) 시립국악원의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관련이 없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충북조정9(손배); 500만 원; 합의(사과문 게재)] [2007충북조정10(손배); 500만 원; 합의(사과문 게재)] [2007충북조정11(손배); 500만 원; 합의(사과문 게재)]

B-2. (보도내용과 무관한) 업체의 상호 등을 노출한 사례

- (1) 국산 콩나물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신청인 업체의 콩나물 상자를 도용하여 수입콩으로 만든 콩나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는 보도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신청인 업체의 콩나물 상자가 방영돼 피해를 입은 사례[05서울조정18(반론·손배); 30억 원; 합의(반론), 취하(손배)]
- (2)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

료화면으로 성폭력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신청인 회사를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05서울조정35(정정·손배); 5,500만 원; 직권조정결정(정정, 수용), 기각결정(손배-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미약)]

- (3) 위생불량업소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 없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 전경을 배경 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은 사례[05서울조정39(정정·손배); 5,460만 원; 합의(정정), 취하(손배)]
- (4) 중국 정부의 한국산 김치 등의 수입금지 조치를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가 설립한 중국 현지 회사의 제품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돼 피해를 입은 사례[05서울조정162(정정); 합의(정정)]
- (5) 농촌 노인들의 휴대전화에 각종 부가서비스를 몰래 가입시키는 등 횡포를 부리는 이동 통신 대리점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대리점 전경을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대구조정11(정정·손배); 500만 원; 각 직권조정결정(정정보도 및 300만 원)-> 결정 확정 전 신청인 손배금 지급받고 취하]
- (6) 모 도시 공단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티켓다방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다른 지역의 ‘△△다방’이라는 상호를 자료사진으로 보도해 마침 공단지역에서 동명의 다방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티켓다방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416(손배); 1,000만 원; 합의(정정 및 반론)]
- (7) 불법화장품을 판매한 피부관리실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피부관리실의 상호 및 주변 전경을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444(정정·손배); 1,000만 원; 합의(정정), 취하(손배)]
- (8) 가짜 리뷰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남녀 간 치정관계를 다루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피아노 학원 전경을

동의 없이 촬영, 방송함과 아울러 치정관계에 연루된 여자가 피아노학원 소속 선생이라고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68(정정·손배); 1,000만원; 취하(정정보도 및 1,000만 원 지급)]

- (9) 보조금 횡령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사진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광주조정5(정정·손배); 1,000만 원; 취하(자진취하)]
- (10) 경기도 모 지역의 부동산 투기현상을 보도하면서 이 지역과 관련 없는 신청인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화면에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106(손배); 5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인터넷 다시보기는 삭제)]
- (11) 전자상가에서 외국산 흡시어터가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장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178(정정·손배); 60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7(정정·손배); 600만 원; 중재결정(정정 및 120만 원)]

C. 촬영 당시 동의 범위 내지 사전 약속을 넘어서 부정적인 내용에 초상을 게재하거나 신상을 공개한 사례

- (1) 환경부 국감장에서 공개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인 신청인(2세)의 사진을 언론에서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05서울조정128(손배); 5,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2) 청년실업문제를 다루는 뉴스에서 군대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청인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신청인이 2년 전 서울의 한 유명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동안 계속 취업이 안 돼 아르바이트직을 전전하고 있어 방 월세를 내기도 벅차다고 보도한 사례[05서울조정207(정정·손배); 1,000만 원; 합의(정정 및 200만 원 지급)]

- (3) 애완동물 숲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사진을 찍은 후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에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받았음에도 희귀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117(손배); 1,000만 원; 합의(200만 원 + 포털 블로그에 떠있는 기사 삭제요청)]
- (4) 15년 전 신청인이 모 잡지사에서 교정교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 당시 찍은 사진을 창간 30주년 특집 기사에 무단으로 게재하고 성명을 오기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58(손배); 100만 원; 합의(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 발송)]
- (5) 신청인이 모 드라마에 단역배우로 출연하면서 제출한 프로필 사진을 동의 없이 해당 드라마에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내보내(이름도 성만 바뀌서 나갔음)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319(손배); 200만 원; 합의(60만 원))
- (6)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것이라고 인터뷰 의도를 밝히고 취재한 후, 부정적인 내용인 소위 '된장녀'에 대한 기사에 젊은 대학생들인 신청인들의 초상과 성명, 사적 취미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은 사례¹⁷⁾[2006서울조정325(손배); 3,000만 원; 중재합의] [2006서울중재1(손배); 3,000만 원; 중재결정 700만 원] [2006서울조정326(손배); 3,000만 원; 중재합의] [2006서울중재2(손배); 3,000만 원; 중재결정 500만 원] (참고: 심리기일 전 사과문 게재했음)

17) 위원회 최초의 중재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이 건 접수 전후로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이 특히 폭주하여 필자가 이 논문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원; 조정불성립결정]

- (7) 386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논술시장을 석권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학생 운동권 출신이 아닌 신청인의 수업장면을 사진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 [2006서울조정328(정정); 합의(정정+포털 등 인터넷에 있는 사진 삭제)]
- (8) 인테리어를 주제로 한 방송에 신청인 집을 내보내는 것처럼 약속하고선 신청인이 호화 주택에 살면서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사람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은 사례 [2006서울조정418(손배); 1,000만 원; 합의(150만 원)]
- (9) 커리어를 추구하는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자동차에 관한 섹션을 실으면서 젊은 직장 여성인 신청인의 전신 사진과 함께 특정 외제차를 모는 남자가 좋다고 인터뷰한 것처럼 묘사해 마치 신청인이 돈만 밝히는 여성으로 보도되어서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517(정정·손배); 700만 원; 합의(반론)]
- (10) 의료사고 피해자인 신청인이 피해사항을 설명하는 인터뷰 장면을 모자이크와 음성변조가 미흡한 상태에서 방송해 주위 사람들이 알아봐서 피해를 입은 사례 [2007전북조정1(손배); 2,000만 원; 합의(구두사과 및 PR보도)] [2007전북조정2(손배); 2,000만 원; 합의(구두사과 및 PR보도)] [2007전북조정3(손배); 2,000만 원; 합의(구두사과 및 PR보도)]
- (11)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의 위기를 넘긴 노부부 사연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방송하고 신청인을 과거 불륜관계 당사자라고 묘사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23(반론·손배); 50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1(손배); 500만 원; 중재결정 250만 원]
- (12)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을 주선하는 것이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불법이라고 보도하면서, 중개업소 직원인 신청인의 인터뷰를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214(손배); 1억

D. 타 매체나 홈페이지 등에 실린 사진 동영상 등을 무단 사용한 사례

- (1) 뇌졸중 관련 기사에 다른 매체에 실린 바 있는 신청인의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149(정정·손배); 300만 원; 합의(정정 및 손배 100만 원)]
- (2) 전자상가에서의 쇼핑 요령을 보도하면서 자료사진으로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일종의 블로그 아트 사진이라고 주장)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09(손배); 500만 원; 합의(60만 원+PR기사)]
- (3) 모 드라마에서 일반인인 신청인의 사진(인터넷에서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을 무단으로 드라마 내용 중 현상범 포스터에 넣고, 강간 미수범이라고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33(손배); 500만 원; 직권조정결정(500만 원) 수용]
- (4) 같은 방송사의 다른 프로그램에 나간 바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뉴스 프로그램에 다시 방송(모자이크 처리는 했음)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21(손배); 2,000만 원; 직권조정결정(700만 원)->언론사 이의신청]
- (5) 1년 전 다른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나간 바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이 있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뉴스 프로그램에 방영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46(손배); 1,400만 원(각 7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0만 원, 각 500만 원)-> 언론사 이의신청 후 500만 원(각 250만 원) 지급+동영상 삭제 및 자료폐기]
- (6) 유학생할 중 나뭇가지에 맞아 골절상을 입은 후 공원

관리업체와 승사를 벌여 승소한 신청인의 사연을 보도하면서 얼굴사진과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65(손배); 2억 원; 취하(700만 원 지급)]

- (7) 이벤트업체 홈페이지에 있던 신청인이 프로포즈 받으면서 울고 있는 동영상을 동의 없이 방송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례[2007서울조정191(손배); 50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8(손배); 500만 원; 중재결정 100만 원]
- (8)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소개하면서, 성전환한 적 없는 신청인의 사진을 성전환 전의 남자 사진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206(손배); 500만 원; 취하(280만 원 지급)]

E-1. 범죄피해자 또는 각종 사건사고 제보자의 초상 등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례

- (1) 청학동의 무허가 서당 난립 실태에 대해 다루면서 신청인이 마치 제보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실명, 나이, 거주 도시를 노출한 사례[05부산조정4(손배); 3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수용]
- (2) 인터넷 뱅킹을 통한 현금인출 사고를 보도하면서 명의가 도용된 신청인의 이름을 밝혀 피해를 입은 사례 [05부산조정6(정정·손배); 500만 원; 취하(피신청인 구두사과)] [05부산조정7(정정·손배); 500만 원; 취하(피신청인 구두사과)] [05경남조정5(정정·손배); 500만 원; 정정 및 사과(합의), 손배(취하)] [05경남조정6(정정·손배); 각 500만 원; 정정 및 사과(합의), 손배(취하)] [05서울조정104(정정·손배);

500만 원; 취하(자진취하)] [05서울조정105(정정·손배); 500만 원; 취하(자진취하)] [05서울조정106(정정·손배); 500만 원; 취하(자진취하)]

- (3)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강도를 당한 신청인의 얼굴이 찍힌 CCTV화면을 뉴스에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94(손배); 1,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4) 신청인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나이, 성씨, 거주지(동) 등을 보도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152(손배); 2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수용] [2006서울조정153(손배); 500만 원; 직권조정결정(300만 원), 수용] [2006서울조정154(손배); 2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 언론사 이의신청 후 법원 판결 200만 원(피해자 인적사항 공개)¹⁸⁾]
- (5)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인 신청인의 여동생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180(손배); 9,000만 원; 취하(자진취하)]
- (6) 신청인이 2인조 성폭행범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실제는 성폭행은 아니고 미수로 확인), 아파트 CCTV에 찍힌 신청인의 모습을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 [2006부산조정8(손배); 300만 원 (위자료); 합의(200만 원)] [2006서울조정271(손배); 200만 원; 합의(200만 원)] [2006서울조정272(손배); 300만 원; 합의(200만 원)]
- (7) 북한의 마약과 탈북자 문제에 관해 제보한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정원 정보원인 신청인의 신분과 사진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322(손배); 5,000만 원; 조정 불성립결정]

18) 서울남부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가소139338 판결

- (8)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신청인의 거주지, 나이, 성씨, 소속 길드 등 신원을 공개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373(손배); 1,000만 원; 중재합의] [2006서울중재3(손배); 1,000만 원; 중재결정 70만 원]
- (9) 드라마 촬영 중 제작진에게 폭행당한 신청인의 성씨 등 신원을 노출하고 인터뷰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 483(손배); 100만 원; 합의(피신청인 사과)]
- (10) 실업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제보한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모자이크 처리는 했음)[2007서울조정 130(손배); 4,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11) 성폭행당한 신청인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161(손배); 300만 원; 기각결정(피해자 불특정)] [2007서울조정 162(손배); 300만 원; 기각결정(상동)] [2007서울조정 163(손배); 300만 원; 기각결정(상동)] [2007경기조정 34(손배); 300만 원; 취하(자진취하)] [2007경기조정 35(손배); 300만 원; 기각결정(피해자 불특정)]

E-2. 범죄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의 초상 등 신원을 노출한 사례

- (1) 신분증 위조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은 사례[05서울조정129(손배); 3,000만 원; 합의(200만 원)] [05서울조정161(손배); 5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2) 전직 검사인 신청인들이 사건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들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377(손배); 1억 원; 조정불성립결정]

- (3) 노랑진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이 이웃집 생선을 훔친 사실을 보도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방송(모자이크 처리는 했으나 음성변조는 안 했음)하고, 혐의 사실을 부풀려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515(손배); 500만 원; 합의(150만 원)]
- (4) 의경 출신인 신청인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후, 과거 근무한 소속 부대를 밝히는 등 횡설수설하는 장면을 음성변조 없이 내보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526(손배); 500만 원; 취하(보도삭제)]
- (5)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과 인터뷰 내용을 아무런 동의 없이 공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대구조정1(손배); 500만 원; 취하(자진취하)]
- (6) 마약관련 보도를 하면서 2002년에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신청인 모습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동의 없이 방송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 66(손배); 3,000만 원; 취하(언론사 사과+홈페이지 다시보기 삭제)]
- (7) 신청인이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을 폭행했다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차량 번호판이 찍힌 사진을 보도자료로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70(손배); 2,000만 원; 합의(200만 원)] [2007서울조정71(손배); 2,000만 원; 합의(700만 원)]

F.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한 사례

- (1) 인터뷰를 거부하여 실제 인터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심경을 본지에 고백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현재 거주지를 노출한 사례 [05서울조정165(정정·손배); 1억 원; 합의(정정), 직권조정결정(손배 200만 원, 수용)]

- (2) 일반인인 신청인과 모 유명탤런트 사이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인적 상황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173(손배); 3,000만 원; 직권조정결정(300만 원)->언론사 이의신청 후 법원 계류 중 300만 원 지급] [2006서울조정174(정정·손배); 5,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정정), 직권조정결정(손배 1,000만 원)->언론사 이의신청 후 1심 법원 판결 1,000만 원(프라이버시권과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 (3) '200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신청인의 집이 전국에서 가장 싼 집으로 조사됐다고 잘못 보도하면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신청인의 집 모습, 주소, 생활환경, 자식관계 등 인적 사항을 노출한 사례[2006서울조정187(손배); 1억 원; 청구액을 2,000만 원으로 감축 후 직권조정결정(250만 원)-> 언론사 이의신청 후 법원 권고화해결정 150만 원 지급] [2006전북조정20(손배); 1억 원;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 소 제기 후 법원 판결 200만 원 지급]
- (4) '식습관에 따른 비만도 조사'를 위한 독자 모델에 응한 신청인을, 비만체형 독자대표로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사진과 신체 사이즈 및 비만정도를 공개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05(정정·손배); 500만 원; 각 합의(100만 원)]
- (5) 극심한 생리통을 앓고 있던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사연 및 치료과정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수술장면을 촬영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초상은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음성변조 안 했음)[2006서울조정386(손배); 2,000만 원; 중재합의] [2006서울중재5(손배); 2,000만 원; 중재결정 750만 원]
- (6)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는 신청인 딸의 가슴 진료장면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진료 자체는 촬영에 동의했음)[2006서울조정413(손배); 1,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7) 가출 청소년과 모친인 신청인들이 복지상담센터에서 서로 만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내보내 초상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당한 사례[2007서울조정88(손배); 1,00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2(손배); 1,000만 원; 중재결정 150만 원]
- (8) 모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청인의 과거 사생활을 방송 중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한 사례[2007서울조정12(손배); 3,00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5(손배); 3,000만 원; 중재결정 300만 원]
- (9) 거리로 내몰린 노숙형제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노숙형제의 큰 아버지인 신청인의 가족사와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등이 동의 없이 방영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210(손배); 2,000만 원; 합의(후속보도)]
- G. 음성을 동의 없이 내보낸 사례
- (1) 잇따른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를 응징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는 것을 반대한 1년 여 전의 전화인터뷰 음성을 동의 없이 다시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08(손배); 1,0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언론사 이의신청]
- (2) 모 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인 신청인이 총학생회장 탄핵에 대해 찬성한 것처럼 보도하고 허락 없이 녹음·방송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34(손배); 100만 원; 합의(100만 원)]
- (3) '영아 사체 유기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용의자 P씨의 회사동료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한 후 음성변조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305(손배); 200만 원; 합의(100만 원)]
- (4) 영아살해사건을 다루면서 용의자의 회사 동료인 신청

인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음성을 침해당한 사례[2006서울조정396(손배); 2,000만 원; 중재합의] [2006서울중재6(손배); 2,000만 원; 중재결정 100만 원]

- (5) 킷서비스 업체의 임금체불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킷서비스회사 직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취·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28(손배); 200만 원; 취하(100만 원 지급)]
- (6) 신청인 아내의 사망을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단정해 보도했고, 신청인의 인터뷰 음성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95(손배); 1,500만 원; 합의(100만 원+영상물 판매금지조치)]
- (7) 어린이 유괴사건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범인이 살았던 아파트상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신청인의 음성과 사무실 내부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한 사례(모자이크 처리는 했으나 음성변조는 안 했음)[2007서울조정135(손배); 5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 언론사 이의신청 후 100만 원 지급]

H. 성명권, 대화, 저작물 침해 사례

- (1) 성명권 : 모 지자체가 추진 중인 문화공연 행사의 준비 소홀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공연에 참여한 신청인과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동의 없이 실명으로 보도함과 아울러 인터뷰 내용도 왜곡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2007경남조정14(손배); 200만 원; 취하(피신청인 사과)] [2007경남조정15(손배); 300만 원; 취하(피신청인 사과)]
- (2) 대화 : 국회의원이 신청인이 동료 의원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마치 상임위 배정에 대해 수입문제로 불만을 품은 것처럼 편집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253(정정·손배); 5억 원; 각 조정불성립결정]

- (3) 저작물 : 신청인이 2003년 모 여성잡지에 기고했던 서평을 저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본지에 전재하면서 마치 신청인이 직접 기고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167(정정·손배); 2,000만 원; 각 합의(알림보도문 및 200만 원)]

다.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전반적 분석

분석기간인 2005년 7월 28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총 2년 간 전체 신청건수 1,599건 중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조정·중재신청건수는 총 160건으로 전체 대비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정정·반론·손배 등 개별 청구권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타 인격권 청구별 분류

청구별 분류	청구건수	비율
손배 청구	156	79.6%
정정 청구	35	17.9%
반론 청구	5	2.5%
계	196	100%

<표 2> 기타 인격권 단독·병합청구 현황

청구별 신청사건 분류	신청건수	비율
손배 단독청구 신청	120	75%
손배 병합청구 신청 (손배+정정, 손배+반론 등)	36	22.5%
정정, 반론 단독청구 신청	4	2.5%
계	160	100%

총 160건의 신청사건 중 손해배상청구를 단독 또는 병합하여 신청한 건은 156건(전체 97.5%)으로 거의 전부가 손해배상청구사건임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업체의 상호가 노출된 A-2형과 B-2형 사건에서 손해청구와 정정청구를 병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정의 실익이 적은 개인과 달리 회사나 업체는 손해배상 뿐 아니라 추락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정정보도도 같이 받고자 병합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고 3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손해배상청구액 평균은 1건당 4,540만 원이며 중앙값은 500만 원으로 나오고 있다.

개별 청구건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96건의 청구건 중 합의(손배를 정정 등으로 합의한 경우 포함), 직권조정결정 수용, 중재결정, 손해금 지급이유 취하 등 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된 비율¹⁹⁾은 72.9%로 같은 기간 전체 사건 평균 피해구제율 61.0% 대비 11.9%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위원회에서

기타 인격권 사건의 해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기타 인격권 손해청구 액수별 분류

손해청구 액수별 분류	청구건수(비율)	합의 등 분쟁 해결건수(피해구제율)
100만 원~1,000만 원 이하	101(64.7%)	77(76.2%)
1,000만 원~5,000만 원 이하	40(25.7%)	28(70%)
5,000만 원 이상	15(9.6%)	5(33.3%)
계	156	전체 평균은 72.9%임

손해청구만 놓고 보면 156건의 손해청구건 중에서 분쟁이 해결되어 실제 손해액이 지급된 건은 70건으로, 금액은 3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이르고 있으며, 지급된 손해배상액 평균은 1건당 208만 원이다.²⁰⁾ 금액별로 보면 손해청구액 1,000만 원 이하의 사건 중 76.2%가 합의 및 조정결정이 수용되어 분쟁이 위원회에서 해결되었으며 금액이 커질수록 해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표 3〉 청구권별 처리 현황

(2005. 7. 28. ~ 2007. 7. 31.)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실질적 피해구제율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결정	각하 결정	중재 결정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전체건	2,245	720	57	61(1)	3	465(10)	48	31	16	819(501)	25	61.0%
	100.0%	32.1%	2.5%	2.7%	0.1%	20.7%	2.1%	1.4%	0.7%	36.3%	1.1%	
기타 인격권사건	196	71	14	12	0	23	8	0	13	55(39)	0	72.9%
	100.0%	36.2%	7.1%	6.1%	0%	11.7%	4.1%	0%	6.7%	28.1%	0%	

* () 안의 숫자는 합의, 조정결정(동의) 외에 보도 또는 손해금 지급이 된 건수임

19) 실질적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합의 + 조정결정중 동의 + 중재결정 + 조정결정중 이의, 조정불성립결정, 취하 중 손해금 지급·정정 게재·중재합의된 건수 포함) / 조정건수(계속·기각·각하결정 건 제외)

20) 직권조정결정 중 이의신청이 된 건까지 포함하면 평균 240만 원이며, 참고로 직권조정결정에 언론사 또는 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건은 12건인데, 이 중 07년 8월 말 현재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금액이 지급된 건은 8건으로 평균금액은 431만 원이다.

나타나고 있다.

〈표 5〉 기타 인격권 침해법익별 처리현황

침해법익	청구건수(비율)	합의 등 분쟁 해결건수(피해구제율)
초상권(A, B, C, D)	123(62.8%)	93(75.6%)
피해자, 피의자 등 인적사항 공개(E)	42(21.4%)	23(54.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F)	17(8.7%)	11(64.7%)
음성권(G)	8(4.1%)	6(75%)
성명권, 대화, 저작물 등(H)	6(3%)	4(66.7%)
계	196(100%)	전체 평균은 72.9%임

침해법익 중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청구건수는 총 청구건 중 123건으로 전체 기타 인격권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62.8%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피해자·피의자 등 인적사항 공개로 나타나고 있다. 분쟁해결비율로 보면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 사건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데 비해 사생활 침해 및 인적사항 공개 사건은 상대적으로 해결율이 떨어지고 있다.²¹⁾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다루도록 하겠다(성명권, 대화, 저작물은 소수여서 분석에서 제외).

(2) 매체별, 세부 유형별 처리현황으로 드러난 시사점
매체별로 접수된 신청건수를 보면 방송이 85건(53.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신문이 47건(29.4%)로 위원회 전체 사건의 접수 비율(신문 대 방송이 7 대 3 정도)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뒤로 잡지, 뉴스통신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처리결과를 보면 잡지의 분쟁해결율이 가장 높고 신문의 경우에는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방송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방송을 세분해서 보면 방송 중 '방송 3사'로 불리는 지상파방송 건수는 73건 중 49건 해결로 분쟁해결율 67.1%를 보이고 있고, 케이블TV는 12건 중 10건 해결로 지상파방송보다 높은 수치인 83.3%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매체별 처리현황

매 체	신청건수(비율)	합의 등 분쟁 해결건수(피해구제율)
신 문	47(29.4%)	35(74.4%)
잡 지	15(9.4%)	13(86.7%)
방 송	85(53.1%)	59(69.4%)
뉴스통신	8(5%)	6(75%)
인터넷 신문	5(3.1%)	3(60%)
계	160(100%)	전체 평균은 72.9%임

방송에 대한 접수건이 많은 이유는 음성권 등 방송에 고유한 침해유형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자료화면 또는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초상이나 사생활이 노출되기 쉬운 매체 특성과 방송 노출로 인한 피해가 타 매체보다 큰 점 때문으로 보인다. 신문에 비해 방송의 분쟁해결율이 낮은 이유는 방송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초상과 음성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방송사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개선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피해구제율을 8개의 세부 유형별로 나눠보면 C 유형(동의 범위 넘은 초상권 침해) 및 D유형(무단 전제)의 분쟁해결비율이 각각 90.5%, 80%로 언론

21) 참고로 90년대 법원의 언론관련 손해배상판결을 분석한 조준원 차장의 논문(각주 11 참조)에 따르면, 청구원인별로 원·피고로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 사건은 원고 승소율이 67.4%인 반면, 사생활 침해(사적사항 공표, 초상권, 음성권 침해) 사건은 승소율이 94.4%이며, 혐의자 또는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피의사실공표 사건은 76.2%에 이르고 있다.

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액을 합의하는 등 분쟁해결이 잘 된 반면, A-2유형(보도와 직·간접 관련 있는 업체의 상호 등을 노출)과 E-1유형(피해자·제보자 인적사항 공개)은 피해구제율이 50% 내외로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가 법원 판결과 달리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주로 종결되는 점과 아직까지 각 유형별로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기 통계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상당하다고 본다. 피해구제율이 저조한 유형을 보면 아직까지 언론사가 사건·사고보도 방법 및 취재관행에 있어 특정한 업체나 피해자의 초상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언론사로서는 일반인의 초상과 음성 또는 사건·사고·고발보도에서 공익성이 크지 않은 업체의 상호 등을 게재·방영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든지, 피해자 불특정을 목적으로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확실하게 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촬영 여부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뿐 아니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지와 동의가 있을 정도의 '명백하고 분명한' 동의여야 하며, C유형이나 D유형같이 안일하게 '동의를 한번 받았으니 괜찮겠지' 내지 '다른 매체에 이미 실린 초상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표 7〉 기타 인격권 세부 유형별 처리현황

유형		청구건수	합의 등 분쟁 해결건수(피해구제율)	
A	1	39	32(82.1%)	40(72.7%)
	2	16	8(50%)	
B	1	16	11(68.8%)	26(70.3%)
	2	21	15(71.4%)	
C		21	19(90.5%)	
D		10	8(80%)	
E	1	33	17(51.5%)	23(54.7%)
	2	9	6(66.7%)	
F		17	11(64.7%)	
G		8	6(75%)	
H		6	4(66.7%)	
계		196	전체 평균은 72.9%임	

V. 기타 인격권 침해기준 및 손해배상금액 산정 요소

1. '기타 인격권' 침해 기준과 위법성 조각사유

가.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른 기준

먼저 피해자 특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조정·중재사례와 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 특정의 기준으로 보도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변조 정도를 고려해서 주위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면 특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²²⁾ 특히 병원, 식당 등의 업소의 경우에는 입구, 유

22)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니품, 간판, 종업원의 모습 등이 노출되는 경우 업소를 이용한 고객이거나 주위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일반 사례와 달리 주의를 요한다. 그런 후에는 법익 침해의 첫 번째 위법성 조각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인터뷰나 사진촬영, 보도 시 촬영 대상자의 승낙 또는 동의 여부²³⁾ 및 동의 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사진과 보도 내용이 부정적인가 여부에 따라 기타 인격권 침해 뿐 아니라 명예훼손도 가능하므로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본다.

두 번째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도내용이 ①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면, 보도의 취지가 ②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보도 방법이 대체 불가능하게, ③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여부를 따져서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범죄보도피해자 신원 공개는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

나. 위원회 중재사례로 본 기준

위원회 중재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는 기타 인격권 침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특정 관련 중재결정

(앞 생략) 피해자의 특징을 보건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게임의 명칭뿐 아니라 게임 내에서 신청인이 소속하여 활동한 길드(소속 팀)의 명칭도 공개함으로써 동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게임 내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일어났던 길드 간 라이벌 내지 갈등 현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거주 지역, 직업, 연령, 성씨 등이 이 사건 기사에 함께 노출되었으므로 게임을 하는 주위 사람들이 기사에서 언급된 김 모 씨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 보이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6. 9. 27. 2006서울중재3(손배) 결정).

(2) 당사자의 동의 관련 중재결정

(가) (앞 생략)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한다고 볼 수 있는 공공적인 사항(영아유기사건) 또는 공공적인 인물(유력한 옹의자)에 관한 보도라 할지라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인과의 전화통화를 음성변조 없이 공개하는 것까지 공공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음성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아야 비로소 정당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2006. 10. 16. 2006서울중재6(손배) 결정).

(나) (앞 생략) 신청인이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면서 본인의 초상이 노출되는 것을 삼가 줄 것을 행사 업체에 요청하였고 사진 촬영 시 참가 회원 전체 사진의 촬영·게재는 동의했으나 동영상 촬영은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개별 초상을 촬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였으므로 신청인

23) 특히 집회나 시위의 경우 참가자들이 모두 목시적으로 초상사용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와 초상 본인이 시위에 앞장서거나 집회를 주도한 경우에만 동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한위수, 앞의 논문, p. 28.), 필자는 촬영자 또는 시위대상에 대해 '자발적이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집회참여자에 한정하여 동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2007. 4. 2. 2007서울중재4(손배) 결정).²⁴⁾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관련 중재결정
(앞 생략) 다음으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해 보건대 가족 중 미성년의 자녀가 가출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것을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사건 방송에서 나온 내용, 즉 가출한 자녀 및 모친이 상담지원센터에서 서로 애기하는 장면 등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사실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사건 방송이 신청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2007. 3. 20. 2007서울중재2(손배) 결정).²⁵⁾

2. 손해배상금액 산정 시 고려 요소

가. 법원과 위원회의 유사점과 차이점

인격권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논의는 편의상 별도로

로 하고, 주된 손해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만 놓고 볼 때, 실제 위원회나 법원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는 대체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 결과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적정하다는 식으로 금액을 정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내려지므로 일률적으로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²⁶⁾ 위원회에서 사안별, 중재부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으나 오랜 재판경험을 갖고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중재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중재부마다 변호사가 1인 이상 중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보면, 법원과 비슷한 고려 요소를 가지고 손해배상 합의 권고액 내지 결정액을 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만 위원회의 조정·중재사례들만 놓고 볼 때 법원과 다른 점을 들자면, 조정절차가 사실관계를 시시콜콜하게 파악하고 고의·과실 및 행위의 불법성 등 불법행위 요건과 효과를 일일이 따지는 정식 재판절차와 달리 양 당사자의 화해와 양보를 이끄는 것에 주력하는 점을 고려해서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액을 제시하므로 법원 위자료

24)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다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25)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2006다15922 판결).

26)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제2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법관의 재량과 심증에 의해 손해액이 정해지도록 하고 있다.

산정액보다 다소 융통성이 있고 낮은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²⁷⁾

나. 위원회 중재사례로 본 고려요소

다음은 위원회 중재결정문에서 밝힌 위자료 산정 고려요소이다.²⁸⁾

(1) 초상권 침해 관련 중재결정

(앞 생략) 신청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성명 및 사진의 게재 경위, 게재된 사진의 크기 및 그 인물에 대한 인식이 용이한 정도, 이 사건 기사의 사회적 주목 정도, 인터넷 사이트 등 유포의 정도, 이 사건 잡지의 성격, 언론사의 규모와 재정적 능력, 보도 후 사과문 게재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삭제 등 후속 조치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2006. 8. 30. 2006서울중재1(손배) 결정).

(2) 음성권 침해 관련 중재결정

(앞 생략)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무단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했을 뿐 아니라 녹음 내용이 음성변조 처리 없이 그대로 재생되어 방송된 점,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 순위 및 내용, 신청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 특성의 정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언론사 접촉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 및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2006. 10. 16. 2006서울중재6(손배) 결정).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관련 중재결정

(앞 생략)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및 해당 코너의 기획의도,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 순위, 신청인들의 연령, 신청인들의 얼굴 및 상반신 일부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한 점 등 신원 비공개 처리 정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의 인터넷 다시보기를 중단한 점과 이 사건 방송테이프 판매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방송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 및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2007. 3. 20. 2007서울중재2(손배) 결정).²⁹⁾

27) 법원과 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비교는 김동하, 앞의 논문, pp. 44 ~ 50.

28) 법원에서 위자료를 정하는 데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함석천,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5년 봄호, p. 50)

- (1) 전체신문에서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혹은 방영 부분이 전체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사건과 기사의 크기, 분량, 위치, 제목크기 등)
- (2) 언론사의 규모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중앙지 혹은 지방지, 지상파 혹은 케이블 방송, 인쇄부수, 인터넷 언론일 경우 접속자수 및 회원 수)
- (3) 원고의 사회적 지위(신청인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고려)
- (4) 유포의 정도(배포 혹은 방송 지역, 일간지, 주간지, 계간지 여부, 방영시간대, 사이트의 인지도, 판매부수, 시청률 등)
- (5) 보도 전 언론사의 확인 및 노력 정도(어느 정도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직접 인터뷰를 하였는지 등)
- (6) 보도 후 정황(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를 하였는지, 판매대기 중이던 신문을 수거하였는지 등)

29) 참고로 법원 하급심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위자료 금액 산정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직업, 사회적 지위(저명성), 피고 회사의 규모 및 공동피고 대표이사의 지위, 초상권 침해 양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2005. 9. 7. 2004가합84950 판결) (2) 원고의 직업, 사회적 지위, 원고의 초상이 촬영된 경위와 방송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용된 경위, 태양, 정도와 그 공개범위 및 그로 인한 피고들의 영업적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사정(2005. 9. 22. 2005가합2739 판결)

VI. 맺으며

지금까지 기타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각종 법규, 특히 언론중재법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기타 인격권 관련 조정·중재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하였으며, 명예 외의 기타 인격권 침해 판정 기준 및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을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언론중재법에 의해 위원회의 '조정·중재대상'이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도입되어 위원회의 '조정·중재범위'가 늘어난 것³⁰⁾뿐 아니라 위원회에 의해 구제되는 '인격권의 범위'도 확대되었다는 것이 언론중재법 시행의 큰 의의라 할 것이다.³¹⁾ 언론중재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3가지 조항인 인격권 보호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조항 및 조정 외 별도의 분쟁해결방식인 중재 조항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사건을 종국적이고도 신속하게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³²⁾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어 인권의식이 고양되고 경제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며 기술적으로 인터넷, 디지털카메라 등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유통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개인과 개인 간, 개인과 기업 간 등 사인 간의 분쟁에서도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언론중

재법상 인격권 규정뿐 아니라 위원회에서 축적되는 언론분쟁사례와 경험들이 언론분야를 넘어서 다른 민사 분쟁 사건의 기준이 되거나 다른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과거에 인격권 및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논의가 보도의 진실여부를 다루는 명예훼손 부문에서 주로 이뤄졌고, 논의 대상도 법원의 판례나 미국의 판례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위원회의 기타 인격권과 관련한 조정·중재사례가 점차 축적됨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인격권을 다루는 각종 연구 자료에서도 위원회 사례들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위원회를 위해 현행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조정실무상 고려할 만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언론중재법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 인터넷 신문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유사하게 현행 법 규정 해석상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인 손해배상사건에서 청구 상한액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청구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사건을 조정 절차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법에 위자료 상한액을 5천만 원 내지 1억 원으로 규정하는 방안, 위원회 규칙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청구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방안 등을 비교·검토하여 위원

30) 양삼승, “언론중재법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2005년 봄호, pp. 6 ~ 9.

31) 정기간행물법상 위원회를 ‘오보로 훼손된 명예’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정·반론보도’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언론중재법상 위원회는 ‘침해된 인격권’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중재부의 종국적 판정’을 통해 ‘전반적인 인격권을 보장’해 주는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법 시행 이후 07년 8월 말 현재 위원회에서 처리한 중재 사건 15건 중 14건이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사건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재의 장점으로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개인)신청인 입장에서 손해금 협의 부담 및 양보에 수반하는 감정 손상 없이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점과 언론사 입장에서도 분쟁을 법원까지 끌지 않고 위원회 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회가 운영하는 분쟁해결제도를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절차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조정실무 차원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을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 내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원에서 전문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위원회에도 기타 인격권 전문 중재부를 갖게 되면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당사자 만족도 역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 기존에 접수 처리된 '기타 인격권 침해'의 유형 분류 및 침해 판정 및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상담 및 조정·중재에 참고함과 아울러 법원 판례 동향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 외에도 당사자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의 장점인 '비정형적, 창조적 분쟁해결'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³³⁾ 예를 들어 해당 지면·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의 기사 또는 동영상의 삭제, 영상물 판매금지 조치, PR보도(포지티브 보도), 현물 지급(무료 구독 또는 언론사 출판 서적 지급), 무료 광고 게재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언론사에 대한 분쟁예방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크다. 사진기자, 방송카메라기자, 방송사 외주업체 PD, 편집부 기자 등에 대한 타겟화 된 교육을 통

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재 촬영하는 경우 명백하게 사전·사후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부득이하게 초상과 음성을 내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철저히 해서 주위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³⁴⁾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임과 아울러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원 자료(성명, 주소, 연령 등)를 얻는 것은 수사 담당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길이라는 점 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법원에 쉽게 다가가기 힘든 일반 국민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기 권리를 찾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언론으로부터도 공정한 중재자로서 신뢰도를 제고하여 인격권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1차적으로 해결하는 종합적인 인격권분쟁해결기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김덕철(2002).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민사상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하(2007, 9).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주제논문.
- 안상운(1995).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특히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3) 이 외에 조정제도의 장점으로는 ① 시간과 비용의 절감, ②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 ③ 자기결정권의 보장, ④ 감정과 기분의 존중, ⑤ 유대관계의 유지, ⑥ 탄력적이고 비정형적 절차, ⑦ 선례로부터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 외 조정의 효력", <월간법조>, 법조협회, 2004년 6월호, p. 47).

34) 요즘은 인터넷 포털과 블로그상 게시판의 발달로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했더라도 주위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양삼승(2005, 봄). “언론중재법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 엄동섭(1998, 여름).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 조근주(2000). “TV보도 프로그램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준원(2000, 가을). “1990년대 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
- 한위수(1999, 가을).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언론중재』.
- 함석천(2005, 봄).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언론중재』.
- 황정규(2007, 9). “언론중재제도의 운영현황과 평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 주제논문.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상담팀(2006).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제도연구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2집~제14집(2005 ~ 2007).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팀. <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2005 ~ 2007.

사이버상에서의 개인권익의 침해와 구제방안

한진만

강원 중재위원,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10일 춘천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진만 위원(강원 중재위원,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사이버상에서의 개인권익의 침해와 구제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강원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형일 중재위원(변호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사이버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인쇄매체와 전파매체로 양분되어 각각의 매체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가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낙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퇴색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범죄 형태를 초래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와 인격권(reputational right) 보호와의 갈등이다. 사이버 공간(Cyberspace)은 더 이상 가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현실(reality)과 가상(virtual reality)의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사이버 공간은 실제의 공간이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은 더 이상 가상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 공간에서의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이

재진, 2000).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인 사이버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 중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내용과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중점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이버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1)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한다. 법인에게도 명예가 인정되는데,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킨다.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혐오 또는 경멸을 받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김재형, 2004).

인터넷의 영향력 확장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주제논문

정보나 표현이 오프라인 언론기관을 통해 공표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기관의 진실확인 의무와 언론기관의 편집권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전파행위를 넘어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언론기관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도 통상 오프라인 언론기관이 인터넷 언론기관보다 그 신뢰도가 높고 그 표현의 기억도 오래 유지되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도 더 커진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언론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1) 판례

가.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법 2006.11.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손해배상(기)】 : 항소)

【판결요지】

- [1]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 의 연관 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물이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2] 국회의원의 발언 등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이 그 본질상 의회 내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인정된 특권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국회 외에서 행하여진 발언 등의 경우는 면책특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앞으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거나 그 발언 내용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와 동일하여 발언 직후 국회 출입기자들에 의하여 그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특권의 범위

에 포함될 수 있는 '직무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

- [3]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떼값 명목의 돈을 받은 검사로 특정 검사의 실명과 직책 등을 기재한 글을 게재한 것이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저작권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뉴스를 접하거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을 통해 각종 저작물의 내용을 검색·다운로드·업로드·전송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매개하는 자이기에, 온라인서비스이용자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텍스트, 데이터, 프로그램, 이미지 등의 콘텐츠 내용상 각종 표현행위에서 저작권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킨다(이동훈, 200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한 경우 그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되어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버에서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내용으로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명예훼손의 경우와 같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행위에도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가 된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인터넷 특성상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보호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 판례

가.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인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음악저작권 침해를 혐의

로 기소. 2002년 7월 12일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용 결정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부는 '소리바다는 인터넷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관여의 정도로 미루어 간접적 책임이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힘.

* UCC로 인한 저작권의 문제

최근 인터넷사업자가 아닌 이용자가 직접 만드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가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UCC는 전문저작자가 아닌 일반인에 의하여 주로 작성되어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에 의하여 이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로 텍스트나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UCC도 하나의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UCC제작은 저작물의 창작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UCC제작자 자신이 순수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제작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되어 저작권법상의 아무런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UCC가 아무런 창작성을 가미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문제를 중심으로 UCC제작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이대회, 2007). 첫째로는 타인의 저작물 전체 또는 일부를 그대로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는 경우로서 현재 저작권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에 창작성을 가미하여 2차 저작물로서 UCC를 제작하지만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셋째로는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였지만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UCC의 종속성이 인정되어 문제가 되

주제논문

는 경우이다. 넷째로는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였지만 UCC와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나 중속적 관계가 부인되는 경우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UCC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첫째로서 UCC와 관련된 주체간의 상호관계에서 파생하는 문제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는 일찍이 대법원 판결(1998. 9. 4. 선고 96다11327)에서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결국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자료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영석, 2003, 560쪽).

- 첫째, 시스템 운용자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둘째,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경우(정보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행위 포함)
- 셋째, 미디어 운용자가 가입자들에게 개인의 신상자료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
- 넷째, 환경감시를 명분으로 여러 정부기관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거리낌 없이

이용하는 경우

(4) 초상권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진 등을 허락 없이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2005년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1) 판례

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은, 피고 방송사가 원고를 직접 출연시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영업에 이용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에는 동의하였지만, 초상의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하여, 피고들이 보험사들에게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원고의 사연을 소재로 책자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은 원고가 처음에 동의를 한 때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언론중재 2005년 겨울호 138면).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은, 학원업, 연예인 대리, 영상·음반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회사에서 투자자모집을 위한 광고전단지에 유명한 연극배우 겸 영화배우인 원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

용한 사안에 대하여,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은 유명 코미디언인 원고 모씨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동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하여, 그 캐릭터 옆에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만들어서 유행시킨 유행어인 “...를 두 번 죽이는 것이요”, “...라는 편견을 버려” 등의 문구를 함께 게재하여 놓고, 이동통신회사의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로 이 사건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코미디언으로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1980년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반론권 제도가 도입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으로 1987. 11. 28 언론기본법이 폐지된 가운데서도 언론중재제도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존속되어 계승되었고, 언론중재제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과 더불어 언론에 의한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여망을 바탕으로 언론중재법이 2005. 1. 27 제정, 공포되고 2005. 7. 28 부터 시행되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하여 종래의 언론중재제도와 달라진 부분이 많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

분은 다음과 같다.

(1) 언론 조정·중재 대상 언론으로 인터넷 신문 포함

언론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을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까지 하였다. 그러나 포털 뉴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 뉴스를 언론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 포털 뉴스를 언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포털 뉴스는 뉴스를 스스로 생산한다기보다 단순히 매개만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인터넷 신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로써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간편·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뉴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의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의 충실을 도모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결국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관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1) 언론으로 보는 입장

첫째, 언론관계법은 아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언론의 개념에 따르면 포털 역시 인터넷 언론에 해당한다. 둘째, 뉴스의 소비라는 측면에서 포털은 주요 소비처가 되었다.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3대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수가 기존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언론사닷컴의 이용자 수를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셋째, 뉴스의 생산·공급 측면에서도 포털은 언론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편집’과 ‘배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주제논문

2)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포털은 뉴스 유통사일 뿐이지 뉴스생산자(언론사)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특히 현행법상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3) 법원의 입장

(2006. 9. 8. 선고 서울남부지법 2005가단18300 판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당 포털에도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로 인하여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판결에 불과하지만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가장 보수적인 법원의 시각에서도, 이제 포털이 기사를 생산하는데 관여하지 않고 단지 매개만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피해의 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 창설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즉 언론사의 고의성과 과실과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어서, 설사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도 언론사가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한 허위보도를 시정할 방법이 없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함으로써 비로소 피해회복이 가능하게 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3) 조정·중재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까지 확대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은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의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만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언론중재법으로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에 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4) 고유의미의 중재제도 도입

종래 정기간행물법 및 방송법 등에서는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종래의 ‘중재’를 ‘조정’이란 용어로 바꾸고 제24조 제1항에서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에서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고유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언론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중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 졌음은 물론 언론중재제도의 명칭이 실질과도 부합하게 되었다.

(5)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종래 구 정기간행물법 제19조 제1항은 “중재위

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 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추후보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함으로써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한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

택하였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에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였다. □

토 론

사 회 박 형 일
변 호 사

시진국(춘천지방법원 판사) : 오늘 토론회를 지켜 보면서 사법부가 고민해야 할 많은 과제를 떠안는 것 같아 시종일관 마음이 무겁다. 특히 UCC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은 법률분쟁이 예상되는데 케이스가 누적되다보면 좀 더 합리적인 분쟁 해결방안도 함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제공자를 언론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발제자는 전여옥 의원 관련 판결을 인용하여 최근의 법원 판결경향을 소개했는데 이 사건 말고도 명예훼손적인 표현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을 명백히 물은 서모 씨 사건도 법원의 최근 경향을 잘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UCC가 저작권을 침해했느냐의 문제는 가공하지 않은 음악과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소리바다나 벅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또 다른 경우다. 그 자체가 하나의 창작물인 UCC는 가공을 거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바,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환(춘천KBS 제작부장) :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회 각계의 의견이나 제보가 이제

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나 제작진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며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당한 적이 있다. 이해당사자가 이의제기한 내용은 보도의 양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왜 방송에 내보내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당시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여부를 떠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분량으로 내보낼 것으로 조정했고 우리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당사자들이 문제 삼는 보도내용이 전혀 하자가 없음에도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으로 조정해주는 것을 보면서 추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사실관계를 명백히 따져주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향후 조정과정에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결론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백히 해주는, 즉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양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공병진(강원일보 고충처리인)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만

토 론

들어진 제도가 언론중재제도라는 점에 공감한다. 또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손해배상제도를 언론중재법에 명시한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제도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으며 손해배상 조정 규모나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김미영(강원일보 사회부 차장) : 온라인 매체의 급속한 발달은 기존 오프라인 매체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낸다. 일례로 오프라인 매체가 익명처리하여 기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사가 온라인 매체에도 게재되면서 네티즌들에 의해 실명이 밝혀져 신분이 노출되고 특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명예훼손 소송으로 비화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뉴스제공자와 포털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김혁면(춘천MBC 보도제작부장) :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최근 우리는 수해 실종자 가족이 슬퍼하는 영상을 3초 정도 그리고 살인사건의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영상을 3초 정도 내보낸 적이 있다. 이러한 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

최근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비리를 고발하는 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보도하려면 해봐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곤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될 경우 답변서를 만든다든가 혹은 출석해서 변론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기자들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뉴스 또는 다른 취재원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기사화했다가 잡음이 날 것이 두려워 기자들끼리 묵시적으로 취

재를 포기하고 뉴스 대상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

이병남(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 : 언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진이나 방송 화면을 내보낼 경우 최대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자료로 일관하고 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용하는 것이 언론과 사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 UCC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실에 기반하여 제작한 UCC의 경우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UCC를 규제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규제하는 장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노현정 아나운서와 박지윤 아나운서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사회문제로 비화된 적이 있다. 당시 당사자들은 해당 포털사이트에 기사삭제를 요청했는데 노현정 아나운서의 경우는 삭제되었지만 박지윤 아나운서의 경우는 삭제되지 않아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삭제의 기준이 궁금하다. 또한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기사삭제를 요청할 경우 어떠한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이정원(춘천지방법원 판사) : 인터넷상의 기사삭제와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운영자가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경우를 개인적으로 접해본 적은 없다. 별도의 기사삭제 절차가 없다고 해서 가처분절차를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지윤 아나운서 사건의 경우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공표된 경우로 사생활침해가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만화의 성(性) 묘사를 외설물로 인정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

노골적인 성(性) 표현이 있는 만화를 판매했다고 출판사 「松文館」의 사장인 貴志元則 피고를 외설도화 판포(頒布)죄로 재판 중인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6월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 만화의 성 묘사를 외설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만화가 외설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처음으로 다투어진 재판은 피고를 유죄로 판결, 150만 엔의 벌금을 명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또한 외설물의 반포를 처벌하는 형법 175조가 위헌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도 물리쳤다.

「松文館」이 2002년에 출판한 만화책 「밀실」(密室)의 외설여부를 둘러싼 재판에서 도쿄지방법원은 2004년 1월 13일 貴志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2005년 6월 16일의 도쿄고등법원 2심 판결은 피고를 유죄로 판시했으나 만화책의 성 묘사는 “실사(實寫) 표현물의 외설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 벌금 형으로 감형했었다.

(『신문협회보』, 2007년 6월 26일자) □

슈퍼모델 Caprice, 『Sun』 지에 소송 제기

슈퍼모델 Caprice가 『The Sun』지와 해당 신문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십만 파운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aprice는 “진료중인 Caprice”과 “Caprice 최근 Priory

병원 가다”라는 1면 헤드라인 기사와 2면, 3면에 연속 게재된 기사들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The Sun』지는 지난 2월 20일자 기사를 통해 Caprice가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었다.

Caprice는 이튿날 “Caprice 스키 활강코스에 있다”와 “모델, 스키 타기 위해 치료 관두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 중이다.

Caprice는 기사가 자신을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이전부터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인기가 한참 떨어진 인물”로 묘사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 “Priory병원에서 전적으로 치료를 계속 받지 않고 맘 편하고 무책임하게 스키나 타러 갔으며 의심의 여지없이 술독에 계속 빠져있을 거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Caprice는 기사가 그녀의 개인적·직업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Caprice는 “법원이 기사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News Group International 발행인이 나에게 계속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유사 기사의 보도 금지 명령과 함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Press Gazette 2007년 6월 7일자) □

2심에서도 스냅사진의 저작권 인정

- 일본 도쿄고등법원 판결 -

자신이 촬영한 전(前) 남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서적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이 출판원인 角川그룹 퍼블

리싱(구 角川서점)과 저자를 상대로 출판금지 및 11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본 知財고등법원 제2부는 “스냅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판시, 1심에 이어 출판금지를 인정하고 배상액도 45만 엔에서 85만 엔으로 증액했다. 상고가 없어 판결은 확정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미국 출신의 저널리스트인 보버트 파이팅 씨의 저서 「도쿄 아웃사이더즈 도쿄 언더월드Ⅱ」로, 2007년 1월 16일의 도쿄지방법원 판결은 동 서적의 출판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사진의 무단복제물을 반포한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었다.

(『신문협회보』, 2007년 6월 26일자) □

월간지 『Cicero』에 대한 수색·압수는 위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법정은 지난 2월 27일, 7대1로 월간 평론지 『Cicero』 편집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압수 수색의 계기는 동지 2005년 4월호에 게재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테러리스트 ‘아브무사브 자르카위’에 대한 기사 때문이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S가 기고한 이 기사에는, 표지에 「비밀사항」이라고 적힌 연방형사국의 보고서(04년 9월 6일자)의 상세한 인용(연방정보국이 감시하고 있는 자르카위의 몇 개의 전화번호, 독일 내 지원자의 여러가지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방형사국은 05년 6월 23일 직무상의 비밀누설혐의로 고발했으나 내부조사에서조차도 누설한 직원을 찾아내지 못했다. 형법 353b조 1항에 의하

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 그것에 의해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협한 공무원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포츠담 검찰국은 8월 31일 기사의 집필자 S와 『Cicero』편집장 W에 대해 비밀누설방조의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으며, 포츠담 구법원은 검찰국의 요청에 따라 베를린 시내의 S의 자택과 포츠담 시내의 『Cicero』 편집부에 대한 압수 수색을 명했다.

압수 수색은 9월 12일에 있었으며, 외국출장 중의 S의 자택에서는 유명 정치인 아들의 탈세사건, 구(舊) 동독기업민영화와 관련된 정계 의혹 등 다수의 자료들이 압수되었다. 편집부의 수색에서는 편집장 W에 의해 당해 기사와 관련한 CD-ROM과 전자메일의 프린트 아웃이 임의로 제출되었다. 또 W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사를 담당했다가 퇴직한 편집자가 사용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가 복사되었다.

W는 압수 수색을 인정한 포츠담 구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으나 포츠담 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 당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저널리스트에게 공표를 이유로 비밀누설방조로 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컴퓨터에 보존된 데이터를 복사·압수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압수 수색을 인정한 포츠담 구법원의 결정과,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포츠담 지방법원의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하드디스크 속의 데이터를 복사하여 압수한데 대한 항고를 기각한 포츠담 지방법원의 결정은 실효적 권리보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파기되었으며, 사건은 비용에 관한 판단을 위해 포츠담 지방법원에 반려되었다.

(『신문연구』, 2007년 6월호 pp. 52~55) □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어머니의 수술을 거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8
 청구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 정○○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재부 : 대구중재부
 접수일 : 2007. 7. 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신문 : 『병원서 임의 폐기처분 말썽』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1일자 10면)

내 용 : (전략) 정 씨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A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것은 지난해 5월 16일. 신체의 일부분이 떨어져나간 채 병원으로 실려 온 정 씨의 어머니는 뇌사판정을 받았다. (중략)

이에 정 씨는 입원한 지 10개월만인 3월 13일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간호하다 14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이후 정 씨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A병원에 “입관할 때 함께 넣으려고하니 보관 중인 어머니 신체의 일부분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청천병력같은 얘기를 들어야 했다. 보관 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했다는 것. 정 씨는 “장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대형병원밖에 없어 이곳에 맡겨둔 것인데 보관 기한이 지났다고 가족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21일자 10면 『병원서 임의폐기처분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A병원이 접합수술을 위해 보관했던 환자의 신체일부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처분했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수술이 가능해졌을 때 가족 측이 수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A병원 측의 변론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인이 된 환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였고, 가족측이 수술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 수술비용문제로 가족측이 수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8,000,000원

합의사항 (1)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1일자 10면 『병원서 임의폐기처분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A병원이 접합수술을 위해 보관했던 환자의 신체일부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처분했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수술이 가능해졌을 때 가족 측이 수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A병원 측의 주장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인이 된 환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였고, 따라서 가족측이 수술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수술비용문제로 가족측이 수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신문 10면에 상자기사로 2007년 7월 13일까지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16포인트 고딕활자로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12포인트 명조활자로 한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2)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1일자 10면 『접합수술

위해 보관했던 환자 신체 일부 병원서 임의폐기처분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수술이 가능해졌을 때 가족 측이 수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A병원 측의 주장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고인이 된 환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였으므로 가족측이 수술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기에 비용문제로 수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며 병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신문 10면에 상자기사로 2007년 7월 13일까지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16포인트 고딕활자로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12포인트 명조활자로 한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2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부정입찰로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뒤 하도급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경북문화신문

중재부 : 대구중재부

접수일 : 2007. 7. 3

처리결과 : 취하 (정정)

합의 (반론)

보도내용

경북문화신문 : 『“하도급 미끼 역대 금품수수”』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8일자 15면)

내용 : 포항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일월~문덕 간 건설공사의 시공을 맡은 원청업체 S토건이 하도급 업체의 공사 발주와 관련, 금품수수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더욱이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D건설사에 회장으로 있는 정모씨가 S토건의 회장 아들 J모씨와의 친분을 이용, 입찰에 부정을 저질러 140억 원 짜리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명의 건설업자들로부터 공사를 미끼로 역대 돈을 받아 챙기는 등 S토건 본사 간부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S토건은 공개 입찰에서 총사업비 435억6천900만 원에 일월~문덕 7km구간의 국도 대체 우회 도로를 낙찰 받아 지난 2004년 11월께 착공한 문제의 D건설사 정모 회장에게 140억 원짜리 토목공사에 대한 하청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도 D건설사 정모 회장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이모씨는 D건설사의 정모 회장의 지시로 명절 때마다 송이버섯, 소갈비 등 값 비싼 선물을 S토건 서울 본사 간부들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D건설사 회장 정모씨는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최모씨 등으

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의 현금을 받았으나 실제 하청 계약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D건설사에 계약을 맺도록 주선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공사 원청 업체 S토건이 당초에 입찰로 하도급에 낙찰된 J모 건설회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배제시키고 정모 회장이 있는 D건설사에 하도급을 준 것은 거액의 로비 자금이 전달 됐기 때문이라고 피해자 이씨가 주장했다.

피해자 이씨는 정 회장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D건설사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받고 하도급 업체를 전격 교체해 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목 : 포항 일월~문덕 도로공사시공, S토건 하청, D건설 “하도급 미끼 역대금품수수”
- 내용 : 본지는 지난 6월 28일자 15면 『“하도급 미끼 역대 금품수수”』 제하의 기사에서 D건설사의 정모 회장이 포항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일월~문덕 간 건설공사의 시공을 맡은 S토건에 거액의 금품 로비를 하여 하도급 공사를 낙찰받고, 본 공사를 미끼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역대 돈을 받아챙겼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D건설사는 당초 하도급에 낙찰된 J모 건설회사가 회사 내부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추후 정상적인 경쟁 입찰 참여로 도로건설공사를 낙찰받았으며, 정모회장이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일월~문덕 도로공사 하도급 부정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6월 28일자 15면 『“하도급 미끼 역대 금품수수”』 제하의 기사에서 D건설사 회장 정모씨가 포항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일월~문덕 간 건설공사의 시공을 맡은 S토건에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여 이미 입찰경쟁에서 하도급 공사 낙찰을 받았던 J건설을 따돌리고 140억 원짜리 토목공사 하도급을 따낸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건설 정모 회장은 당초 J건설이 약 140억 원에 이르는 하도급 계약을 S토건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J건설의 회사사정으로 인해 공사를 포기해 D건설이 이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따라서 마치 D건설이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여 S토건으로 하여금 하도급 업체를 변칙적으로 변경하게 한 것처럼 보도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은 D건설이 S토건으로부터 따낸 하도급 부분은 총 140억 원의 공사 중 약 17%에 해당하는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 24억 원에 그치므로 S토건이 정 회장에게 140억 원짜리 토목공사 전부를 하도급 준 것처럼 보도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 회장은 토목공사 하청계약을 미끼로 공사업자 몇몇으로부터 1억5천여 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니다. 덧붙여, 정 회장은 자신의 지시로 ‘S토건 서울본사 간부들에게 비싼 선물들을 전달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북문화신보 15면 우측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2007년 7월 13일까지 게재하되 제목(일월~문덕 도로공사 하도급 부정 관련 반론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재목(피해 주장 **李모씨** ‘140억 공사 입찰비리’ 폭로)과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북문화신보 : 『반론보도문 포항 일월~문덕도로공사 시공, S토건하청, D건설 “하도급미끼 역대금품수수”』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3일자 2면)

내 용 : 경북문화신보는 지난 6월 28일자 사회면에 위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피해주장 **李모씨** 140억 공사입찰비리 폭로』 제목의 기사에서 D건설 정모 회장은 입찰은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하였고 다른 어떠한 입찰부정도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북문화신보는 정모 회장이 공사를 미끼로 공사업체 관계자 최모씨로부터 1억5천만 원의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또한 당초 하도급 낙찰된 J건설은 공사수행중 문화재 및 보상지연으로 공정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어 원청사인 S토건과 협의하여 공사를 자진 포기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원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거나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 정정보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7. 7. 18. 자 판결(2006가합102784)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원고)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2006. 10. 20. A1면 『조선일보 또 세무조사』 제하의 기사 및 같은 날 A2면 『“컴퓨터 돌려보니 조선일보 뿔혀”』 제하의 기사, 2006. 10. 21. A2면 『“종합지 매출 1위라 뿔었다” 선정 이유 하루 만에 뒤집어』 제하의 기사 및 같은 날 A35면 『5년 만에 다시 조선일보 덮친 세무조사』 제하의 사실 등을 통해 원고가 피고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말을 바꿨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이중 잣대가 있음을 시인했으며 2001.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인정한 전군표 국세청장의 2006. 7. 인사청문회 발언을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1. 세무조사 때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뒤집었고 국세청의 전산성실도분석시스템이 국세청 내에서조차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허위의 사

실을 적시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의 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본문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문제 삼은 청장들의 발언에 대한 표현과 기사의 일부 표현은 어느 정도의 평가 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에서 그 기초되는 청장들의 발언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점, 전산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세청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한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도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거나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102784 정정보도청구

원 고 : 서울지방국세청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대표자 박 찬 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산
 담당변호사 전 태 진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번지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변 론 종 결 : 2007. 5. 23.

판 결 선 고 : 2007. 7. 18.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선일보 A1면 오른쪽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체, 내용은 다른 본문화자 크기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위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 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세청 산하의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조세행정기관이고, 피고는 일간신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2006. 10. 20. A1면에 <조선일보 또 세무조사>라는 제목 및 「YS·DJ정부에 이어...스포츠조선 포함」이라는 부제 아래 별지2 기재 기사를, 같은 날 A2면에 <컴퓨터 돌려보니 조선일보 뿔혀>라는 제목 및「세무조사 줄이겠다 해놓고 신문사 납세 1위를 또 조사 여권인사, 몇 달 전부터 예고」라는 부제 아래 별지3 기재 기사를, 2006. 10. 21. A2면에 <종합지 매출 1위라 뿔었다> 선정이유 하루 만에 뒤집어>라는 제목 및 「다음 대상은 매출기준 아닐 수도」 이중 잣대 자인, 「정치적 의도 없다」면서 선정 구체기준 공개거부」라는 부제 아래 별지4 기재 기사를, 같은 날 A35면에 <5년 만에 다시 조선일보 덮친 세무조사>라는 제목의 별지5 기재 사실을 각 게재하였다(위 사실에는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 중 2001.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국세청장이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사실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사실은 이미 위 기사들에서 적시된 것으로서 그 정정을 위하여 의견표명이 대부분인 위 사실을 별도로 정정보도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바, 아래에서는 위 기사들만을 통틀어 '이 사건 보도' 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 10. 19. 조선일보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전산 선정(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조사 대상을 고르는 것)의 결과', '컴퓨터 추첨', '전산 추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②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0. 20.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하여 "(조선일보가) 종합지 매출 1위라 뿔었다"고 말을 바꿔 선정이유를

하루 만에 뒤집었고, 다음번 대상은 매출액이 기준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해 잣대의 이중성을 자인하였다. ③ 전군표 국세청장은 2006. 8.경 '따뜻한 세정 결의대회'를 통해 "세무조사건수를 줄이겠다"고 하였으나, 두 달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꿔 조선일보에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④ 전군표 국세청장은 2006. 7. 인사청문회에서 2001.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인정하였으나,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 세무조사 때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전군표 국세청장의 발언을 뒤집었다. ⑤ 국세청의 전산성실도분석시스템은 국세청 관계자가 "전산 분석으로 선정된 업체에 조사를 나가보면 폐업했거나 부도난 업체가 적지 않다"고 말하는 등 국세청 내에서조차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다(원고 주장의 위 각 사실을 이하 '① 내지 ⑤ 사실'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보도를 정정하는 내용의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다'고 적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에서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우선 살피건대,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의 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본문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

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갑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① 사실 관련)

(가)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제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7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
 - ③ 수시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필요시 선정한다.
 - ④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 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8조(신고성실도 평가)
- ①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소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

관리정보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②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성실도 분석 시 평가요소 및 가중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06. 10. 19. 피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조사사유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 제5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박찬욱 청장의 2006. 10. 20.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요지(②사실 관련)

(가) 언론사도 일반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있어서 영역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일반 세무조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2001.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 중앙 언론사의 경우는 세무조사가 없어 5년이 막 지나고 있는데, 2001. 이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지방 언론사의 경우는 각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왔다.

(나)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장기간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3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는 4년에서 7년 사이의 주기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전산에 의한 신고성실도 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조사 기간이 4년 내지 7년에 미치지 않아도 선정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탈세제보라든지, 각종 과세자료, 각종 정보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우이다. 이번 언론사 조사대상으로 발표된 3개사 및 계열사의 경우는 앞의 두 가지 선정기준, 즉 장기 미조사에 대한 부분과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다고 판정되어 선정된 것이다.

(다) 1980.부터 법인세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된 이래 신고성실도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는

바, 그 선정은 납부세액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율, 신고 소득율, 소비성 경비율 등 20여개 이상 평가요소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임의성이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라) 이번 정기선정에서 다수의 언론사들이 전산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 및 장기 미조사를 사유로 선정되었는바, 작년 말부터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3차 조사까지 끝나게 된 현 시점에서 조사인력의 여유가 있어서 선정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마) 다만 세무조사 순서에 있어서는 객관적 우선순위 기준으로서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방송사 세 유형으로 나누어 각 규모(매출액 기준)가 제일 큰 순위로 먼저 3개사를 동시에 선정하였다. 다른 정기 선정된 언론사도 모두 조사를 할 것이다.

(바) 나머지 언론사에 대한 조사시기는 조사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이번에는 조사인력에 여유가 있어 세 유형 중 하나씩 했지만, 다음번에도 이번에 정한 유형과 순서대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전군표 국세청장의 발언 등(③, ④ 사실 관련)

(가) 전군표 청장은 2006. 7. 13.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2001.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의견을 묻는 일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2001.에 23개 언론사를 동시에 세무조사 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국세청이 2006. 8.경 배부한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는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선정대상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축소인원의 대부분을 외형 3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축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되, 대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인원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

하였음'이라고 조사대상 선정규모의 대폭 축소와 그 축소범위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주장의 위 ① 내지 ⑤ 사실의 허위성 인정 여부

(1) ① 사실

이 사건 보도에서 수차례 '전산 선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과 위 표현과 더불어 사용된 '전산 추첨'과 '컴퓨터 추첨'에서 '추첨'이라는 단어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으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조서(을 9호증의 5)에도 원고측 대리인이 위 중재위의 조정심리기일에서 "선정은 '전산추첨'에 의한 것이었지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실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② 사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기세무조사의 대상 언론사를 선정한 기준과 선정된 언론사 중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될 언론사를 선택한 기준을 구별하여 그 기준을 밝히면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 중 피고가 세무조사를 먼저 받게 된 기준이 '매출액'임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 중 다음번 조사를 받게 될 대상은 조사인력의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다음번에도 이번에 정한 유형과 순서대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 중 최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선정된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언론사들이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세무조사의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보다는 그 조사 순서를 정한 기준이 더 관심사 일 수밖에 없어 보이며, 또한 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는 예외 없이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의 순서 역시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바, 위 박찬욱 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다음번에도 이번에 정한 유형과 순서대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선정이유를 하루 만에 뒤집었다(위 박찬욱 청장의 기자회견 이전에는 언론사 중에서 피고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유로 '전산 선정'의 기준만이 제시되어 있었을 뿐이다)', '잣대의 이중성을 인정했다'고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과 위 표현이 어느 정도의 평가 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사실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③ 사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2006. 8.경 밝힌 세무조사 대상의 축소방침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인에 대한 선정인원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보도에서 위 사실과 관련하여 적시한 내용은 '국세청이 정기조사를 줄인다고 밝힌 지 두 달도 안 돼 5년 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은 언론사를 다시 조사하려는 것은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관련 발언을 인용한 것인바, 위 발언의 취지는 비록 피고를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의 축소방침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축소방침을 밝힌 지 불과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기도 전에 피고를 포함한 언론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보도에서 위 발언의 인용을 통하여 원고가 국세청에서 두 달 전에 발표한 축소방침을 뒤집어 피고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 역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④ 사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전군표 국세청장은 2006. 7. 13. 인사청문회에서 '2001.에 23개 언론사를 동시에 세무조사 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도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의 위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를 당시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이어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역시 그대로 인용하면서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발언이 전군표 국세청장의 위 발언을 뒤집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위 청장들의 발언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도에서 그 기초되는 위 청장들의 발언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이상이 부분 역시 허위사실의 적시라거나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5) ⑤ 사실

위 사실은 전산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세청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그 정정을 구하는 위 ① 내지 ⑤ 사실이 허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최인화 □

일본 판결

Y가 발행·판매하는 주간지의 기사가 X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성·상당성도 없다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원 고 : X

피 고 : 주식회사 Y

등 대표취체역 Z

도쿄지법 2004(7) 제15900호 손해배상청구사건

2005. 11. 11 민사 제25부 판결, 일부 인용·항소

2005년 9월 2일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해 33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4년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원고의 다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3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을 할 수가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1. 피고는 원고에 대해 1,1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4년 9월 7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는 별지1 기재의 사죄문을, 별지2 기재의 방법으로 게재하라.

제2. 사안의 개요

1. 본건은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찌로’(小泉純一郎, 이하 「고이즈미 수상」이라 한다)의 비서관인 원고가, 피고가 발행·판매하는 주간지인 ‘주간OO’ 2004년 5월 20일호에 게재된 「수상 비서관의 『모락 ‘리크’(リーク・leak)』에 패배한 『‘후쿠다’(福田)』」라는 제하의 기사에 의해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한 위자료, 변호사 비용 등 함께 1,100만 엔 및 민법 소정의 연 5부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과 함께 ‘주간OO’지에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사건이다.

2. 다툼이 없는 사실 등 (당사자가 다툼을 명백히 하지 않은 사실을 포함한다).

(1) 당사자

① 원고 : 원고는 1972년 고이즈미 수상의 첫 당선과 함께 그의 비서가 된 후 ‘다케시다’(竹下)내각, ‘우노’(宇野)내각, 제2·제3차 ‘하시모토’(橋本) 내각에서 후생대신 비서관을 했으며, 2001년 고이즈미 정권이 탄생하면서 수석비서관에 취임했다.

② 피고 : 피고는 서적 및 잡지의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며, 주간지 ‘주간OO’을 발행, 판매하고 있다.

(2) 본건기사의 게재

피고는 2004년 5월 13일 발행의 주간지 ‘주간OO’ 5월 20일호(이하 「본건잡지」로 한다)에 다음과 같은 게재를 포함한 기사(이하 「본건기사」로 한다)를 게재했다.

① 본건잡지 28쪽 1단에서 2단에 걸친 소재목 부분 「수상비서관의 『모략 ‘리크’(リ-ク)』에 패배한 『‘후쿠다’(福田)』」

② 본건잡지 28쪽 1단에서 2단에 걸친 기사요지의 기재

“진짜 적(敵)은 집안에 있다 - ‘세익스피어’가 수 없이 묘사한 궁정 내의 계략은, 인간 내면의 심리를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번에 세간의 이목을 크게 집중시킨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의 사임극도 또한 그와 같은 것. 「관저(官邸)의 ‘히틀러’」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을 실각시킨 것은, 당신 쪽 인물의 모략이었던 것 같다. 놀랍게도 ‘후쿠다’ 씨의 연금미납정보를 주간지에 ‘리크’한 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측근 중의 측근, X 수석비서관이었다고 한다”.

③ 본건잡지 29쪽 1단 짜리의 기사의 기재

“그러면, 이번의 사정에 관해, 미납기사가 보도된 경위를 알고 있는 관계자가 해설한다. 「X씨는 지금까지 4번이나 후생대신을 지낸 고이즈미 씨 아래에서 정무비서관을 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후생노동성에는 독자적인 굵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그것을 활용하여 정보를 입수한 것 같다. 그런데 ‘후쿠다’ 씨의 미납기간을 이미 밝혀진 것 이외에 또 알게 되었으며, ‘후쿠다’ 씨를 추궁하기 위해 이 정보를 ‘리크’한 것이다.」 바로 ‘오세로’에 등장하는 간신투의 계략인 셈이다”.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1) (본건기사의 게재에 의한 원고의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유무)에 관하여

(1) 본건기사는, 원고가 후생대신의 정무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후생성 내에 갖고 있는 독자적인 인맥을 이용하여 고이즈미 정권 내에서 대립관계에 있었던 ‘후쿠다’ 전 관방장관의 연금미납정보(본건미납정보)를 입수하여 동 장관을 실각시키기 위해 이를 주간지에 누설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리고 원고의 상기 누설은 ‘후쿠다’ 전 관방장관을 실각시키기 위한 모략이며, 원고는 그러한 모략을 획책한 간신(奸臣)같은 자라고 논평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에 의하면, 원고가 내각총리대신의 비서관이라는 공적입장에 있으면서 타인의 연금미납기간이라는, 통상적으로는 알 수 없고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될 정보를,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입수, 자기와 대립관계에 있는 자의 실각이라는 사적(私的) 목적 때문에, 그 정보를 주간지에 누설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기사의 게재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 점에 대해, 피고는 정치의 중추에 있는 관방

장관이 이미 알려진 것 이외에도 국민연금미납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공공성이 있는 사실이고, 그러한 사실의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누설하는 것은 하등 비판 받을 일이 아니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기사는, 원고가 후생대신 비서관 당시 구축한 인맥을 이용, 후생성 관계자로부터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 관련된 본건미납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하여 주간지에 누설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그곳에 적시된 본건미납정보의 입수방법은, 자기의 인맥을 이용한 부정행위라는 사실과 더불어 「리크」한다는 것은, 알려질 리가 없는 비밀이나 정보 등을 특정의 의도아래 누설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부정행위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의도가 '후쿠다' 전 관방장관을 실각시키려는데 있었다는 적시는, 독자에 대해 원고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입장에 있는 자를 실각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수단까지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 관련 있는 본건미납정보를 공표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사실에만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3) 피고는 또한, 본건기사는 '후쿠다' 전 관방장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미납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누설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동 장관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상비서관의 『모략 '리크』』에 패배한 『후쿠다』라는 본건기사의 타이틀 및 「바로 『오세로(オセロ・Othello)』에 등장하는 간신(奸臣)투의 계략이 되는 것」이라는 본건기사 본문에는 「모략 '리크」, 「간신투의 계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본건기사이지 및 본건기사 본문에 원고가 '후쿠다'

전 관방장관을 실각시키기 위해 누설했고, 그 결과 '후쿠다' 전 관방장관은 사임압력에 내몰렸다는 기재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본건기사는, 원고가 '후쿠다' 전 관방장관을 실각케 한다는 사리(私利)를 위해 부정하게 입수한 본건미납정보를 주간지에 누설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가지고 모략이라고 논평한 것이며, 이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상기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2. 쟁점(2) (본건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한 위법성 및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관하여

(1) 공공성 및 공익목적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비서관이 정치적으로 자신과 대립 관계에 있는 관방장관을 실각시키기 위해 동 장관과 관련 있는 본건미납정보를 부정하게 입수, 이를 주간지에 누설하여 그 결과 관방장관이 사임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다. 그리고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기사의 게재에는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진실성 또는 상당성에 관하여

① ㉔ 증인 B는 2004년 5월 8일 오전11시경 니혼바시(日本橋) 근처 '로열파크' 호텔에서 저널리스트 A와 만난 자리에서 동월 13일호 '주간XX'에 '후쿠다' 전 관방장관에 관한 본건미납정보가 특종보도된 내용을 화제로 올렸는데, 저널리스트 A는 동년 4월 하순경 원고로부터 '후쿠다' 전 관방장관의 연금미납기간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를 동 장관의 실각에 이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공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저널리스트 A는 원고에 대해, 당시 원고와 '주간XX' 간에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주간XX'에 대해 본건미납정보를 흘리면, 원고가 정보원(情報源)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하고, 원고와 상담 후 저널리스트 A가 '주간XX'에 본건미납정보를 흘렸다

는 사실 등을 B기자에게 말했다고 증언한다.

㉞ 그러나 본건에 있어 저널리스트A의 이름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피고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자와 정보제공자 간에 취재원을 절대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하며, B기자가 저널리스트A를 밝힐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널리스트A를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그 자료부터 입수한 정보를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분명히, 보도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취재 기자와 정보제공자 간에 취재원을 공표하지 않는다는 신뢰관계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취재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진실이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자가 당해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했을 때의 상황이라든가 당해 정보제공자가 당해정보를 취득한 상황을 가능한 한 명백히 밝히는 한편 당해정보가 진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사정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B기자는 본건에 있어서, 저널리스트A의 이름이나 속성(屬性)을 밝히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널리스트A가 원고로부터 '후쿠다' 전 관방장관에 관련된 본건미납정보를 청취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청취하지 않았으며, 그 후 재차 저널리스트A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 B기자는 C편집장 및 D데스크에 대해, 저널리스트A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원고 등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전하기만 하여, B기자가 저널리스트A로부터 본건기사에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구체적인 상황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수가 없다.

㉟ 또 전기의 B증언에 의하면, 저널리스트A는 원고에 대해, 본건미납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할 방법을 조언, 동인의 의사를 듣고 스스로 정보 누설행위를 실행했다는 것으로, 원고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를 받고 있는 자

가 갖고 있는 극비정보를 일부러 다른 기자에게 주어, 기사화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저널리스트A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며, 가령 저널리스트A가 존재하고 동인(同人)이 이러한 정보를 B기자에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사유에 비추어 보면 그 정보의 신빙성은 낮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㊱ 을(乙)제36, 제37, 제39, 제44호증 및 증인B, 증인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B기자가 보고한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취재했음이 인정된다.

㉠ B기자는 C편집장 및 D데스크에 저널리스트A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보고했다.

㉡ D데스크는 E기자에게, 원고와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의 불화를 관계자로부터 취재하고, 더 나아가 두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 E기자는 신문기자 2명 및 원고와 가까운 저널리스트에게서 취재한 결과, 이전에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일정의 변경을 통지받지 못한 원고가 체면을 상했다고 생각되어 '후쿠다' 전 관방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어 원고가 '후쿠다' 장관에 대해 심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취재결과를 얻어냈다.

또 E기자는 2005년 5월 9일 원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를 했으나, 원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농담 말아요」 등으로 답변, 부정으로 시종했다.

이어 E기자는 '후쿠다' 전 관방장관에 대해서도 취재를 하려고 했으나 '후쿠다' 전 장관의 부인으로부터 현시점에서는 어떠한 마스크의 취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으므로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들었으며, 결국 그 후에도 취재를 할 수가 없었다. E기자는 취재 후 이상의 취재경위 및 결과를 데이터 원고로 정리했다.

㉣ 2005년 5월 9일 밤, '주간XX' 편집부에 대한 취재를 제외하고, 원고와 '후쿠다' 전 관방장관 등 관계

당사자에 대한 취재를 마친 단계에서, C편집장, D데스크 및 B기자가 협의한 결과, C편집장은, 저널리스트A가 가져온 내용은 극히 신빙성이 높고, 진실하면서 신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 밖의 신문기자나 저널리스트에 대한 취재 결과와 방증도 이를 보강하고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D데스크에게 본건 기사를 집필하도록 지시했다.

D데스크는 다음날인 10일 '주간XX' 편집부의 반응을 소개하는 '코멘트' 부분을 비운 형태로 본건 기사 원고를 집필했다.

㉔ E기자가 몸이 아파, 갑자기 F기자가 대신하여 '주간XX'에 대한 취재를 하게 되어, 2005년 5월 10일 '주간XX'에 대해 저널리스트A로부터 얻은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팩스'로 취재신청을 했다.

'주간XX' 편집부로부터는 동일 중에 '주간XX'의 기사를 담당 한 I기자를 통해 「물론 정보원에 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 다만 X비서관과는 별건(別件)으로 계쟁(係爭)중이며, 귀지(貴誌)의 억측은 논외(論外)」라는 회답이 '팩스'로 보내져 왔다.

㉕ D데스크는 상기 원고에 '주간XX' 편집부로부터 보내온 상기 ㉔의 회답에 근거한 부분을 첨가하여 본건 기사 원고를 완성시켰다.

㉓ 원고가 '주간XX'에 대해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 관련된 본건미납정보를 누설했다는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고가 행한 취재는 이상과 같은 것인데, 그 결과는 원고나 '주간XX' 편집부 모두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고, 더구나 '후쿠다' 전 관방장관은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B기자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저널리스트A에게 재차 취재하여, 원고로부터 본건미납정보의 누설을 의뢰받았을 때의 보다 구체적인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㉔ D데스크는 상기 ㉒ ㉕의 '주간XX' 편집부로부터의 회답에 관해, 정보원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 명확하게 다르다는 회답이 아니었

다는 점, 원고와의 사이에 소송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굳이 전면에서 내세우는 등, 예상했던대로의 회답이었다고 판단, 역으로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취재에 대한 '주간XX' 편집부로부터의 회답서에, 원고와의 사이에 소송이 걸려있으므로 논의라고 기재되어 있어, 역으로 의문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입증할만한 사실의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채 다수의 독자가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간지에 본건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취재가 극히 불충분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㉕ 피고는, 원고가 후생노동성 내에 독자적인 인맥을 갖고 있으면서,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 관련된 본건미납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후쿠다' 전 장관과 대립관계에 있고, 또 원고는 '매스컴' 조작에 뛰어나 동 장관에게 불리한 정보를 누설하여 관방장관의 지위에서 실각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가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 관련된 본건미납정보를 '주간XX'에 누설했다고 믿은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령 상기 피고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입증할만한 취재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고는 할 수 없다.

㉖ 피고는, 보도되는 쪽이 공인일 경우, 보도기관에 의해 자기의 인격에 의문이 드러났을 경우, 그에 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완전하게 진실성을 입증할 수가 없더라도, 당해 의념(疑念), 의혹을 의심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진실이라고 믿은데 충분하고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보도기관을 면책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피고는 B기자가 저널리스트A로부터 들었다는 정보의 입증 취재를 하려고 했으나,

취재결과는 모두 부정되거나 취재 자체가 거부되어 정보를 입증할 결과는 얻어낼 수 없었고, 달리 입증 조사도 하지 않았으므로, 가령 피고가 주장하는 판단 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미납정보를 '주간XX'에 누설했다는 의념, 의혹을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⑦ 이상과 같이 본다면, 원고가 '후쿠다' 전 관방장관과 관련된 본건미납정보를 '주간XX'에 누설했다는 사실은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며,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어 본건기사의 게재에 대해서는 위법성 및 고의·과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⑧ 「수상비서관의 『모략 '리크』』에 패배한 『후쿠다』라는 본건기사의 '타이틀' 및 「바로 '오세로」에 등장하는 간신투의 계약이 되는 것」이라는 본건기사 본문의 기술은, 원고가 '후쿠다' 전 관방장관의 본건연금미납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이다.

그런데 특정한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었을 경우,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고 있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을 때에는, 인신공격에 미치는 등 의견 또는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위법성이 없게 되며, 가령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을 때에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 또는 과실은 부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1997년 9월 9일 판결).

본건에 있어서는 전기와 같이 피고가 논평의 전제가 되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되어있지 않으며, 또한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본건기사의 논평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및 고의·과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⑨ 이상과 같이, 피고는 본건잡지에 본건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했으며,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쟁점(3) (손해액 및 사죄광고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본건기사의 기재내용, 게재양태, 본건기사가 게재된 매체의 종류, 반포(頒布)방법,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본건기사 게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사(慰謝)하기에 충분한 위자료는 300만 엔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본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상기 위자료의 10%에 해당하는 30만 엔의 변호사 비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본건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죄광고를 게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4. 결 론

이상에 의하면 본소(本訴) 청구는 330만 엔 및 이에 대한 소장(訴狀) 송달일의 다음날인 2004년 9월 7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으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61조, 64조 본문을, 가집행의 선언에 대해서는 동법 259조 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230호(2007. 4. 1.) pp. 243~250.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영국사례

이미 신청인이 다른 공적 사안에 관련돼 이름이 알려졌고 법정 문서에 신청인과 연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익명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영국 PCC는 『Scottish Sun』지의 2007년 5월 15일자 “떨어져 있어”라는 제하의 기사가 윤리강령 제9조를 위반했다며 Glog가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해당 기사가 자신을 범죄로 기소된 사람의 친척으로 취급했다며 PCC에 불만을 신청했다.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사위인 Gray가 부인(불만신청인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Gray의 보석 조건은 Gray가 불만신청인의 집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인 측 변호사는 불만신청인이 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해외에 있었다고 말했다. 불만신청인의 이름은 법정 변

론 중에 거명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그 이야기에 관련되지’ 않았고, 따라서 불만신청인의 신원이 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신문사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 측의 변호사는 불만신청인이 『Scottish Sun』지를 상대로 지난 2003년 PCC에 접수한 항의에 대해 불만신청인과 그의 가족에 대한 보도에서 윤리강령 제9조를 위반하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cottish Sun』지는 PCC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Scottish Sun』지는 고소된 Gray의 보석 조건을 기술한 법정 문서에 불만신청인의 이름이 쓰였기 때문에 불만신청인이 그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또

한 『Scottish Sun』지는 불만신청인이 Kinfauns 성(城) 주변의 일정 지역 내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토지개혁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진영에 선 이후로 Kinfauns 성이 불만신청인의 소유라는 것은 공공연한 상식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Scottish Sun』지는 기소된 사위 Gray와 불만신청인의 관계 또한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으며 Gray가 최근에 햄버거 트럭을 열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개별적인 문제에 관한 빼어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고 그 기사에는 불만신청인과 Gray의 이름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불만신청인 측 변호사는 이러한 『Scottish Sun』지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독자들은 불만신청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이며 불만신청인과 Kinfauns 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 측 변호사는 ‘산책할 권리’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도 제한적이었으며 Gray가 불만신청인의 딸을 폭행한 사건 역시 불만신청인의 소유지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만신청

인 측은 “보석조건은 불만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며 불만신청인의 이름이 법정에서 거론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햄버거 트럭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불만신청인과 사위인 Gray의 관계가 언급됐다고 해서 불만신청인에 대한 윤리강령의 보호(범죄자 친구 또는 친척의 익명성의 보장)가 불필요해 지는 것은 아니며 그 보호가 단지 불만신청인의 집이 법정 문서에 거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영향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PCC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불만신청인이 이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련되었는가’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PCC는 불만신청인이 이 이야기에 관련됐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불만신청인의 집이 Gray가 접근하지 말아야 할 장소로써 법정문서에 명확하게 언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PCC는 “이 사실은 불만신청인이 법정 명

령의 수신자와 연관되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 내에 불만신청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말했다. PCC는 “기소자 때문에 언론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가정할지라도 이미 불만신청인과 사위의 관계가 널리 알려진 상태였고 불만신청인 자신의 익명성도 산책접근권 반대사건을 계기로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불만신청인의 익명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PCC는 불만신청인과 기사의 내용 간의 관련성은 사위인 Gray가 법정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토지가 불만신청인의 소유지였다는 점에 의해 성립된다고 밝혔다. PCC는 『Scottish Sun』지가 Kinfauns 성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법정 문서의 세부사항을 공표할 권리가 있으며 그 성의 소유주가 불만신청인임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정황이 확실하므로 불만신청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의 의정 활동을 비난하는 ‘악랄한 소문 캠페인’의 희생자가 됐다”고 보도됐으며 일주일 뒤 게재된 둘째 기사에서는 “총 주지사가 한 동료를 남부 호주의 주지사로 임명시키고자 로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므로 남부 호주 주지사 사무실은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불만신청인은 “특히 ‘새로운 논란 속의 총 주지사’라는 헤드라인으로 실린 11월 26일자 기사는 총 주지사와 남부 주지사가 강력히 부인했음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포함했고 주지사들이 보도 내용을 부정했다는 사실이 헤드라인이나 전반부 단락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The Sunday Telegraph』지는 두 기사가 적절한 출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The Sunday Telegraph』지가 공공의 관심 대상인 많은 문제들을 다뤘고 각 정보들의 출처가 정확했으며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총 주지사가 논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호주 언론평의회는 헤드라인과 두 번째 기사를 균형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총 주지사와 남부 주지사가 부인한 사실이 보도되지 않는 등 총 주지사에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호주 언론평의회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

호주사례

보도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기사에 대한 불만은 인정할 수 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총 주지사 Jeffery의 공식 비서 Hazell이 『The Sunday Telegraph』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 일부를 인정했다. 불만신청인은 『The Sunday Telegraph』지가 보도한

2006년 11월 19일자 기사와 2006년 11월 26일자 기사가 불분명한 출처를 많이 인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제의 기사 중 2006년 11월 19일에 실린 기사에서는 “총 주지사가 그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부모 동의 없이 촬영 댄 신생아도 초상권 침해”

갓 태어나 외모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신생아라도 부모 등의 허락 없이 촬영해 방송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 답은 ‘된다’이다.

2005년 9월 KBS 다큐멘터리 ‘병원 24시’ 팀은 신생아 중환자실 생활을 다루는 과정에서 A씨의 남편으로부터 ‘촬영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제작팀은 이 말을 듣지 않은 채 중환자실에 있던 김 군을 간호사가 안는 장면, 김 군이 잠든 장면 등을 촬영해 방송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조용구)는 30일 허락 없이 방송 촬영을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엄마 A(31)씨와 아들 김 모(2)군이 방송사와 PD,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 1,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 통념상 특징인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찍히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며 “방송사, PD 등이 본인과 친권자의 동의 없이 A씨와 김 군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외모가 구분안 돼 초상권 인정이 어렵지 않냐는 피고 측 주장이 있었지만 신생아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피고들은 A씨와 김 군이 나오는 장면이 매우 짧고, A씨가 묵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2007년 7월 31일

인터넷에 실린 과거기사로 피해를 봤다면? 개인 블로그·게시판은 삭제·수정 무풍지대

인터넷에 실린 과거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본인이 적극적인 의사표명과 수정 요구를 해야 한다. 애초 보도된 것과 달리 상급심이나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기사 수정요청을 해야 한다. 기사의 잘못이 명백하거나 보도 이후 달라진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인터넷 상의 수정이나 정정보도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언론사와 당사자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언론중재위의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02-397-3000)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언론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사가 수정되거나 정정보도가 나오게 되면 온라인에는 자동으로 반영된다. 언론사와 계약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도 수정사항이 반영된다. 정정보도는 기사 끄트머리에 정정보도 내

용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다.

블로그와 게시판을 통해 퍼져버린 기사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때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업체의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게시물 삭제와 검색차단, 게시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이슈가 된 사건의 경우 포털 스스로 검색을 차단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반영되기 매우 힘들다. 포털의 한 담당자는 “모든 뉴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전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포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게시중단 및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관리하는 블로그나 게시판의 경우에는 수정·삭제 요구를 하기가 무척 힘들다. 한국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의 김중천 변호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로 피해가 명백한 상황이라

면 이에 대한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포털을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권리침해청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실과 부합하는 과거 기사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요청한다고 해도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한겨레>는 2006년 시민편집인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독자권익위원회를 열어 내부적 기준을 마련했다. 독자권익위는 “역사적 기록물인 신문기사가 당사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수정·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 △무혐의임이 밝혀진 경우 △오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기사를 수정·삭제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겨레신문 2007년 6월 4일

김미화, 동아일보에 정정보도 받아내... “노무현 후보 지지했다니”

방송인 김미화가 동아일보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냈다.

동아일보는 27일자 2면에 실린 ‘정정보도문’을 통해 “정치하는 연예인 ‘폴리테이너’를 다룬 7월 6일자 A5면 기사와 관련해 김미화 씨의 2002년 촛불시위 참여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바로잡습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김씨는 이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 및 ‘대통령과 인터넷 매체의 대화’ 사회와 연관시킨 데 유감을

표해 왔다”고 덧붙였다.

보도가 나가자 김미화는 지난 10일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승자 측은 ‘On-Air’ 패자 측은 ‘Off-Air’”라는 기사를 통해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연예인들이 방송을 중단한 반면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연예인들은 ‘승승장구’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미화 씨를 예로 들었다.

김씨 측은 당시 ‘미디어 오늘’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 김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는 등 ‘승승장구’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며 “당시 촛불집회는 노사모가 주최한 행사가 아닌 ‘미순이·효순이 사건’ 관련 추모 집회였고, 김 씨 또한 녹색연합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했을 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7년 7월 27일

“‘가짜 북한식품’ 보도, 北서 인정했으면 정당”

북한 무역당국이 ‘무허가 식품’이라고 확인한 북한산 건강식품을 국내 언론이 ‘가짜 북한산 식품’으로 보도한 것은 해당 제품이 진짜인지 여부를 떠나 정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29일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북한산 건강식품을 중국 총판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M사가 해당 제품을 ‘가짜 북한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직접

북한 당국과 접촉하기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북한 무역성 산하기관이 국내 공기업인 코트라 측에 공식적으로 전송해 준 문건을 근거로 보도를 했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입이 어려워졌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해당 제품이 진짜 북한산인지 여부는 암 환자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보건과 관련된 정당한 관심사항이 되는 만큼 보도의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북한으로부터 항암효과가 있

다는 건강식품을 직수입하는 B사와 이와 유사한 식품을 중국 총판을 통해 들여오는 M사의 제품 중 어느 쪽이 진짜 북한산인지를 놓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자 북한 무역성 산하기관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질의를 했다.

언론사 2곳은 코트라가 민경련으로부터 “M사 제품은 판매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유통하면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 처음으로 ‘가짜 북한산 제품을 팔면 안 된다’며 판매 금지를 요청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연합뉴스 2007년 7월 29일

‘김훈 중위 사건’ 오보 피해 “시사저널 배상”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일 지난 1998년 판문점에서 일어난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보도된 전 육군 중사 김 모 씨와 가족들이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사저널’ 전 발행사인 예음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원고 김씨의 실

명을 쓰지 않고 ‘김 아무개 중사’로 지칭했으나 당시 사건의 관심사로 비춰볼 때 김씨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사망 원인을 조사했던 당시 조사단이 김씨에 대해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실 등에 비추보면 보도 내용은 진실이라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김씨와 가족들의 피해는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지하 병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부소대장이던 김씨가 1997년부터 야간 경계근무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초소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자 시사저널은 김씨의 북한 병사 접촉과 김 중위의 사망이 관련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1998년 3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김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문화일보 2007년 7월 2일자

- 강승구(2007). 텔레비전 드라마의 윤리적 쟁점과 비평. 한국방송비평회 주최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윤리성에 대한 비평' 발제문. 2007. 7. 19.
- 고민수(2007).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언론과 법, 통권 제6권 1호, 289-310.
- 곽기성(2007, 여름). 인종 차별 방송 심의로 본 호주 언론의 자율규제. 언론중재, 통권 제103호, 64-75.
- 김광욱(2007). 쇼·오락 및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윤리성과 품격의 문제. 한국방송비평회 주최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윤리성에 대한 비평' 발제문. 2007. 7. 19.
- 김동하(2007).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언론평해구제 효과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고찰' 세미나 발제논문. 2007. 9. 6. ~ 7.
- 김민남(2007). 언론조정 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관행의 문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부산지방토론회 발제논문. 2007. 4. 10.
- 김서중(2007). 공공 서비스인 방송에 대한 규제 및 정책 평가. 언론연대, 민언련, 방송인총연합회 주최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확대 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 7. 27.
- 김영철(2007). 저작권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문화관광부 주최 '저작권법 50년 기념포럼' 발제문. 2007. 6. 27.
- 김창룡(2007, 여름). 선거보도심의기구를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언론중재, 통권 제103호, 35-45.
- 노태홍(2007, 여름). 상당성에 관하여. 언론중재, 통권 제103호, 46-63.
- 문재완(2006). 언론의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2호, 21-44.
- 문효선(2007). IPTV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국회 이광철 의원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IPTV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07. 7. 16.
- 박기성(2007). 미디어 윤리의 국제화와 한국 방송의 윤리. 한국방송비평회 주최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윤리성에 대한 비평' 발제문. 2007. 7. 19.
- 박노형(2007, 상권). 유럽연합의 언론사 소유 규제.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1호, 185-192.
- 박준우(2007, 여름). 판례평석 - 신문기사의 저작물성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 통권 제78호, 55-65.
- 박진우(2007, 상권). 프랑스의 미디어 소유 규제.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1호, 125-155.
- 반 현(2007, 여름). UCC 선거와 언론의 역할. 언론중재, 통권 제103호, 22-34.
- 백선기(2007, 여름). 대통령 입후보자에 대한 보도와 언론의 편향성. 언론중재, 통권 제103호, 4-21.
- 성동규(2007, 7월). 포털 저널리즘: 사회적 책임과 규제_자율규제는 물론 피해구제 방안 마련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9호, 52-55.
- 심석태(2007).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소고. 언론과 법, 통권 제6권 1호, 257-288.
- 양승동(2006). 방송사업허가제의 정당성과 공영방송에 대한 허가의 문제점.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2호, 195-222.
- 양재규(2007, 7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16 - 편집권의 한계와 진실보도.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9호, 156-159.
- 양재규(2007, 8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17 - 진실보도와 입증책임.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0호, 140-143.
- 양재규(2007, 9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18 - 오보에 대한 안정장치, 상당성(1).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1호, 120-123.

- 유의선(2007). MVPD 시장구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책 정립 방향. *언론과 법*, 통권 제6권 1호, 151-188.
- 이구현, 김정순(2006).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2호, 45-90.
- 이명웅(2007).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의 기능'의 의미 - 현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신문법 사건에 관련하여. *언론과 법*, 통권 제6권 1호, 221-256.
- 이봉의(2007, 상권). 독일의 미디어 소유 규제.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1호, 95-124.
- 이상도(2007, 여름). 피의자 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통권 제103호, 84-91.
- 이승선(2007).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언론피해구제 효과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고찰' 세미나 발제 논문*. 2007. 9. 6. ~ 7.
- 이승선(2007).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의 문제점과 방송사 자율심의의 과제. *한국방송비평회 주최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윤리성에 대한 비평' 발제문*. 2007. 7. 19.
- 이승선(2007, 7월). '공적 인물'이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함의: 방송사 사건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1, 96-131.
- 이원섭(2007, 상권). 노르웨이의 미디어 시장 소유 규제.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1호, 156-184.
- 이은택(2006). 언론 윤리에서 덕 윤리학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2호, 147-168.
- 이재진(2006). An Overview on the Korean Media Law Education for the Last 50 Years.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2호, 169-194.
- 이화행(2007).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 '제17대 대선과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 세미나 발제문*. 2007. 7. 11.
- 임승재(2007). 저작권 이슈 및 정책의 경제적 효과. *문화관광부 주최 '저작권법 50년 기념포럼' 발제문*. 2007. 6. 27.
- 장호순(2007, 6월). 언론의 자유와 신문 기업 규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신문기업 규제 관련 판례 연구. *한국언론학보*, 51-3, 35-63.
- 정준희(2007, 상권). 영국의 언론사 소유 규제.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1호, 49-94.
- 조소영(2006). 신문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에 관한 소고.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2호, 91-114.
- 조소영(2007, 상권). 우리나라 미디어 소유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1호, 7-48.
- 조재용(2007). 저작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방향. *문화관광부 주최 '저작권법 50년 기념포럼' 발제문*. 2007. 6. 27.
- 한영학(2007, 상권). 일본의 언론사 소유 규제.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1호, 193-225.
- 한위수(2006). 변론 등에 의한 명예훼손.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2호, 1-20.
- 한진만(2007). 사이버상에서의 개인권익의 침해와 구제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강원지방토론회 발제논문*. 2007. 7. 10.
- 홍성구(2007). 인터넷 언론과 선거보도의 공정성 - 포털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 '제17대 대선과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 세미나 발제문*. 2007. 7. 11.
- 황성기(2006). 매체 융합 환경에서의 통합 매체물 심의 기관의 모델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2호, 115-14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27

시 행 : 2005. 7.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

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

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

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 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때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

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회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

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절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
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
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
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
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
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
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
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
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
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
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

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
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